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vol.446 / June / 2006

0606

칼럼
建築文化新聞의 창간과 建築士誌의 변화

시론
건축 사주학(四柱學)의 과학적 수립

회원작품
묵방리 주택
파주 청문각 사옥
건축물 안전성능 실험센터
양재 하이브랜드
대전 외삼중학교

기획연재
문화의 교류, 한국의 외국건축_06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재정보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아타워빌딩 2층 우편번호 : 137-857
전화 : 02-581-5711~4 팩스 : 02-586-8823 E-mail : gods@kira.or.kr
http://www.kira.or.kr

표지사진_ 묵방리 주택

건축사

Korean architects

대한건축사협회발행, 2006년 6월호 통권 446호

Contents

24

31

44

korean architects

차례 2006 06 446호

칼럼	建築文化新聞의 창간과 建築士誌의 변화	장양순	16
시론	건축 사주학(四柱學)의 과학적 수립	박한규	18
건축만평		유원재	21
회원작품	묵방리 주택	임재용	22
	파주 청문각 사옥	박훈영	28
	건축물 안전성능 실험센터	한규봉	34
	양재 하이브랜드	이종찬	40
	대전 외삼중학교	조도연	46
계획작품	양평주택	이창훈	50
설계경기	하동군 보건소		54
기획연재	해방공간의 이데올로기와 남 · 북건축	안창모	59
기고	제12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를 마치고…	고은영	67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은 공동체 형성을 복원한다.	이영창	70
	실버(고령친화) 산업의 현황과 전망	김상병	73
건축마당	협회소식		76
	건축계소식		82
	건축인터넷정보		86
	법령		90
	보고서		108
	통 계		110
	회원갤러리		112
	해외잡지동향		113
	자재정보		119

발 행 인 이철호
편 찬 위 원 장양순, 양해윤, 유원재, 박호견, 이관직, 이종훈, 신호근
취재 · 편집 최락청
발 행 처 대한건축사협회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아타워빌딩 2층
우 편 번 호 137-857
전 화 대표 (02)581-5711~4
팩 시 밀 리 (02)586-8823
인 터 넷 http: //www.kira.or.kr
인 쇄 정문사문화(주)
광 고 문 의 홍보편찬팀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장양순 / 본 협회 이사 (주)건축사사무소 창건축 한서대겸임교수
by Chang Yang-soon, KIRA

建築文化新聞의 창간과 建築士誌의 변화

Launching『Architectural Culture paper』and changing of『Korean Architects』

본 협회의 예산승인 후, 3개월여의 준비 끝에 가칭『건축문화신문』은 8월에 시험판을 내고 9월 중에 창간호를 내기로 하였으며, 방송은 신문 창간 이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쪽에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건축사』지는 신문에게 전반적인 기능을 양허하고 작품위주의 순 기능만을 하는 것으로 역할을 조정하였다.

세계는 바야흐로 인터넷시대이다. 2002년도에 우리는 세계를 놀라게 한 월드컵의 붉은 악마, 효순 양의 교통사고로 유발된 반미촛불집회 그리고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서로 다른 특성의 인터넷 파워를 경험하였다. 이제는 어디서나 초고속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가 사회근간을 이루는 중이다. 방송과 인터넷, PC와 핸드폰이 하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스피디한 세상에 우리는 일간도 아닌 주간으로 활자매체인 건축신문을 발간하려 한다.

IMF 이후 건축사 양산 정책과 수주량의 감소로 우리는 생존 자체를 걱정한지 오래다. 이러한 와중에서 건설회사의 설계겸업 논란, 감리권의 분할, 설계비 기준대가의 파기 등 억울한 일들을 수없이 당해왔으나 이를 호소할 매체가 잡지로서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건축사들은 위와 같이 편협한 사고에 젖은 정부와, 건축을 부동산의 재산 가치로만 인식하는 국민들 틈에서 고립무원이 되었다. 본 협회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를 대안(代案)으로 설득하며 국민의 건축문화 수준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건축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 하나로 만드는 용광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신문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건축문화신문은 다음과 같은 목적과 목표를 갖고 태어나고자 한다.

첫째, 범 건축계를 대변하는 신문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편집자문위원제도'를 두어 FIKA 3단체 등에 위촉할 예정이다.

둘째, 예산을 절감하고 전문성 있는 기사의 작성을 위해 '건축사 기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또한 관련대학에는 학생기자를, 해외각국에는 건축사나 석 박사과정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외주재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따라서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추천이 필요하다.

셋째, 건축설계뿐 아니라 신기술 신공법 등 시공기술적인 면과 새로운 자재의 소개는 물론 유관분야 즉 인테리어, 조경, 조명, 도시 등에 대하여도 일정한 공간을 주기적으로 부여하고자 한다.

넷째, 독자층의 확대를 꾀하고자 한다.『건축사』지의 경우 지금까지 회원과 교수 그리고 시군(市郡)의 건축과에 비매품으로 제공되었으나, 이제 FIKA회원은 물론 예비건축가들인 건축사보나 학생들, 건축직 공무원, 건설회사를 비롯한 주택공사, 주택협회, 자재협회 등 유관부서원들 모두가 독자가 되는 신문을 제작하고자 한다.

다섯째, 인터넷과의 결합으로 쌍방향 신문이 되고자 한다. 이는 현재 모든 신문이 하는 것으로 향후 본『건축문화신문』은 인터넷을 이용한 건축방송국까지 설립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여섯째는 재정적 독립이다. 본지는 본 협회로부터 향후 2년간 지원을 받게 되지만 이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자 한다. 물론 협회의

간접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나 종국적으로 유가지(有價紙)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가지로 발행하는 2년간 건축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구독할 수밖에 없는 매력적이며 유익한 신문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문은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다. 하나는 독자로 하여금 건축계 소식을 종합적으로 접하게 하며 깊이 있는 심층보도와 자유로운 의견개진으로 쟁점과 미래지향점에 대한 통일된 의견을 구하고 알리는 장이 되는 것과 이것이 정부정책일 경우 대안으로 제시하여 관철시킨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국민의 건축문화 고양이다.

필자는 모두(冒頭)에서 인터넷 시대에 신문의 약점에 대하여 언급했다. 그러나 뉴욕 타임스의 디지털부문 부사장 니센홀츠의 말처럼 '신문은 심층 분석 기사를 통하여 독자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하게하며 젊은이들의 경우 단순히 즐길 줄 아는 시민에서 자질을 갖춘 시민으로 자리 잡게 하는데 기여' 한다. 건축문화신문의 경우 이를 인용할 때 '심층 분석 기사를 통하여 건축인들이 올바른 진단을 하게하고 이를 정부정책의 오류 등에 적극 활용하며 건축학도들에게는 책임 있는 건축인으로 성장하는 밑거름' 이 되는 것이다.

현대는 모든 것이 다기화, 세분화되고 있다. 모든 잡지와 전문지도 이에 따라 분화의 길을 걷고 있다. 영향력 있는 메이저 신문들은 독자들의 보편타당성에 의한 열독 숫자 즉 인기 순위로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 값 동향은 전 국민의 관심이기에 반복적으로 자주 대서특필되고, 바둑의 경우도 수백만의 마니아가 있어 1주일에 한 면은 정기적으로 할애되고 있지만 건축의 예술성에 대한 것은 관심 밖이기에 우리들의 목소리는 끼어 들 데가 없다는 현실이다.

건축을 예술 문화로 인식하여 사랑하려면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올라가야한다. 그들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이를 위해 건축문화신문이 필요한 것이다. 이빨이 없으면 입염으로 먹으라는 속담이 있다. 메이저신문이 안하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건축사』지에 사회학과 교수의 칼럼이 실렸다. 아파트에 이사하여 겪는 불편함을 쓴 것인데, 도서실, 유치원, 체육시설 등의 미비와 차로 인한 어린이의 위험성 등을 말하고 있었다. 실상 차량의 문제는 차 없는 지상을 만들기에 민간업체가 많이 참여하고 있고 나머지 공공시설문제는 이미 주택건설촉진법에 나와 있지만 규모를 축소하여 교묘히 빠져나가는 통에 아파트 숲만 이루고 공익시설은 어디에도 없어 원망을 사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준다면, 그들은 일정지역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 할 때 그로 인하여 주변 아파트 세대수의 합계가 그간 면제받았던 공익시설물을 설치해야하는 세대수에 이를 경우 정부든, 건설업체든 이를 이행하게 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법 개정을 유도했을 것이다. 직할시의 환경연합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교수가 이렇게 건축에 대한 정보에 어둡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 이 너무나 많으며, 그간 얼마나 게으르고 우리만을 위해 살았는가를 반성하게 된다. 국민들의 건축문화에 대한 수준을 일정한 곳까지 끌어 올릴 때, 메이저신문은 우리의 주장을 취급할 것이다. 따라서 건축문화신문의 발간은 우리의 다양한 목소리를 한데모아 정책에 반영시키는 일이 수레바퀴의 한축이라면 위와 같은 대국민 계도가 내일을 위한 또 다른 수레바퀴의 한축이 될 것이다.

함께 물주고 거름 주어 관(官)도 경청하고 민(民)도 성원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키워나가자.

박한규 /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
by Park Han-kyu

건축 사주학(四柱學)의 과학적 수립

Scientific Establishment for Meta-physical Architecture

건축 사주학이란 건축설계의 사주학적 접근방법을 의미한다. 사주학은 역리(易理)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된 학문이기 때문에 물리학이 물질의 이치에 대해서 개발된 학문이라면 사주학은 물질의 변화이치에 대해서 개발된 학문이다. 사주학이란 신(神)도 아니요 미신(迷信)도 아니며 그냥 하나의 학문일 따름인 것이다. 사주학은 우리 인류발전사에 가장 오래 지켜내려 오고 있는 성경말씀과 더불어 고대 지속가능한 학문인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개발한 가장 으뜸가는 학문이 수학(數學)인데 이 수학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수학공식을 개발해냄과 똑같이 우리 인생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사주공식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한편 수학은 이 우주대자연의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개발되었는데 바로 이 수학에 의해서 춘하추동 4계절이 계산되고 1년 12개월 365일이 계산되어 날마다 지어진 간지(干支)를 가지고 사주(四柱)와 팔자(八字)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보다 더 수학적이고 이보다 더 과학적인 학문이 어디 있겠는가. 더구나 그 해석법칙에 있어서도 바로 이 우주대자연의 섭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니 과학 중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과학인 것이다. 물리학은 형이하학적이며 3차원적인 현상법칙으로 접근하는 학문임에 반해서 사주학은 형이상학적이며 4차원적으로 접근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 방법과 차원을 달리할 따름인 것이다. 모든 학문 중에서도 소위 절대학문이라고 일컫는 수학을 개입시켜 성립되는 학문이 최고의 학문이 되고 있으며 더구나 오늘날과 같이 최첨단 과학기술학문에 수학이 들어있지 않은 학문분야는 단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기술적으로나 기독교 문화적으로나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서양의 선진국에서 동양철학이라고 일컫는 잇칭, 잉양, 풍쉐이 등과 같은 역리학이 급속도로 발흥되고 있으며 우리 건축분야에도 매우 폭넓게 실용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로 오늘까지 과학기술을 선도함으로써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서양이 왜 이제 와서는 동양철학에 심취되어가고 있는가. 그 까닭은 우리도 다 잘 알고 있다. 우리 인류 문명의 미래를 예측하는 모든 인류학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해 오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인류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발생되는 각종 환경공해가 더해져서 결국에는 파멸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인 것이다. 사실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서양의 물질과학문명과 동양의 정신도덕문명이 양대 축을 이루고 그런대로 균형을 잃지 않고 지내 왔으나 오늘날 세계의 방방곡곡에는 온통 물질과학적인 가치로 뒤덮여 있어서 이제는 물리적인 환경과 정신적인 환경이 동시에 멍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물리적인 환경은 그 어떤 것일지라도 전부 과학 기술적이고 3차원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지만 정신생물학이나 심리학에 기반을 둔 정신환경은 절대로 과학기술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형이상학적이고 4차원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학문을 열심히 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최상의 '행복'을 추구함에 있는데 행복의 조건은 '편리함'과 '편안함'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해진다. 그동안 우리 인류는 최첨단 과학기술의 개발에 의해서 분에 넘칠 만큼 '편리함'은 누려오고 있지만 그것이 참

행복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편안함'이라는 조건이 성립될 때만이 비로소 행복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편안함'을 무엇으로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정신환경을 어떻게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한 번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환경문제에 관한 한 우리 건축인들에게는 피해갈 수 없는 의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행복을 가늠해보는 여러 가지 환경요소 가운데서도 주거생활환경은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의 집은 나의 생활이요, 나의 생활은 바로 나의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물질과학주의 사고로만 꽉 차있는 현대인들은 주거 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행복의 잣대를 오직 그 '편리함'에만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집에는 문제가 없는데 가정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말하자면 생활의 물리적인 환경에는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신환경에 이상이 생겨서 '편리함'만큼의 '편안함'을 얻지 못하고 있으니 균형을 잃어 결국 불행해지고 만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바로 여기서 그 균형을 잡아 조화롭게 해주는 처방이 필요하게 되고 또 그 처방도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우리의 주택이나 건물을 신축하거나 구입할 때 건축사주학을 실용화 하자는 것이다. 먼저 건축사주학적으로 대상 건물의 길흉화복 등 명운(命運)을 판단하고 그것이 입주자 혹은 이용자와의 관계가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하여 선도해 나아가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주택이나 건물과 그 궁합(宮合)을 맞춰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현대생활에 너무 바쁘다보니 이런 문제에 등한시하게 되고 그래서 무의식 중에 살아가다보니 가정에 이런 저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발생되는 문제들의 많은 원인이 바로 명쾌하지 못한 정신환경에서 유발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오늘날 물질만능주의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건축 혹은 건축물을 한낱 상품가치로만 매도해 버리기 때문에 건축의 본질과 그 고귀한 도덕적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무지한 복덕방이나 중개인들의 손에서 놀아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주생활 개념을 더 이상 물질적 가치로만 판단해서 혼란에 빠져들게 하지 말고 정신도덕적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해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믿는다.

그러면 여기서 건축사주학의 실용범위 및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 건축사주학의 실용범위는 크게는 대지풍수, 건물사주, 입주자 사주 등 3요소들의 상호관계를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는 건물 내의 거주층수, 주호의 위치, 사용자의 방, 출입문, 실내가구, 실내배색 등 일체의 관계를 해석하고 판단한다. 여기서 대지문제는 그 생년월일시가 없기 때문에 건축사주학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양택풍수지리학적으로 판단한다. 사주학과 풍수지리학은 같은 역리의 원리나 법칙에서 연구 개발되어 나왔지만 그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다르다. 풍수지리는 대상물질을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서 길흉을 판단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주는 대상 여덟 글자만을 해석해서 그 길흉을 판단해 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자의 경우는 현상을 관찰하고서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라면 후자의 경우는 그와 반대로 의미를 담고 있는 글자를 해석해서 현상을 그려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똑같이 역리를 근원으로 삼아야 하는 학문들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되어야 한다.

필자는 건축사주학(建築四柱學)을 수립하기 위해서 일반 사주학의 원리와 법칙에 근거하여 건축에의 그 응용방법과 범위를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건축사주학 기초편('06년 2월 필자의 정년퇴임기념저서)을 내놓았고, 현재 그것들의 임상실험을 위해서 부위별 임상에 필요한 300여 개의 실존 건축물을 파악 중에 있으며 그 제일 첫 단계로서 보지 않고 건축물의 생년월일시만 가지고 건축물의 종류를 판단해 내는 작업과정에 있다. 그런데 하루는 4학기 째 필자로부터 건축사주학 강의를 받고 있는 연구실 제자 몇 사람이 22개의 생년월일시를 적어 와서 이것들이 무슨 종류의 건물에 속하는지 알아 맞춰보시라는 것이었다. 사람 사주 같으면 목소리를 들어보고 얼굴도 보면서 해석해 나갈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도무지 뚱딴지 같은 경우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필자는 격국(格局)과 용신(用神)을 대입해서 22개의 사주를 전부 풀어보고 그 종류별로 분류를 해놓았다. 그런데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왔던 것이다.

건록격(建祿格)에 해당하는 박물관이 하나 있고, 식신격(食神格)에 해당하는 백화점이 두 개 있으며, 상관격(傷官格)에 해당하는 호텔이 하나 있고 그리고 편재격(偏財格)의 은행건물 3개, 정재격(正財格)의 각종 사무소 건물 4개, 편관격(偏官格)의 경찰서 1개, 정관격(正官格)의 관공서가 6개, 정인격(正印格)의 학교나 도서관이 4개 등 도합 22개로 분류되었는데 결과는 상관격은 식신격이 되었고, 1개의 정관격과 2개의 정재격 등 3개가 다르게 나와 도합 4개가 틀린 것이다. 하지만 정답이 82%나 되므로 오늘날 의료 환자를 검진하기 위해서 최첨단 의료기기를 동원해서도 20%에 가까운 오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한 가지만 비교해 보아도 절대로 현대과학기술에 뒤지지 않는다고 확신해 마지않는다. 이 정도면 상당히 놀랄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이 끝나면 각 건축물의 명운을 감찰해서 거주자와의 관계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작업이 계속되어질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민의 주거생활이 더욱 생명력 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건축사주학에 대한 연구개발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圖

임재용 / 건축사사무소 OCA
by Lim jae-yong, KIRA

묵방리 주택
Mookbangri Residence

● 배치도

0 10 20 40m

● 건축개요

대지위치	충청북도 청원군 묵방리 284-4, 산21-10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1,586㎡
건축면적	194.09㎡
연 면 적	251.1㎡
건 폐 율	12.24%
용 적 율	13.6%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석고보드위 수성페인트, 자작나무 합판위 투명락카, 송판무늬 노출콘크리트
외부마감	송판무늬 노출콘크리트, T24 투명복층유리, 적삼목
설계담당	최혜진(project designer), 서형준
구조설계	중앙구조
설비설계	(주)나우설비기술
전기설계	(주)지성설계컨설턴트
시 공 사	(주)하우징테크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 김종오)
설계기간	2004. 5~10
공사기간	2004. 11~2005. 7

Location	284-4, Mukbang-ri, Naesu-eup, Cheongwon-gun, Chungcheongbuk-do, Korea
Site area	1,586㎡
Bldg area	194.09㎡
Gross floor area	251.1㎡
Bldg. coverage ratio	12.24%
Gross floor ratio	15.90%
Structure	R.C
Bldg. Scale	B1, F2
Design period	2004. 5~10
Construction period	2004. 11~2005. 7

1 2

1_ 남동측 전경
2_ 남측 전경

대지는 고저차가 9미터를 넘는 경사지이다.

대지 서쪽 기존 주택이 있던 평지부분을 제외하고는 집을 그대로 안치기에는 가파른 땅이다.

땅의 흐름을 그대로 담고 있는 집.

땅의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오르는 집을 만들고 싶었다.

마당도 필요한 길을 제외하고 기존의 땅의 흐름을 그대로 남겨 경사져있다.

땅의 흐름 위에 놓여질 최소한의 흔적.

땅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오를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입체적 형태.

땅을 닮은 재료.

하나의 재료.

90도 보다 약간 벌어진 'ㄱ' 형태의 송판 무늬 노출 콘크리트 튜브가 땅의 흐름을 따라 경사를 오른다. 평면적으로 안마당과 바깥마당으로 나누지만 튜브가 꺾이는 부분의 들려진 틈을 통해 안마당이 바깥마당으로 흘러내리면서 서로 소통한다.

튜브의 표면은 주변상황을 반영한다. 바깥마당에 접한 면에는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주변을 관망할 수 있는 절제된 프레임으로서의 개구부가 뚫린 반면 안마당을 향해 있는 면은 자연을 마음껏 품을 수 있도록 개방 되어 있다.

튜브의 내부도 땅의 흐름을 따라 현관, 식당, 거실, 아가방, 서재, 주인침실의 순으로 점차적으로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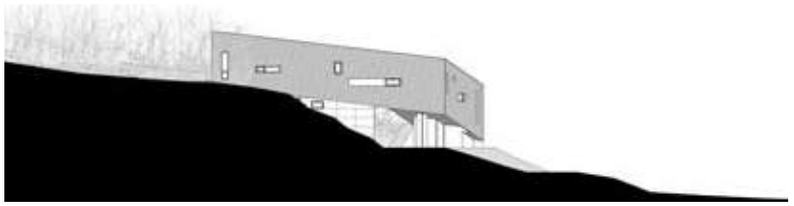

단면도

1_ 마당전경
2_ 현관에서 바라본 마을
3_ 진입시 바라본 현관
4_ 마당에서의 전경

1_ 거실오르며 바라본 중정
2_ 식당에서 바라본 중정
3_ 마당전경
4_ 마당을 따라 오르는 계단
5_ 응접실과 서재 사이 외부공간
6_ 식당에서 바라본 마당

01_ 현관
02_ PIT
03_ 기계실
04_ 손님방
05_ 데크
06_ 안방
07_ 드레스룸
08_ 서재
09_ 방
10_ 거실
11_ 주방 및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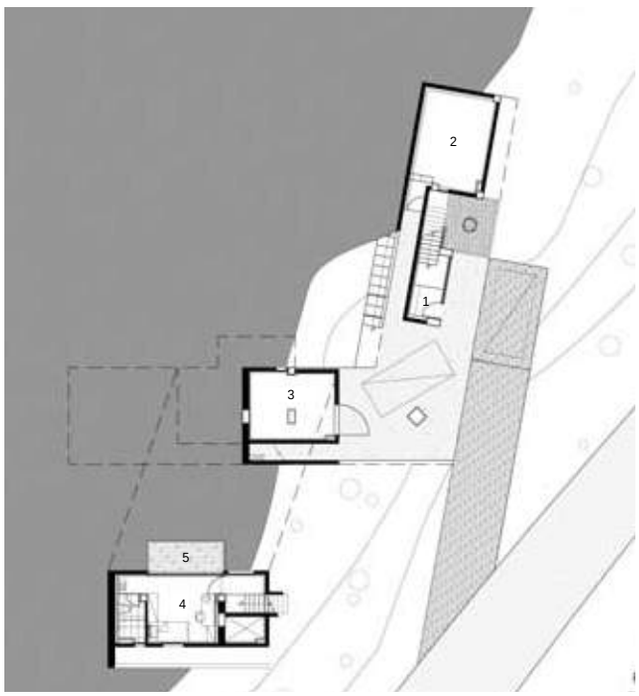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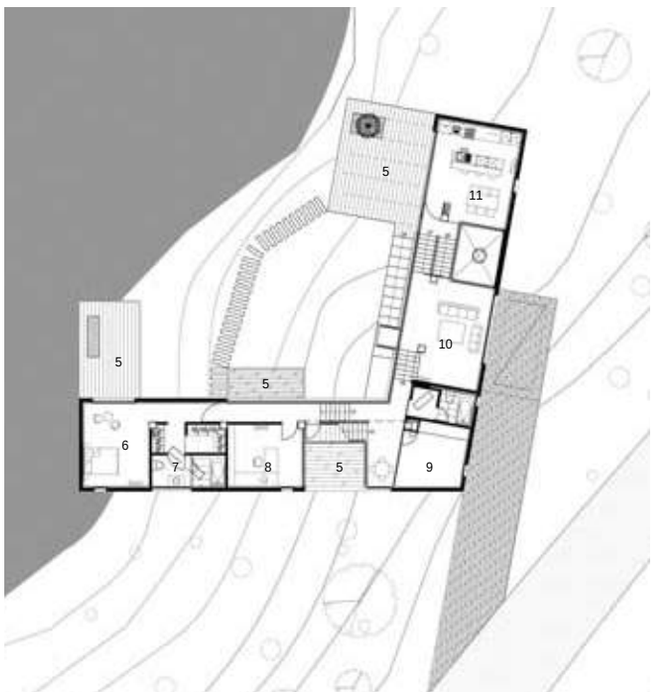

2층 평면도

박훈영 / (주)아름건축사사무소
by, Pak Hun-young, KIRA

파주 청문각 사옥

CMG Publishing Company in Paju Book City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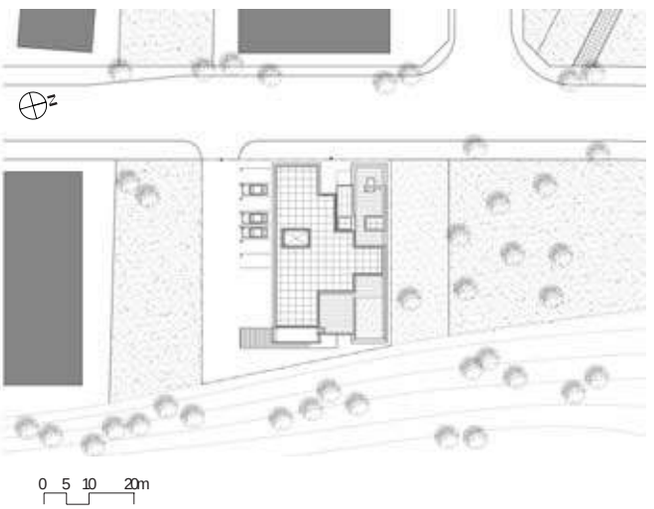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도시 513-7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주요용도	출판사 사무소 및 창고
대지면적	1,009.1㎡
건축면적	501.51㎡
연 면 적	1,699.45㎡
건 폐 율	49.70%
용 적 률	127.67 %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실보닛, 구로철판, 펀칭메탈, 배면도장유리, 자작나무 합판
설계담당	양은정, 윤용선
구조설계	(주)원우구조
설비설계	타임테크
전기설계	신한전설(주)
시 공 사	시원ENG종합건설(주)

Location Culture & Information Publish Complex, Munbal-ri, Gyoha-eup, Paju-si, Gyeonggi-do, Korea

Site area 1,009.1㎡

Bldg area 501.51㎡

Gross floor area 1,699.45㎡

Bldg. coverage ratio 49.70%

Gross floor ratio 127.67%

Structure R.C

Bldg. Scale B1, F4

1 2

1_ 북서측 전경
2_ 북동측 전경

소통의 과정으로서의 디자인

청문각의 건축은 우리에게 과정, 그 자체이다. 형태와 공간을 규정하는 조건과 요소가 우리의 디자인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존재를 드러내길 바랐고, 우리는 그 존재를 잡아내어 그것이 스스로의 생명력을 가지고 의미가 되기를 기다렸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잘 다듬어 통합된 질서 속에서 조율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디자인의 과정은 의사소통의 과정이었다.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초기의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중시하였다. 처음에는 매우 거칠고 하찮아 보이던 내용들도 진지하게 거론되었고 이후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초기에는 재미있고 실험적으로 보이던 내용들도 건물의 전체 개념을 유지시켜줄 만한 의미를 획득하지 못하거나 다른 요소들과 융합되지 못하면 폐기되거나 수정되었다. 이러한 결정의 대부분은 아름내부의 디자인커뮤니케이션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중규모 이하의 건물은 건축사와 프로젝트 담당자의 체제 속에서 디자인이 결정되고 수정과 보완을 거쳐 실행에 옮겨지게 된다. 그러나 다행히 청문각의 설계 스케줄은 비교적 넉넉한 편이었고, 건축주가 제시하는 프로그램도 우리를 옭아맬 만큼 딱딱하지 않았다. 초기의 개념을 잡아가는 4개월여 동안 우리는 여러 단계의 프리젠테이션 과정을 진행하였고, 그 속에서 겪은 시행착오의 과정 속에서 조금씩 건축의 틀을 잡아나갔다. 실제로 아름 내부의 프리젠테이션 과정은 디자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변에 머물던 설계스텝들을 주체로 끌어들여 훈련시키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고, 그 과정의 결과물을 그대로 건축주 브리핑으로 활용하여 따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았다.

초기의 과정은 당연히 대지를 둘러싼 조건과 건축주가 제시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이었다. 대지는 파주출판단지 내에서도 좋은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동쪽으로 심학산이 펼쳐져 있고 북쪽으로 펼쳐진 오픈스페이스의 자연녹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멀리 한강에 이르는 조망을 가진 대지에 들어서는 건물이 자연과 어떻게 서로 호흡할 수 있을 것인가가 설계에서 공사 마무리까지 중요한 요소였다. 또한 창고, 로비 및 휴게공간, 업무공간(임원실, 회의실, 일반 업무공간 등), 게스트하우스 등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는 공간들이 서로 적절히 연결되고 차단되면서 이 모든 공간을 아우르는 즐겁고 다양한 경험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

각자의 영역을 갖는 공간들을 통합시켜 주면서 자연과 경관을 받아들이는 내부의 비워진 공간을 설정하고, 이 비워진 공간을 중심으로 남쪽에 모듈화 된 업무영역, 북쪽에 관리영역을 배치하였다. 또한 높은 층고의 창고공간을 확보하면서도 창고가 전체건물의 경관을 장악하지 않도록 로비와의 진입레벨 분리, 공간의 중첩을 모색하였다.

건물 내부로 진입을 하게 되면 심학산의 자연이 펼쳐진 로비공간을 경험하게 된다. 이 공간은 긴 램프를 따라 투명하게 펼쳐진 아트리움으로 전개되면서 자연스러운 동선이 이어진다. 아트리움에서 외부와 내부의 경계, 외피와 내피의 개념은 사라지게 되며, 아트리움과 업무공간을 제어해주는 장치로 형성된 Inner Skin이 건물의 또 다른 표정이 된다. 이 아트리움과 Inner Skin은 각 공간들을 연결시켜주는 계단 및 연결 브리지와 어우러지면서 이 건물이 품고 있는 시각적, 공간적 중심을 이루게 된다. Inner Skin의 내부는 수납 및 설비시스템을 담고 있어서 출판사라는 특성상 필요로 하는 기능의 보완을 담당하였다.

더불어 집필 공간 및 주말주택으로 사용될 게스트하우스는 그 특성상 업무공간과 별도의 동선으로 구분하여 최상층에 독립적인 공간이 되도록 배치하였다. 게스트하우스 내, 외부에 파고 들어간 외부공간은 프라이버시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옥외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율되었다.

청문각의 디자인은 과장되지 않으며, 인위적인 형태나 새롭고 실험적인 외피를 갖지 않는다. 또한 전체 단지의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되었던 장방형의 형태나 오픈스페이스의 조직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조건이 부여하는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였고, 그 조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의 결과물로서의 청문각이 갖는 의미를 중시하고자 한다.

1 2

1_ 동측 야간 전경
2_ 북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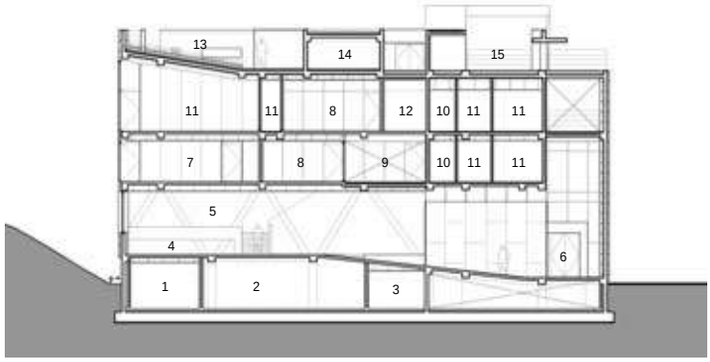

01_ 사무실
02_ 창고
03_ 관리사무실
04_ 라운지
05_ 갤러리
06_ 로비
07_ 회의실
08_ 임원실
09_ 테라스
10_ 탕비실
11_ 화장실
12_ 비서실
13_ 옥상정원
14_ 저수조
15_ 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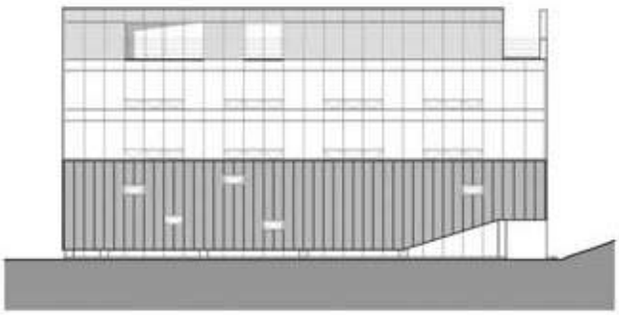

남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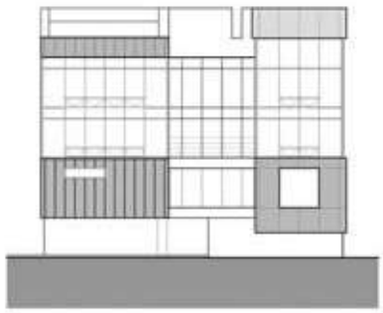

동측입면도

1 3
2 4

1_ 입구에서 바라본 로비공간
2_ 북측 자연으로 열린 로비공간
3_ 아트리움 공간과 연결브리지
4_ Inner Skin과 연결브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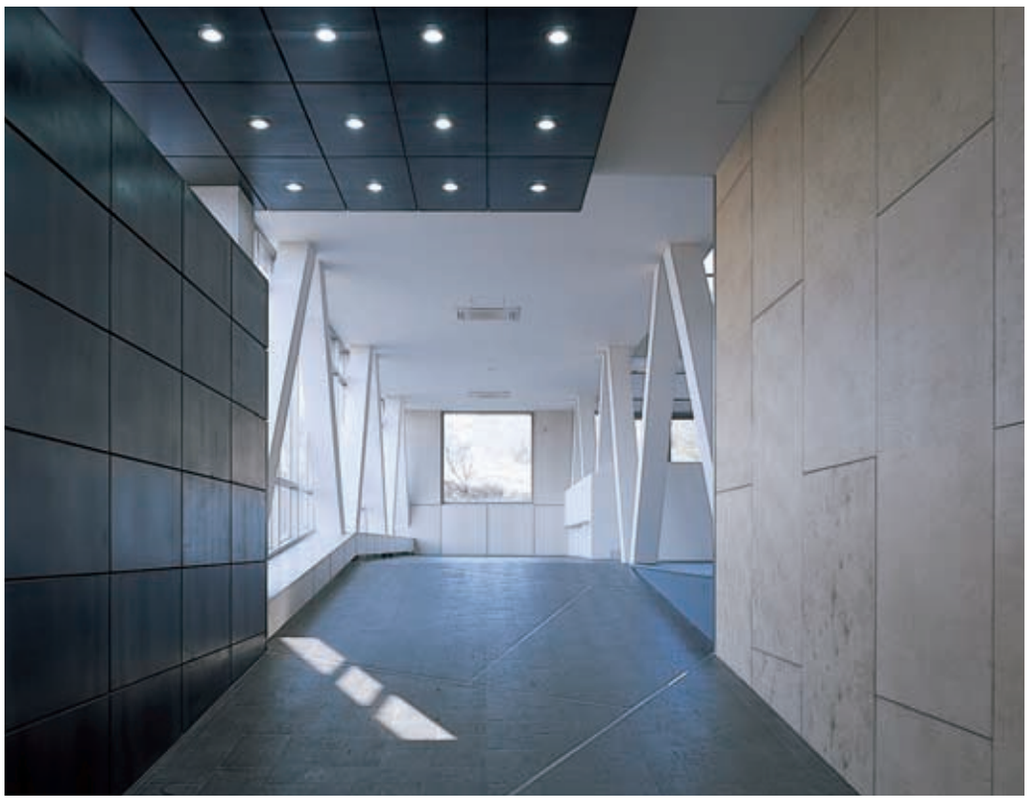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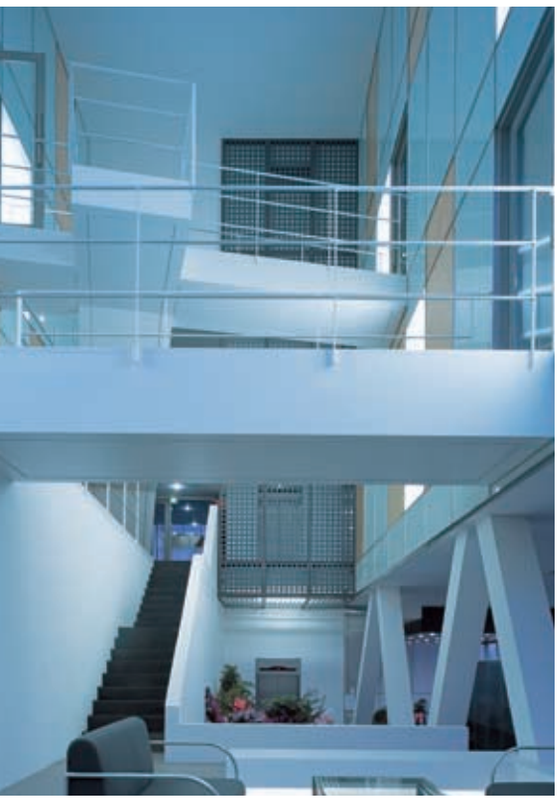

01_ 갤러리
02_ 로비
03_ 라운지
04_ 창고
05_ 화장실
06_ ELEV.홀
07_ 사무실
08_ 테라스
09_ 회의실
10_ 임원실
11_ 탕비실
12_ 비서실
13_ 거실
14_ 주방 및 식당
15_ 침실 및 서재
16_ 저수조
17_ 옥상정원
18_ 데크
19_ 보일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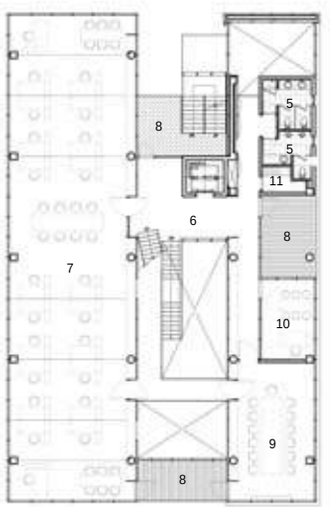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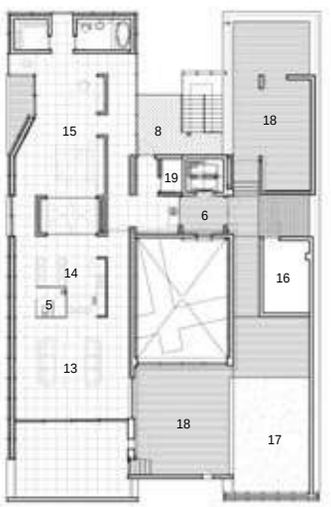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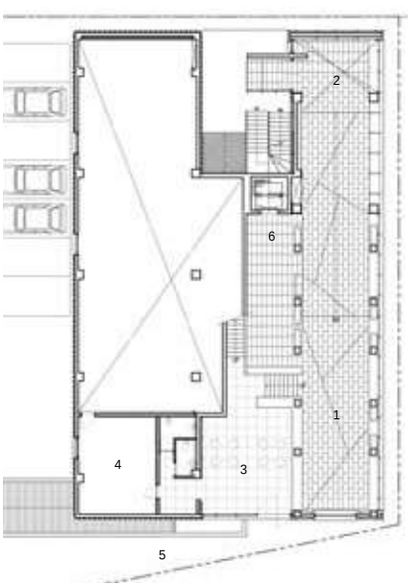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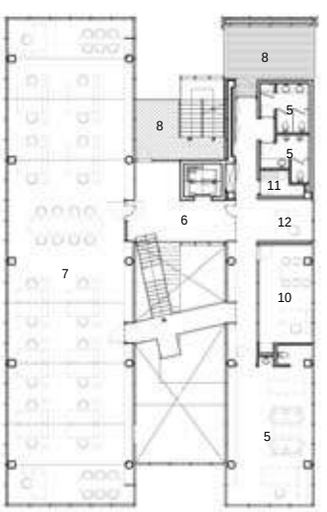

3층 평면도

한규봉 / (주)천일건축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by Han Kyu-bong, KIRA

건축물 안전성능 실험센터
Building Safety Performance Research Center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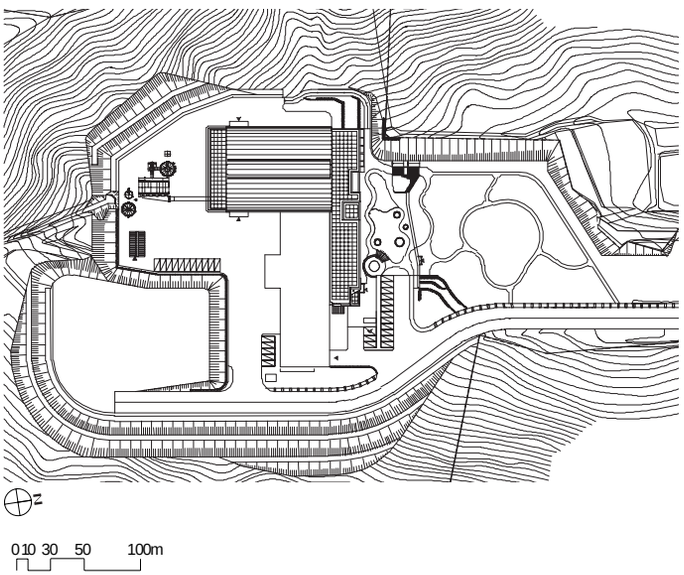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백곡리
지역지구	관리지구, 농림지역
주요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대지면적	61,266.00㎡
건축면적	3,445.79㎡
연 면 적	6,552.96㎡
건 폐 율	5.62%
용 적 률	8.37%
규 모	지하1층, 지상4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철골조
내부마감	화강석물갈기, 비닐계타일, 흡음텍스, 수성페인트
외부마감	화강석 버너구이, 두께75 미네랄울 패널, T16 칼라 복층유리
설계담당	안형태, 최유안, 양이직, 김의경, 배형근, 박형범, 신성호, 홍종관, 최윤영, 안병규
구조설계	동양구조
설비설계	남진설비
전기설계	천일건축
조경설계	투니원
토목설계	오이디

Location	Baekgok-ri, Mado-myeon, Hwaseong-si, Gyeonggi-do, Korea
Site area	61,266.00㎡
Bldg area	3,445.79㎡
Gross floor area	6,552.96㎡
Bldg. coverage ratio	5.62%
Gross floor ratio	8.37%
Structure	R.C + S.C
Bldg. Scale	B1, F4

1 2
1_ 조감도(사업완료 후)
2_ 야경

빈번한 화재발생으로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익적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방재실험연구를 통하여 사회공헌과 국가경쟁력 향상 및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실험연구단지 구축을 목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시작되었다.

건물을 계획함에 있어서 이전에 건설된 사례가 국내에는 없기 때문에 해외 각국의 사례들을 견학하여 벤치마킹 하는 것을 프로젝트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 유럽 등의 유수의 연구소를 견학하면서 실험센터의 필요성과 우리나라가 화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으며, 기본자료가 부족함에 따라 3개월 예정인 기본계획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조정 변경되었다.

설계가 진행되는 기간중에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은 대형화재사건의 발생으로 국민적인 관심이 증대되어 프로젝트의 진행이 빨라졌다. 초기에 계획했던 프로그램보다 많은 요구사항들이 첨가되면서 프로젝트의 규모가 증가되고 그로 인한 예산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예산에 맞춘 설계를 고려하다보니 건물의 특성상 건물자체보다는 실험기자재의 비중이 높아 실험을 위하여 건물의 규모를 축소하고 마감재를 변경하는 아픔을 겪으며 처음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초기의 계획은 연구, 회의 부분을 중심으로 배면부는 시료준비 및 실험동을 배치하였으며, 야외시험공간 및 향후 증축을 위한 유보지 계획도 아울러 병행되었다.

남북으로 긴장방형 대지는 20%이상의 경사를 갖고있어 경사를 이용한 자연스런 시설물의 배치와 기능별 Open Space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부지가 북사면으로 다소 불리한 입지조건은 인위적으로 Level을 조성하여 최대한의 채광 및 환기를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그 중심에는 대화, 휴게, 교류를 위한 광장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시설의 중심으로 계획되었다.

평면은 기능 및 동선의 수평 · 수직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시설계획이 되도록 하였다.

입면은 주변 산세의 Sky Line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지 및 지역환경에 순응하는 수평적 요소를 부여하여 변화있는 입면계획을 하였으며, 과도한 장식적 표현보다는 단순한 조형미를 강조하였다.

예산부족으로 인해 전체 마스터플랜상의 실험동의 일부분만 준공을 하고, 시설의 단계적 조성계획에 따라 연구동 및 일부 실험동은 추후 증축할 예정이다.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의 건축으로 전체적인 완결성이 떨어지는 아쉬운 면이 많이 남는 프로젝트이다.

■ **주요실험시설**

- **실물화재성능 실험동**
  - Large Cone Calorimeter
  - Single Burning Items
  - Room Corner Tester
- **재료성능평가 실험동**
  - 건축구조재료 열특성 측정장비
  - 시료준비실, 공작실
- **연소특성평가 실험동**
  - 건축자재 연소특성 측정장비
  - 건축자재 가스성분 분석장비
  - 화재안전 요소설비 신뢰성장비
- **공용공간**
  - 실험용 가스저장소
  - 회의실, 경비실 등
  - 복도, 화장실 등

■ **건설예정시설**

- **내화 실험동**
  - Wall Testing Furnace
  - Slab Testing Furnace
  - Column Testing Furnace
- **철도화재안전 실험동**
  - Furniture Cone Calorimeter
- **도로터널 화재안전 실험동**
  - 물분무 설비
  - Water Mist 설비

1 3 2 4

1_ 올려다 본 입면 디테일
2_ 북동측 전경
3_ 실물 안전 성능 평가실 집건설비
4_ 남동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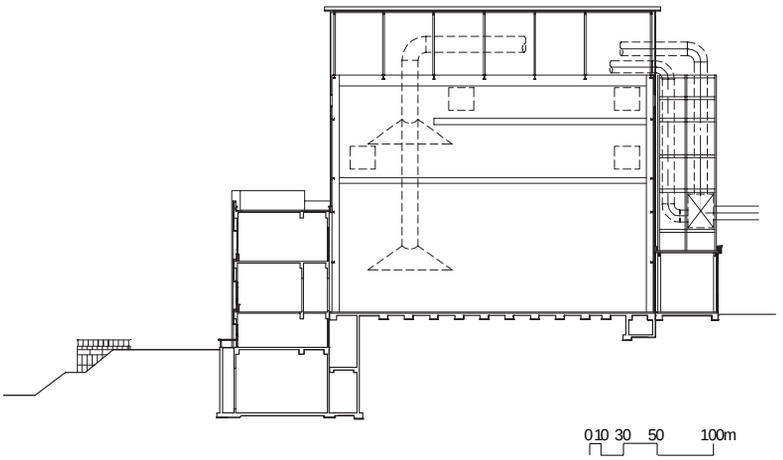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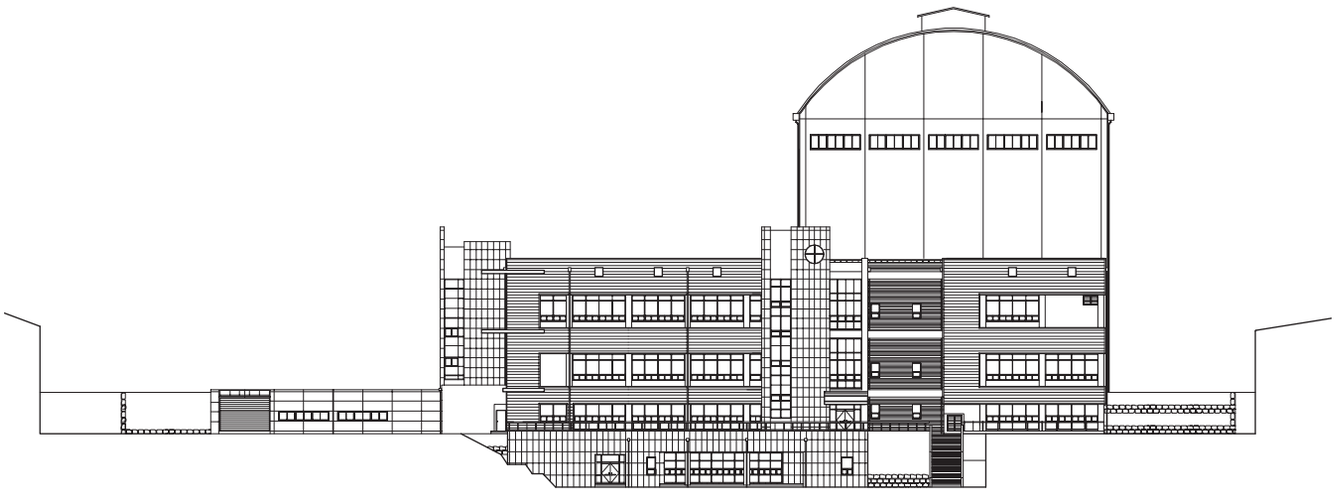

정면도

1 2 1_ 홀에서 바라본 야외조망
2_ 북동측 야간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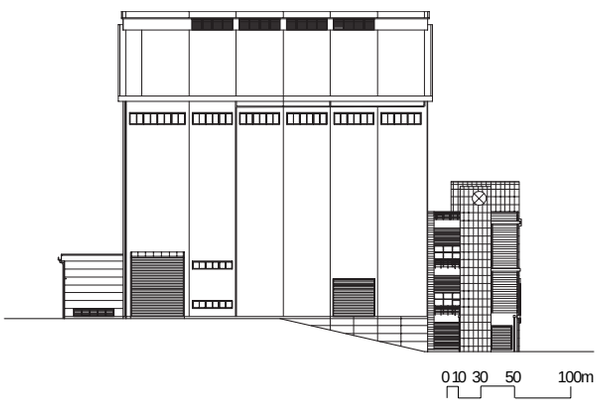

측면도

01_ 방재센타
02_ 전산실
03_ MDF실
04_ 폐수조 관리실
05_ 중앙감시실
06_ 사무실
07_ 실험실
08_ 동력실
09_ 항온항습실
10_ 구조재료 실험실
11_ Dual Cone, 실험실
12_ 유독가스실험실
13_ 실물안전 성능평가실
14_ SBI 실험실
15_ 제어실
16_ Room Corner Test
17_ 제연 성능실험실
18_ 연소특성 평가실
19_ 표면연소 실험실
20_ 자료실
21_ 공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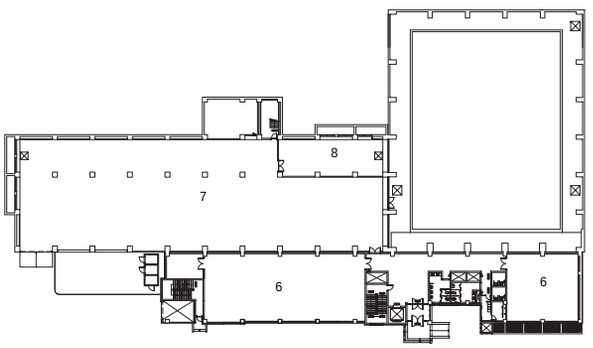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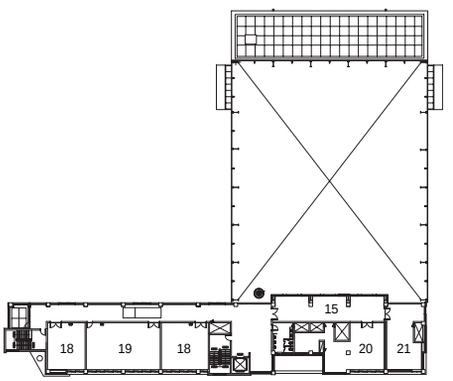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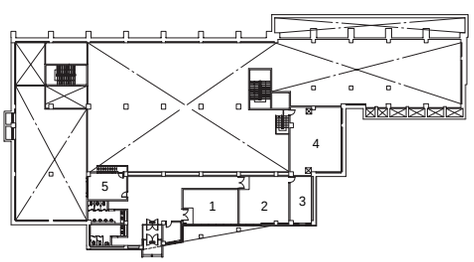

0 10 30 50 100m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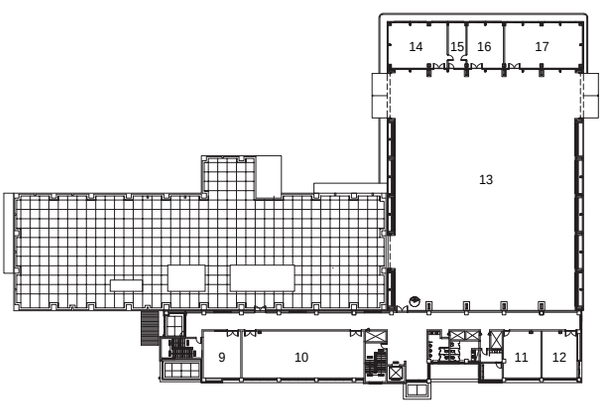

3층 평면도

이종찬 / (주)원양건축사사무소
by Lee Jong-chan, KIRA

양재 하이브랜드
Yangjae HIBRAND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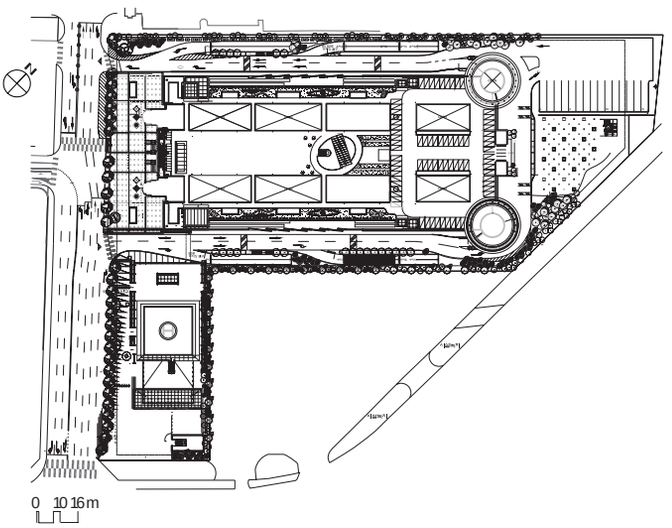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 서초구 양재동 215번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 유통업무설비지구
대지면적	27,790.0㎡
건축면적	9,905.39㎡
연 면 적	160,079.44㎡
조경면적	5,158.40㎡
건 폐 율	35.64%
용 적 률	269.74%
규 모	지하 3층, 지상 19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PC조
내부마감	대리석, 화강석, ACCESS FLOOR
외부마감	THK 3.0 ALUMINUM SHEET THK24 컬러복층유리, THK24 투명강화유리
구조설계	(주)C.S 구조
설비설계	(주)미도설비
전기설계	(주)IB 엔지니어링
시 공 사	(주)한화건설
건 축 주	(주)인평
사 진	채수옥

Location	215 Yangjae-dong, Seocho-gu, Seoul, Korea
Site area	27,790.0㎡
Bldg. area	9,905.39㎡
Gross floor area	160,079.44㎡
Bldg. coverage ratio	35.64%
Gross floor ratio	269.74%
Structure	R.C, PC
Bldg. Scale	B3, F19

1 2
1_ 매헌로에서 전경
2_ 패션관 정면

하이브랜드는 전문적 마케팅 계획으로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기호의 변화예측, 철저한 상권입지 조사, 다양하고 타당한 업종 및 규모분석, 선진국의 유통산업 벤치마킹 및 도시에 제공되는 대규모 복합시설로서의 역할 등 각종 요소들이 철저한 조사와 데이터 분석에 의해 프로그램이 설정되었다.

프로그램

첫째, 원스톱 쇼핑타운(One · stop shopping town)의 구성

둘째,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기능의 강화

셋째, 유럽형 스트리트 쇼핑몰(Street shopping mall)의 구성

넷째, 판매시설과 부대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복합단지 구성을 위한 업무시설 공간 확보

마지막으로 이용객 및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테마의 외부공간계획이었다.

배치계획은 대지의 형상에 순응하고 기능 및 규모에 의해 수평적 요소의 판매시설과 수직적 요소의 업무시설로 구분 배치하였다. 그리고 판매시설은 3개동으로 분절하여 각 동간 폭 12m, 길이 150m 규모의 스트리트 쇼핑몰 두 곳을 구성하였다.

보행자 동선계획은 전면 진입광장에서 시작 스트리트 쇼핑몰을 통과하여 후면광장에 도착하고, 진입 때와는 다른 스트리트 쇼핑몰을 통하여 전면광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그리고 두 곳의 스트리트 쇼핑몰은 서로 다른 테마를 갖는 거리계획으로 다양한 공간이 연출되도록 하였다. 또한 두 곳의 스트리트 쇼핑몰은 중앙 로툰다(rotunda) 에서 서로 연결되어 보행자들에게 지름길과 휴게공간을 제공하며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을 배치하여 수직적인 이동도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외부공간계획으로 전면광장은 이용객과 지역주민들의 만남, 휴식 등의 공공 공간의 성격, 스트리트 쇼핑몰은 엔터테인먼트와 테마를 갖는 상업적 이벤트 공간, 후면광장은 생태공원, 야외 문화 공연장 등 전면광장의 기능과 같은 이용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 공간의 계획으로 상업시설로서의 마케팅적인 요소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시민 서비스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상호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교통계획은 단지외곽으로 순환도로를 구성하여 진입, 주차, 진출 모두 일 방향 차량동선으로 계획하였고, 이용수요가 많은 대형할인점은 전용 주차장과 독립된 주차 진 · 출입구를 구성하여 기타 시설 이용차량 및 보행자와의 동선분리로 원스톱 쇼핑타운의 이용에 있어서 편리함과 안전성을 부여했다.

디자인계획은 수평적 요소의 판매시설은 기존의 대형광고 사인으로서 무표정한 역할을 지향하고자 분절과 조합, 다양한 형태의 창 구성 및 기능적인 요소로서 도입된 램프를 디자인화 하여 도심 가로 경관을 제공하도록 하였고, 지리적인 위치상 서울의 관문으로서 보여지는 타워는 상 · 하부 유리커튼월의 다양함으로 서로 다르게 투영되고, 저층 판매시설, 고층 업무시설의 담겨진 프로그램으로 인한 시간대별로 변형되는 모습들을 통하여 상징성을 갖도록 하였다.

하이브랜드는 대규모 복합 상업시설로서 다양한 형태의 사업과 운영체계 서로 다른 주체로서의 소비자, 판매자, 운영자 그리고 대규모 도시시설로서의 지역주민을 위한 배려 등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만 하는 어려운 프로젝트였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조사, 분석하고 토론하여 최고의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 했지

만 완벽함이란 신(神)만이 창조할 수 있듯이 그 동안의 적지 않은 시행착오로 아쉬움도 있었다. 하지만 아쉬움 보다는 기쁨과 만족감이 더 많은 프로젝트로서 시작할 때 기획했던 유통시장의 뉴 트랜드(New Trend)로서 하이브랜드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원하며, 하이브랜드의 완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1_ 전자관 전경
2_ 패션관 전경
3_ 패션관 측면
4_ 패션관, 전자관 연결 브리지

01_ 집배송
02_ 주차장
03_ 도매센타(푸트코드)
04_ 대형점
05_ 기계실
06_ 도매센터
07_ 화장실
08_ P.S
09_ 업무시설
10_ 근생시설
11_ 써튼가든
12_ 검품장
13_ 하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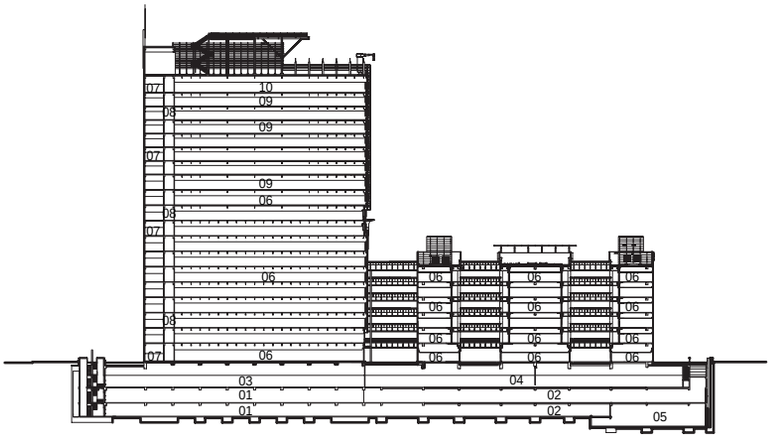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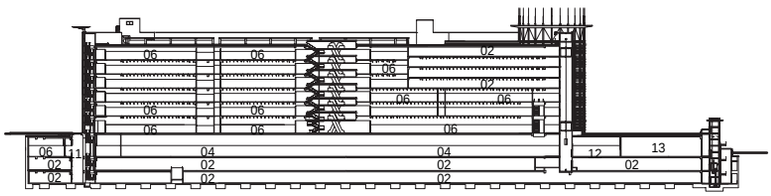

횡단면도

0 10 16m

1 2 3

1_ 패션관 스트리트 쇼핑몰
2_ 패션관 중앙계단
3_ 패션관 중앙홀

01_ 푸드코트
02_ 할인점
03_ 하역장
04_ 판매시설
05_ 스트리트 쇼핑몰
06_ 옥상 휴게/이벤트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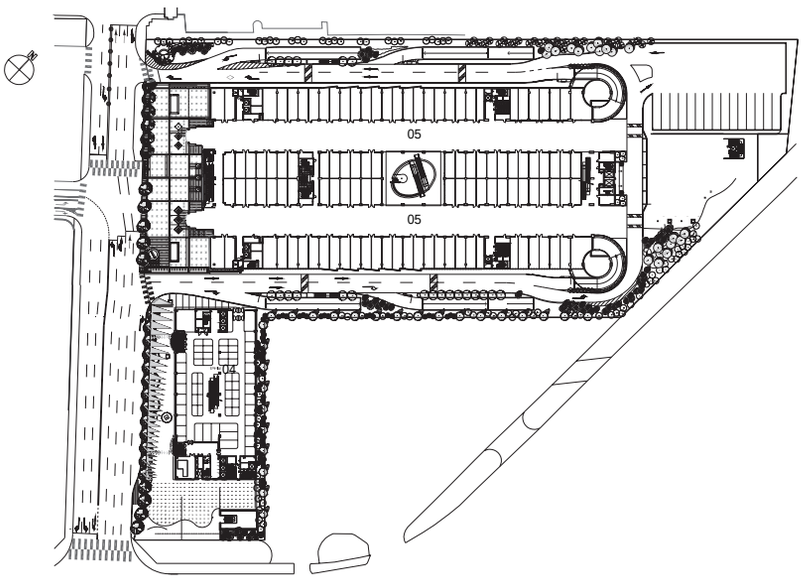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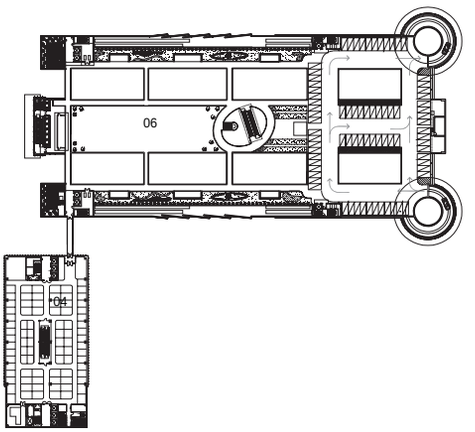

7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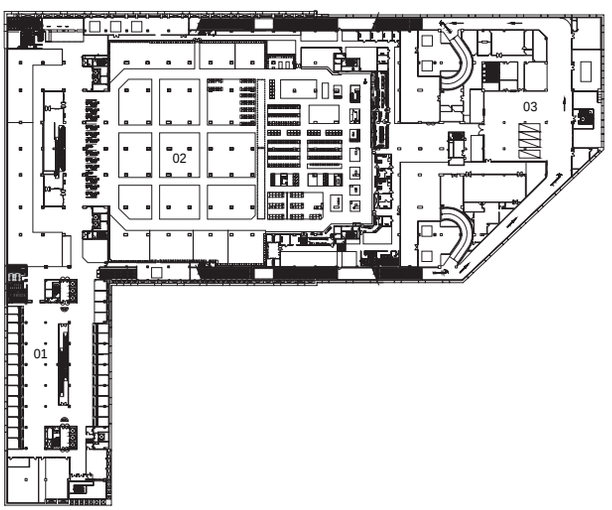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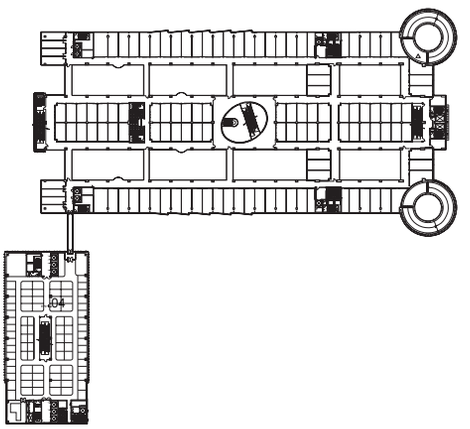

2~3층 평면도

0 10 16m

조도연 / (주)디엔비건축사사무소
by Cho Do-yeun, KIRA

대전 외삼중학교
Daejeon Oesam Middle School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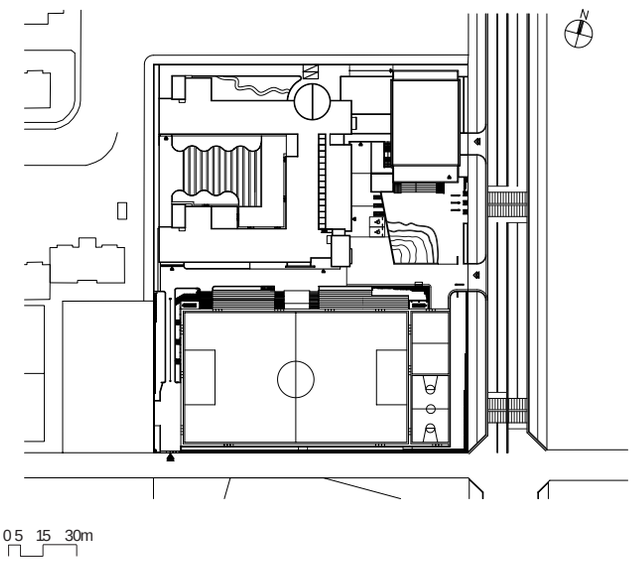

● 건축개요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614번지
지역지구	노은2 택지개발지구, 3종 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학교)
대지면적	13,261.00㎡
연 면 적	10,901.04㎡
건 폐 율	26.02%
용 적 률	71.40%
규 모	지하1층, 지상4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외부마감	압출성형시멘트패널, 칼라치장벽돌, 외단열시스템, 알루미늄루버
구조설계	P.E.G 구조
설비설계	G.I.E 기술사사무소
전기설계	주식회사 혜광
시 공 사	서진산업(주), (주)도원디테크
사 진	채수옥

Location	614 Banseok-dong, Yuseong-gu, Daejeon, Korea
Site area	13,261.00㎡
Gross floor area	10,901.04㎡
Bldg. coverage ratio	26.02%
Gross floor ratio	71.40%
Structure	R.C
Bldg. Scale	B1, F4

1 2 3
1_ 남동측 전경
2_ 안마당 전경
3_ 운동장에서 바라본 남측 전경

교육시설은 누구나 쉽게 접해왔던 시설이고 이에 대한 사고정립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용도의 시설이다. 그러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기존의 틀을 벗어나기에 제약요건이 많은게 사실이다. 일단, 학교건물은 밀도가 높은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기능과 동선에 충실해야 하고 공공건물이다보니 시험적인 시도보다는 보편성과 타당성에 치중해야하며, 면적 한계와 공사비 제한으로 인한 디자인의 한계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건축물 본연의 공간구성도 중요하지만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프로그램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대전 노은지구에 들어선 외삼중학교는 이러한 Public Space의 공간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출발하여 컴팩트한 배치구성과 내부 Public Space의 풍요로운 구성을 잘 결합한 좋은 실례이다.

학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공간은 교실공간과 비교실공간이다. 여기서 말하는 비교실공간이라함은 복도, 홀, 연결통로, 데크, 내부녹지공간 등 교실 이외의 공간인데, 교실 못지않게 중요한 Public Space로서 이러한 공간의 성격과 Design이 결국 학교시설의 주체인 학생들에게 풍요로운 공간을 제공하는 요소가 된다.

대전 노은지구에 들어선 외삼중학교는 이러한 Public Space의 공간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출발하여 컴팩트한 배치계획으로 학생들의 내, 외부 동선의 연계성을 높이고 다양한 실내공간을 풍요롭게 마련하여 색다른 학교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하였다.

먼저 내부공간을 살펴보면, 자연을 내부로 끌어들인 그린존은 교과동과 교과동을 연결하는 매개공간으로서 학생들에게 친환경적인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두 개층으로 Open된 공간은 천창을 통해 내부로 자연광을 유입하여 빛과 함께 다양한 내부공간을 연출한다. 또한 중앙홀에 지역문화전시 및 학생작품 전시코너를 계획하여 휴게 및 만남의 장소로 활용한다.

외부공간에서는 데크, 필로티 등을 이용하여 체육관에서 교과동까지의 동선을 연속시키고 특별교과동 1층을 Open시켜 폐쇄적일 수 있는 느낌을 없애고 조경과 잔디블럭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인 공간을 구성하였다.

1	3
2	4

1_ 주계단실 및 Core
2_ 2층 데크 및 외주계단
3_ 내부 Green Zone 복도
4_ 내부 Green Zone

01_ 놀이마당
02_ 방송실
03_ 교육센터
04_ 교장실
05_ 특수교사
06_ 가사실
07_ 기술실
08_ 복도
09_ 소나무동산
10_ 시청각실
11_ 무대
12_ 보건실
13_ 식당
14_ 교실
15_ 교사연구실
16_ 데크
17_ 미술실
18_ 정자마당
19_ 체육관
20_ 과학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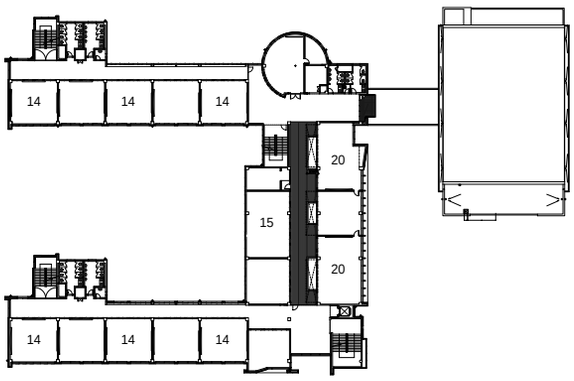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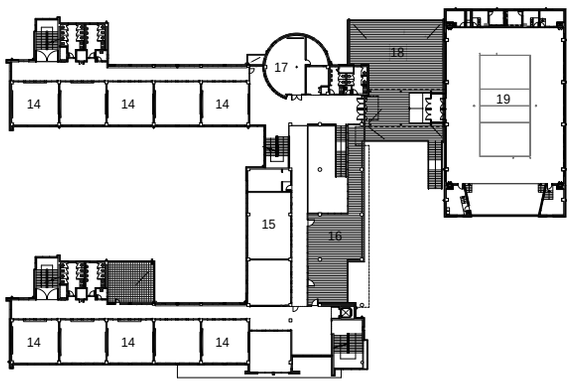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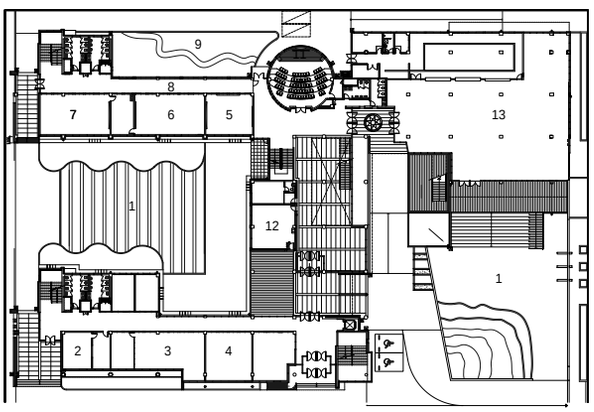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이창훈 / 호정도시 종합건축사사무소
by Lee Chang-hoon, KIRA

양평주택
YangPyeong House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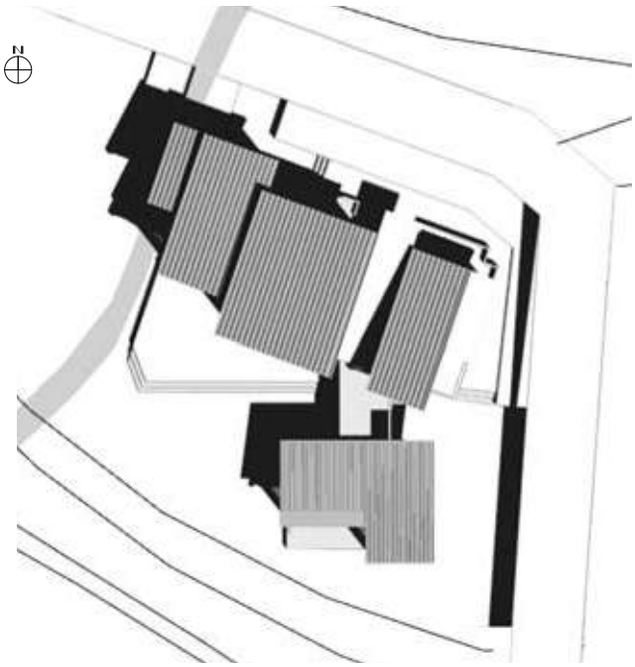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릉리 156-56외3필지
지역/지구	관리지역
주요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895.87㎡
건축면적	지상1층 143.07㎡
연 면 적	지상1층 143.07㎡
건 폐 율	15.95%
용 적 률	15.95%
규 모	지상1층 목구조
발 주 처	조영충

경기도 양평리 수릉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의 산물로서 이 지역 고유의 가치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재창출하여 단지 내 구축의 시발점으로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는다.

파괴된 지형의 복원과 순응으로 Good View, Good 향의 배치를 통해 대지내로 흐르는 골짜기 물줄기를 기존의 줄기로 유지하며 소생물권과 친수환경을 유도한다.

대녹지를 확보하여 방풍림역할-자연의 복원, 자연재료(목재, 향토, 기와)사용으로 조류서식, 자연생물계와 공생을 유도한다.

뒷산과 옆산, 앞산과의 교류를 시도하며 대화를 모색한다.

최대한 개구부를 열어두며 통풍, 일조, 자연환기에 따른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자연과 호흡을 같이 한다.

자연과 어우러져 자연의 소리를 음악으로 인간과 자연, 건축이 어우러진 공생적 공간을 모색한다.

• 구축

- 구조 : 미송재를 사용하고 폐가옥의 재료를 사용한다.
- 바닥 : 자연재료인 목재마루, 흙바닥, 전통온돌(안방)을 도입하고 솔잎가루, 콩가루, 은행잎가루 등을 혼합사용한 황토흙으로 쾌적한 환경을 추구한다.
- 벽 : 나무, 황토벽, 폐기와, 짚부스러기 등을 사용하여 자연재료를 재사용한다.
- 개구부 : 자연채광의 실내유입을 최대화하고 남북으로, 동서로 원활한 통풍을 유도한다.
- 지붕, 천정 : 흙으로 구운 기와를 사용하고 접착시 진흙, 회반죽 목재료로 이루어진 구조와 자연재료로 마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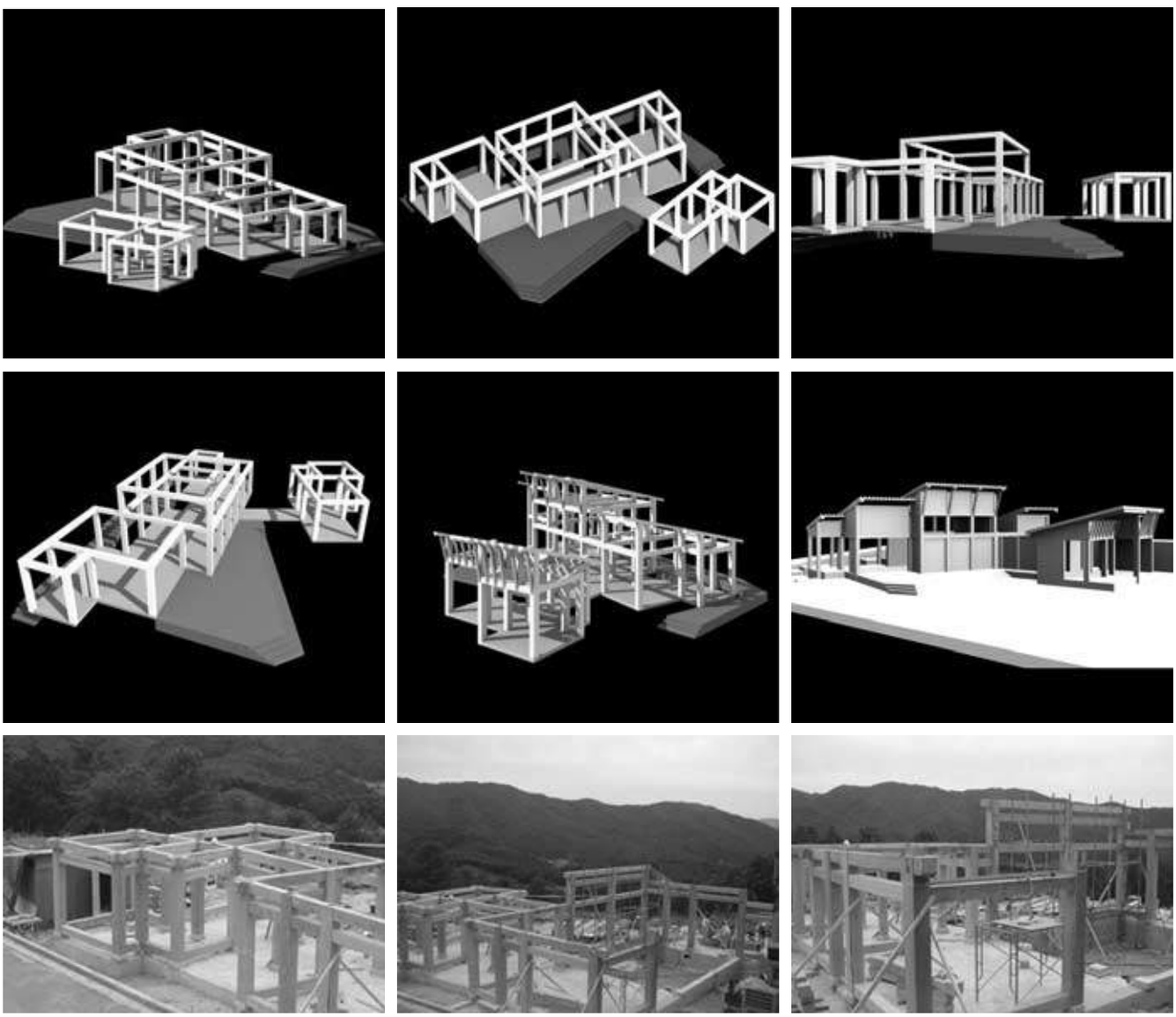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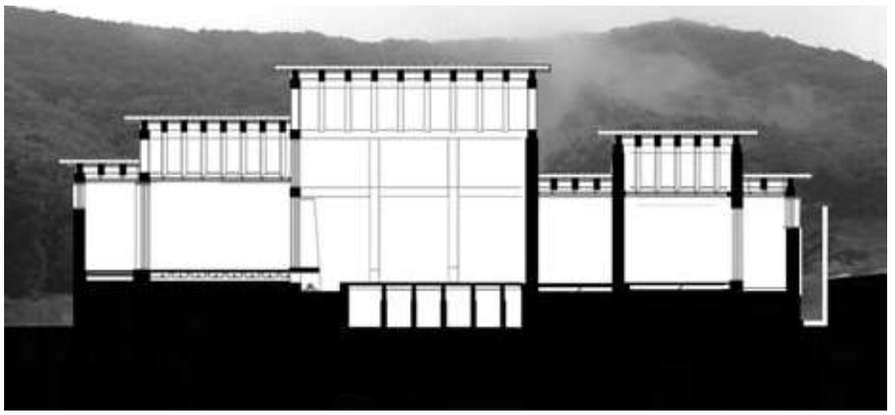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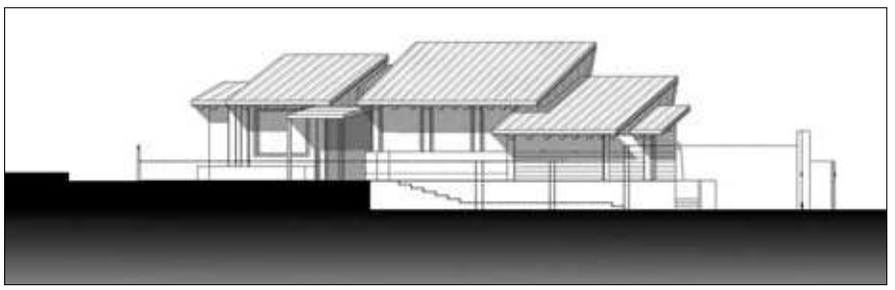

입면도

01_ 현관
02_ 거실
03_ 식당
04_ 부엌
05_ 안방
06_ 드레스룸
07_ 파우더룸
08_ 화장실
09_ 복도
10_ 서재
11_ 방
12_ 다용도실
13_ 옥외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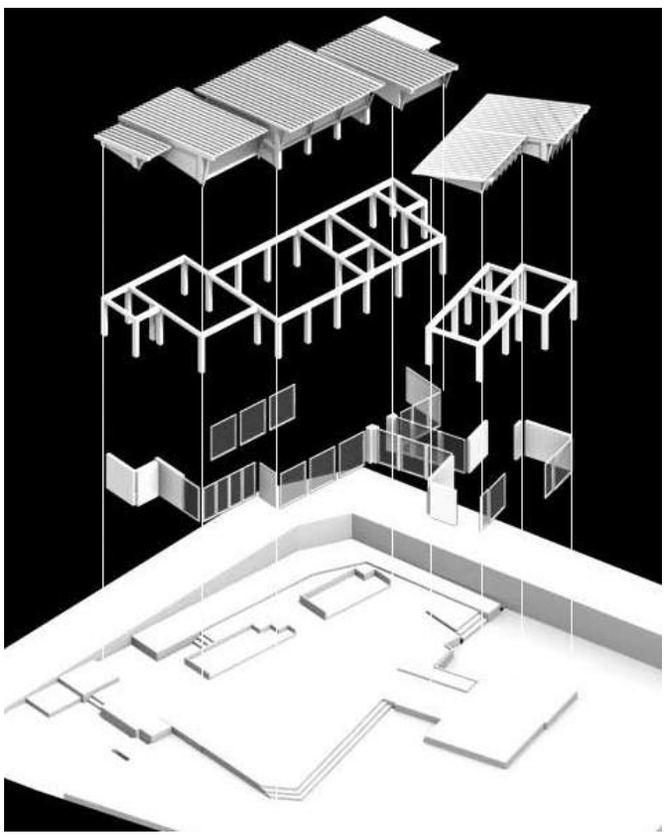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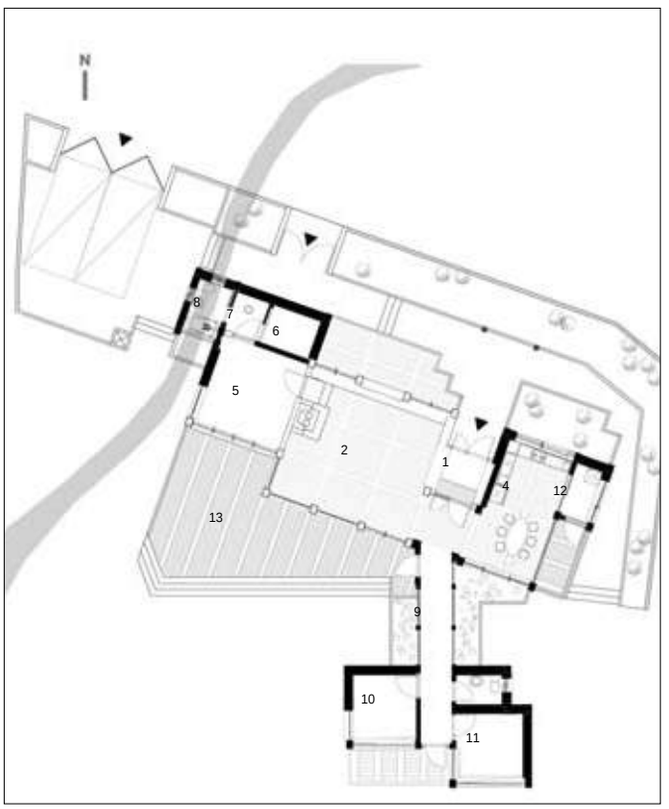

평면도

설계경기 | Competition

하동군 보건소

Hadong-gun Public health Center

경남 하동군은 경제자급구역 지정을 대비한 공공의료기관을 신축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만성질환 등 신종질병 예방에 대처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 기피하고 있는 노인치료, 치매사업, 재활프로그램 등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신축을 위해 설계경기를 실시한 바 당선작으로는 '태화건축사사무소(조태화)+미가건축사사무소(이주용)'의 안을, 우수작으로는 '석림건축사사무소(이충호)'의 안을 각각 선정, 발표하였다.

당선작 / 태화건축사사무소(조태화)+미가건축사사무소(이주용)

대지위치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49-1번지외 9필지
지역지구	생산녹지지역
대지면적	13,495.00㎡
연 면 적	2,669.94㎡
건축면적	1,560.37㎡
건 폐 율	11.56%(법정 : 20%)
용 적 률	19.78%(법정 : 100%)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층 수	지상2층
최고높이	12.0m
외부마감	압출성형시멘트판, 고밀도목재패널, 칼라복층유리, 석재마감
설계담당	태화-이정필, 은종민 미가-김미정, 김태은, 이기석

계획의 기본 방향

- 상 징 성

  미래 지향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집'과 같이 친근한 내 · 외부 공간 표현

- 공공성

  공공시설로서의 개방성 표현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장소로 쾌적함, 편리함 제공

- 기능성

  진료 · 치료 · 업무 기능의 효율적인 공간 구성 및 이용자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 계획

- 환경성

  자연을 도입한 쾌적한 시설 및 친환경 설계의 적극적 반영

- 경제성

  유지 · 관리 및 보수의 용이성 고려 및 에너지 절감 계획에 의한 경제성 도모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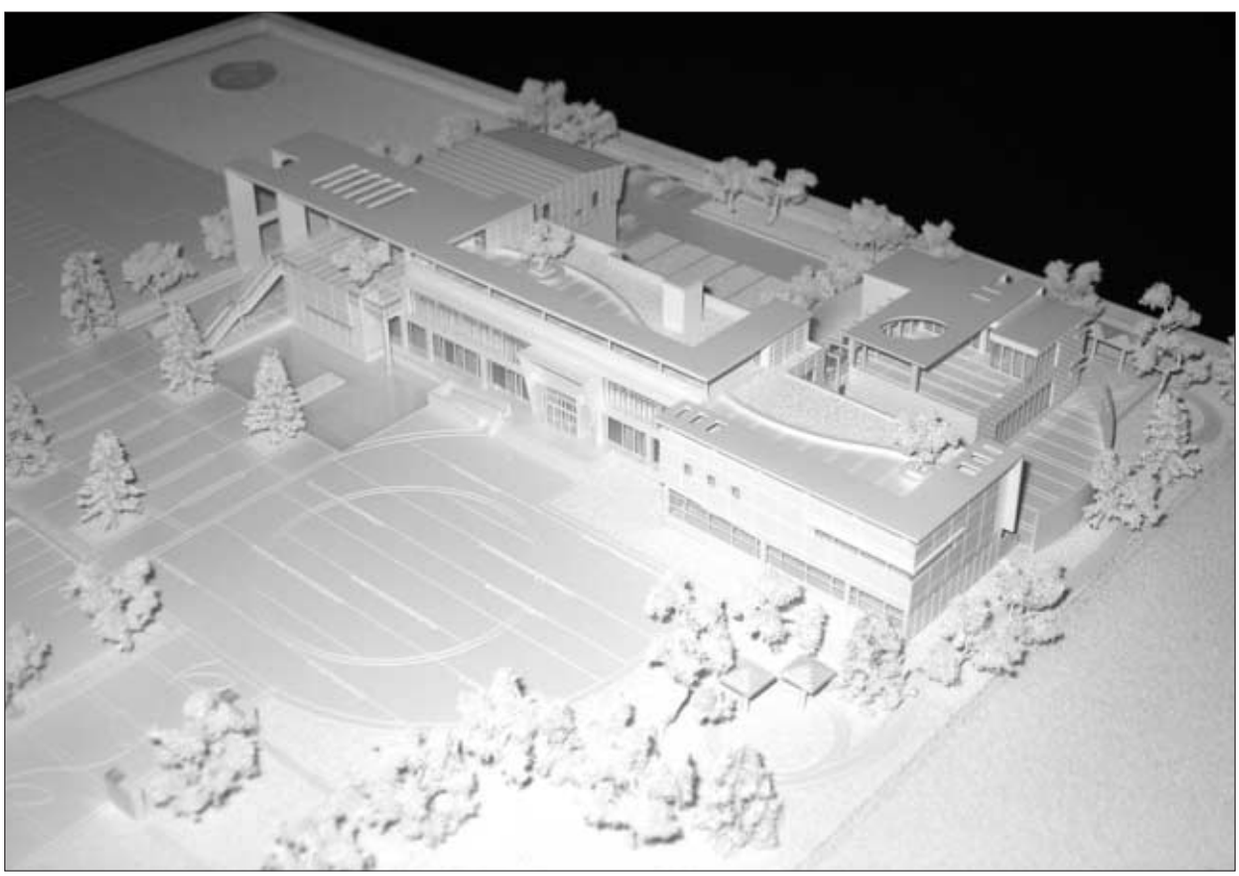

배치 계획

- 계획의 주안점

  부지의 체계적인 이용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군청과의 연계를 긴밀히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또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개방성을 가져야 하며, 공익성을 갖도록 계획한다.

- 주변 도시맥락의 흐름을 반영

  군청과 군 의회 건물의 축에 순응하여 주변 도시맥락의 흐름을 반영하고 이끌어갈 거점을 제공한다(대지 후면으로 배치).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건물배치와 시각적 개방을 고려한 매스를 계획한다.

- 연속된 외부공간의 연결로 주민의 접근성과 개방성의 극대화

  보차분리에 의한 진입의 편의성, 안정성 확보를 통해 군청 · 보건소 및 향후 공용주차장의 연계하고, 사업부지내 서비스동선을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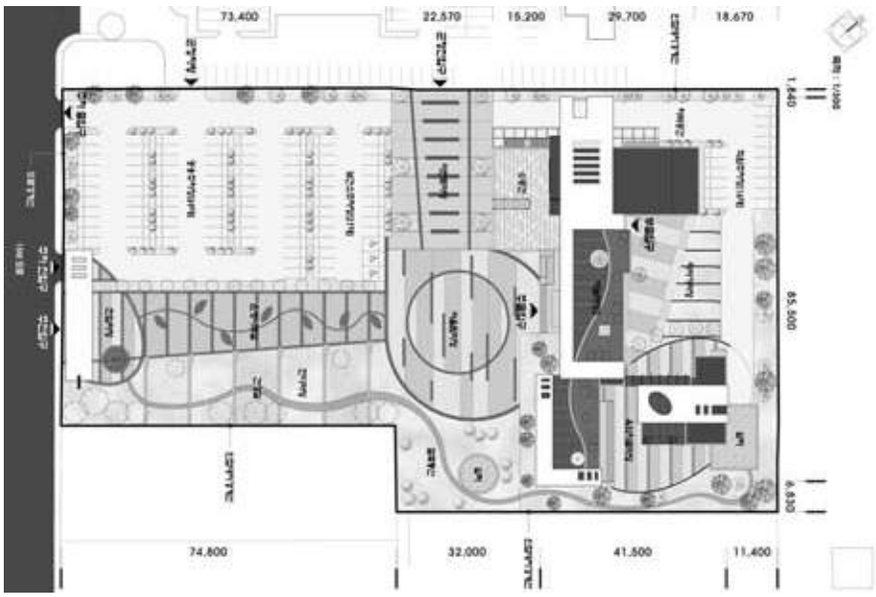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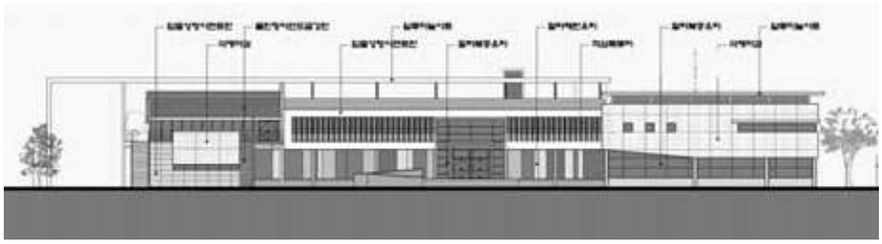

남측면도

횡단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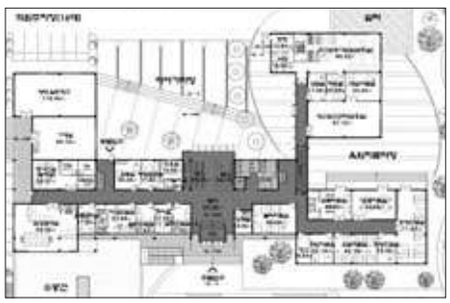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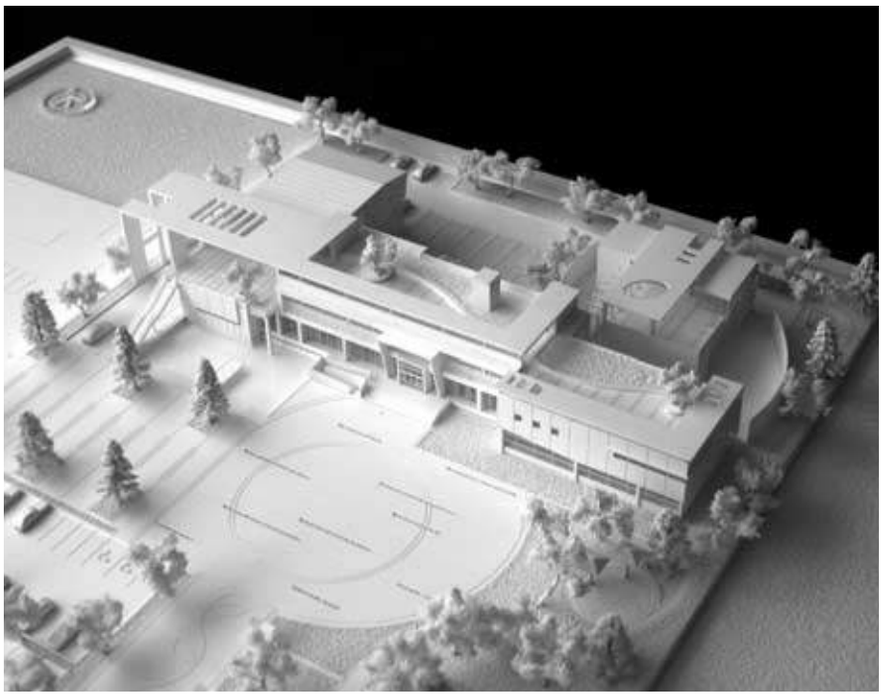

하동군 보건소

Hadong-gun Public health Center

우수작 / 석림건축사사무소(이충호)

대지위치 하동군 읍내리 149-1번지 외 9필지
지역/지구 생산녹지지역
주요용도 공공용시설(보건소)
대지면적 13,495㎡
건축면적 2,072.90㎡
연 면 적 2,771.88㎡
건 폐 율 15.36%(법정 : 20%)
용 적 률 20.54%(법정100%)
규 모 지상 2층
설계담당 이기욱, 박재성, 이현정

물길따라 꽃길 가득한 '치유의 쉼터'

대지주변에 하동을 상징하는 너른 들판의 너뱅이들이 형성되어 있어 치유의 옥외 공간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수용, 물길, 꽃길, 치유의길로 Concept을 정하고 다양한 옥외공간을 설정하여 몸과 마음을 치유하며 여유로움을 찾는 보건소를 제공한다.

배치계획

- 건물의 주축을 건물배치와 동선계획의 적용에 합리적인 도로에 의해 형성된 도시축으로 설정
- 전면도로에서 접근하는 곳에 공공공지를 구성하고 시각적으로 양호한 부지후면에 주건물을 배치함
- 보차분리의 원칙
- 수직 · 수평 증축을 고려한 배치영역 확보
- 인접 군청과의 기능적 연계성 확보
- 공공공지로 인한 보행자 동선과 차량진입에 의한 동선을 분리하고 인접 군청 주자장과의 연계동선 확보 로 부지 활용도를 높인다 .
- 일반주차공간과 직원주차공간을 분리하여 동선의 복잡합을 해소한다.
- 건물의 중정형 도입과 의료시설과 보호시설의 분리로 이용동선의 혼잡함을 기능적으로 차단
- 다양한 외부의 옥외공간 계획 : 물길 개념 , 꽃길 개념을 도입하고 하동군의 상징인 상록공원의 개념을 도입하여 상록의 치유공간과 옥외휴게의 치유공간으로 배치한다.

평면계획

- 장애인의 접근성, 편리성(출입구, 화장실, 엘리베이터)
- 동선/core : 피난동선 분산
  → 코어 집중화 공간 효율 도모
- 중정도입 : 자연채광 및 전면 환기도입
  (에너지절약 및 기능의 분리)
- 주출입/부출입의 분리로 군청과의 연계
- 시설별 용도별 기능적 실배치로 동선의 흐름을 명확히 유도
  → 중정 및 옥외공간으로의 출입연계
- 공간별 기능배분(영역배치)
- 사무공간 및 보건사업 활동실의 남향채광유도
  → 중정도입
- 기능적/공간적 영역구분에 의한 동선흐름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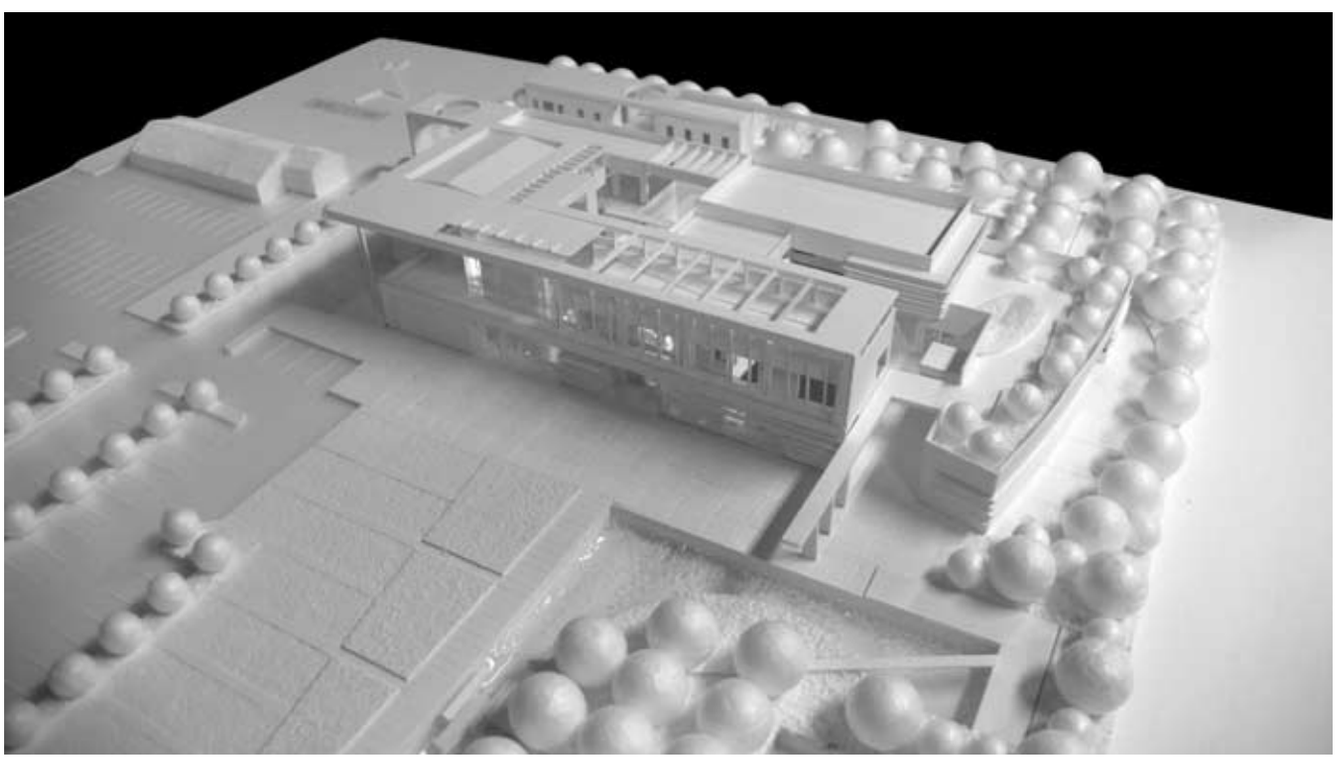

도 배치

- 다목적실의 가변적활용 및 외부에서의 진출입 가능
- 옥상정원 및 휴게시설활용
  → 옥외시설로서의 출입연계 가능
- 전면 아트리움의 배치로 열린시야 확보 및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 유도

입면계획

- 건물과 자연의 조화
  수평적인 건물의 입면선과 하늘정원지붕 및 필로티 사이로 보이는 산세의 선이 어우러져 건물과 자연의 조화를 만들어낸다.
- 수평과 수직적요소의 디자인
  매스의 수평적인 요소로서의 덩어리와 기둥의 가늘고 샤프한 수직적인 요소들이 재료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수용하면서 유리 또는 알루미늄의 여러 가지재료들이 건물의 시각적 아름다움을 나타내준다.
- 상징성의 표현
  - 하동의 랜드마크적인 요소로서 형태와 재료도입
  - 군보건소의 따뜻함과 현대적인 요소의 입면재료로서 일부 고밀도 목재패널을 사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요소를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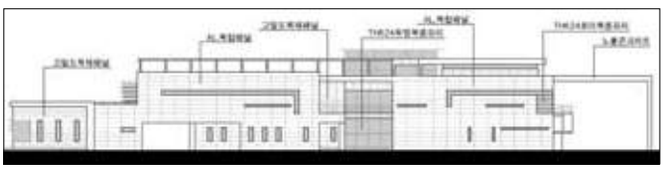

단면도

배치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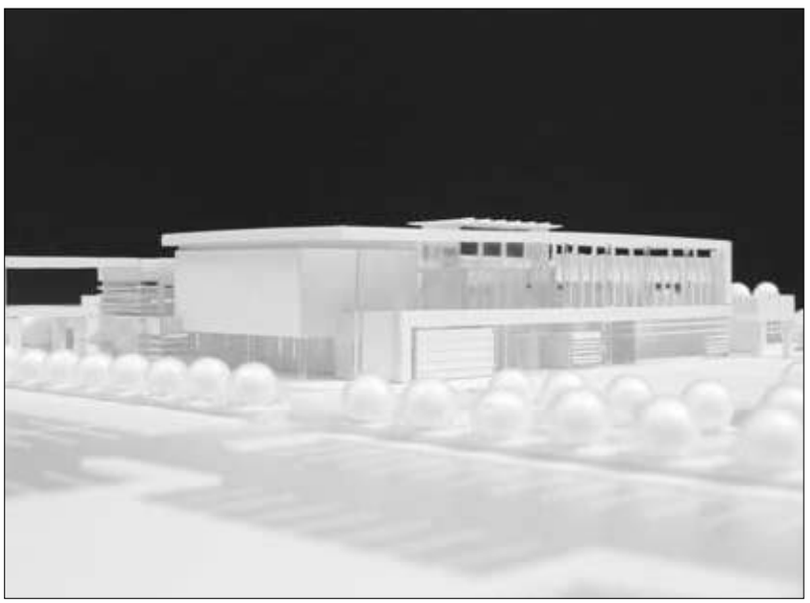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문화의 교류, 한국의 외국건축

Exchange of Cultures : Foreign Architect-Designed Buildings in Korea

해방공간의 이데올로기와 남 · 북건축

Ideology and Architecture Since 1945 to 1950

The Ordeal Period of Experiment and Conflicts of Ideology

01_ 연재를 시작하며 — 박길룡 / 국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02_ 개항기와 일제강점기 — 윤인석 /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2-1 양풍건축의 이입

2-2 서양건축가들의 활동

2-3 압제자의 건축

03_ 한국의 근대건축과 외국건축 — 안창모 /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3-1 해방공간의 이데올로기와 남 · 북건축

3-2 경제개발과 외국건축

3-3 타자를 위한 건축과 우리건축의 모습

3-4 세계를 향한 눈

04- 단편(斷片)적 도시경관의 고고학 — 구영민 /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4-1 수직의 욕망

4-2 애브뉴 오브 아메리카

4-3 패션게임 - 소비의 사막

해방공간의 이데올로기와 남 · 북건축

안창모 /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by Ahn Chang-mo

이 연재는 개항이후 한국건축문화의 전개과정을 문화의 잡종교배라는 측면에서 외국건축이 우리의 건축문화와 어떻게 함께 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러한 시각은 개항이후 외국건축문화의 이식이나 외국건축의 영향하에서 한국의 근현대건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수동적 입장이나 외국건축에 대한 우리의 주체성 찾기에 초점을 맞춘 수구적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잡종교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해방공간은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면서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의 잡종교배에 대한 첫 실험의 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해방은 되었지만 남한이 자본주의 체제의 연속성하에 있었던데 반해, 북한에 사회주의 체제가 도입되었고, 상이한 두체제 사이의 갈등구조는 남한의 해방공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개항후 이 땅에 들어온 전통건축과 서양건축과의 잡종교배 이상의 강한 잡종교배가 남한의 해방공간에서 시도되었지만 실패한 후 전쟁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단된 남과 북에서 각기 자라온 건축문화가 다시 한번 잡종교배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편의상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뉘어진 해방 이후를 맡게 되었지만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뉨에 따라 시간적 흐름 외에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인해 '공간적으로 이분화된 남과 북'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작용하는 시기의 건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안겨주었다.

1976년 문학에서 처음 제기된 '해방공간'은 시기적으로 해방에서 단독정부가 수립되는 1948년 8월 사이에 문학에서 좌우익의 이념논쟁으로 전개되던 시기를 지칭하는 개념어로 사용되었다. 문학에서 사용된 '해방공간'이라는 개념어를 건축에 사용하는 것은 이 시기가 해방으로 새로운 건축세상의 판을 짜는 과정에서 상이한 이데올로기를 두고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방공간이라는 개념 틀에 비추어보면 한국건축계의 해방공간은 해방에서 단독정부수립까지가 아니라 6.25전쟁이 발발하기 까지로 확장될 수 있다. 이는 남한의 해방공간에서 좌우이데올로기의 갈등구조가 타 문화예술분야와는 달리 단독정부 수립이후에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건축계의 좌우이념 대결은 전쟁 직전에 최고조에 달하면서 조선건축기술협회의 해산과 대한건축기술협회의 창립 그리고 젊은 건축인을 중심으로 한 신건축가협단의 창립이 이어지면서 이념의 갈등구조는 노소간의 갈등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조선 건축 창간호 표지

태평양전쟁의 종전과 함께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세계열강의 대립구도 속에서 형성된 냉전체제와 함께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각기 다른 이데올로기에 의한 사회체제 형성기에 남과 북의 건축사에게는 각기 자신의 도시 · 건축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남과 북의 건축계가 해방으로 직면했던 동일한 상황은 해방전에 이 땅의 건축을 주도했던 일본인이 패전으로 자국으로 철수하면서 생긴 공백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백을 어떻게 메우고 새로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은 남과 북이 확연하게 달랐다. 그 차이는 해방공간의 남과 북에서 각기 결성된 '조선건축기술단'과 '북조선건축동맹'의 강령에서 명료하게 드러났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남북 건축단체의 성격 비교

조선건축기술단(1945.9.1)	북조선건축동맹(1945.8.25)
건축에 관한 각종 연구조사 연락 및 지도를 행하야 사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건축국책에 협력함.	민주과업 실천과 건축문제 해결, 건축기술자의 정치적 기술적 향상, 학술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 건축에 관한 학술기예의 연구 및 조사 • 건축기술자의 등록 및 지도 • 건축교육의 진흥 및 기술자의 기능향상 • 건축 각 부문 및 건축과 사회각 부문과의 연락 협력 • 건축국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그 실시에 협력 **• 건축에 관한 사회인식의 계몽과 보급**	**• 건축기술자의 정치적 사상적 훈련 : 건축사상운동의 적극 참여와 건축 모리업자의 숙청 단행** • 건축기술자의 실태조사와 기술문제 연구계획에 주력 • 건축기술수준 향상과 기술자 양성을 위한 교육 • 건축문화 향상을 위한 전문잡지 발간과 번역/저술 **• 일반대중 대상의 강력한 선전사업 전개** **• 민족문화건설을 위한 우리국토, 인민에 맞는 건축양식 및 구조를 설정하고 새로운 건축운동 전개**

해방과 함께 남북에서 결성된 두 단체는 학술적인 부문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일제 잔재를 어떻게 정리하고, 새로운 사회에서 건축단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에 대한 입장(굵은 글씨 참조)은 크게 달랐다.

해방공간에서 미군정이 실시되던 남한은 해방이전과 동일한 자본주의 체제의 연속성 하에 있었던 반면, 북한은 소련의 지원 하에 사회주의 체제

를 구축하고 있었고, 이러한 차이는 해방을 맞이한 시점에서 새롭게 구성된 남북한의 건축단체가 각기 다짐한 사회적 역할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해방공간의 건축에서 우리가 건축을 논할 때 흔히 논의의 중심에 두는 '건축양식'은 부차적인 문제다. 이는 남한의 경우 건축사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 신축행위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건축행위가 매우 활발했던 북한 건축계 역시 건축의 양식보다는 건축에 부여된 사회적 역할에서 볼 때 결과물로 나타나는 건축의 양식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낮았다.

한편, 서울과 평양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남북 건축계의 재편은 해방전 두 도시의 입지와 위상차이 만큼이나 다르게 진행되었다.

남한의 경우 미군정하에서 공공기관의 건축조직은 적어도 1945년 말까지는 식민지조직의 연장선상에서 존재했다. 해방 전 관조직에 근무하던 일인 건축인의 근무도 계속되었고 해방 전 각종 도시 건축 관련 법령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해방 전과 차이가 있다면 한인들의 역할이 이전에 비해서 강화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공공건축조직을 대표하는 조선총독부 건축조직은 미군정청 건축서로 개편되었고, 조선주택영단 역시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유일한 고등건축교육기관이었던 경성공업전문학교 역시 1946년 8월 각종 관립학교를 통합한 국립종합대학이 설치되기까지 그 체제가 연속되었다. 민간의 건축조직도 일제강점기의 연장선상에서 재편되었다. 한인들에 의해 창립된 '조선건축기술단'은 '조선건축회'를 접수하였으며 후에 건축학회의 모태가 되었고, 건축대서사조합은 조선건축사협회로 이어졌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달랐다. 해방이전부터 조선식민지배의 중심이었던 서울에는 대부분의 식민지 건축조직이 집중되었던 탓에 해방 후 일국을 운영할 수 있는 대부분의 공공건축조직은 서울에 위치해 있었지만 평양에 건축의 하부조직만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체제를 정비하면서 대부분의 건축 관련 조직이 일제강점기와는 무관하게 새로운 사회체제에 맞게 새로 만들어졌고, 해방전 북한지역에는 없었던 종합대학이 설립되고 그 안에 건축과도 새로 만들어졌다.

결과적으로 해방공간의 화두였던 친일잔재 청산이 남한건축계에 부담이 되었던 것과 달리 북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해방공간의 남한건축계에서 외국건축사에 의해 설계된 건축물은 한 건도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외국건축이 이 때만큼 근본적으로 한국건축의 틀짜기에 큰 영향을 미친 시기도 없었다.

미군정과 남한 건축생산시스템의 변화

해방이후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수레바퀴는 귀속사업체, 민간사업체, 농업경영이었고, 여기에 외국의 원조가 작용하였다. 6.25전쟁이전까지 미국에 의해 제공된 원조는 5억달러를 넘었는데 이는 경제붕괴를 막는데는 상당한 역할을 했으나 이 과정에서 농민경제는 몰락하고 지주자본의 산업자본화가 실패함으로써 건축자본이 형성되는 길목 또한 막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해방공간에서 남한 경제를 움직이는데 큰 역할을 담당한 원조와 미군발주 공사는 남한의 건축생산시스템의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 건축사 부재의 시대

해방공간에서 남북의 건축계는 모두 건설부문에서 활기를 띄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달랐다. 북한의 건축계가 새로운 국가체제 수립과정에서 공공건축물의 신축이 활발했던데 비해, 남한의 건설호황은 경기호황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미군의 주둔에 따른 미군 주둔 시설공사 발주와 해방전 2차대전 말기에 억제되었던 건설수요의 일시적 증가와 전시 비축자재의 방출로 인한 일시적 건설시장의 확대였다.

건축설계를 동반하지 않는 건설시장의 확대는 해방전 관조직 또는 자신의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작품을 남긴 바 있는 대부분의 건축인들이 건축설계를 떠나 토건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표2〉 해방전후 건축인의 소속 변화

이름	해방 전 소속	해방 후 소속		출신 학교 (졸업년도)
		미군정하	정부수립후	
김세연	총독부/ 박길룡건축사무소 운영	대창공영주식회사	김세연건축사무소	경성고공(20)
박인준	박인준 건축사무소 자영	미군정청	대륙공영사	미네소타대(27)
박동진	총독부/태평건물주식회사	개인 설계작업	개인 설계작업	경성고공(26)
강 윤	보리스 건축사무소 소원	고려토건주식회사		대판공업(23)
김순하	총독부	우일사	시공	경성고공(24)
김희춘	총독부, 동경건물주식회사	미군정청	대륙공영사	경성고공(37)
유원준	총독부	신광토건사	신광토건사	경성고공(31)
장연채	총독부	미군정청 건축서	우신토건사	경성고공(23)
유상하	경성부 영선계	극동공업사	이화여대	경성고공(30)

〈표3〉 미군정기 공사발주 현황

		1945년	1946년	1947년	합계
기업 관공서 및 기타 공공단체	토목	-	152,187,768	581,352,210	733,539,987(35.20%)
	건축	-	51,702,858	579,949,849	1,113,652,707(53.44%)
	기타	-	108,634,954	128,081,940	236,716,894(11.36%)
	소계	-	776,525,580	1,307,383,999	2,083,909,579(100.0%)
미군발주	토목	2,520	66,004,758	127,273,344	193,280,622(14.01%)
	건축	5,682,270	556,862,672	342,636,539	905,181,481(65.59%)
	기타	4,530,751	176,960,012	100,010,904	281,501,667(20.40%)
	소계	10,215,541	799,827,442	569,932,787	1,379,963,770(100.0%)
민간	토목	50,000	-	9,950,000	10,00,000(5.12%)
	건축	2,955,000	26,430,000	135,347,208	164,732,208(84.30%)
	기타	1,001,763	2,592,768	17,093,591	20,688,122(10.59%)
	소계	4,006,763	29,022,768	162,390,799	195,420,330(100.0%)
계		14,222,304	1,605,375,790	2,039,707,585	3,659,293,679

조선은행 조사부에서 발행한 1948년 '조선경제연보'에 따르면, 미군관련 공사비중이 당시 공사발주에서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건축주로서 미군이외의 건축주 비중이 높았던 학교재단의 공사 발주 역시 대부분 원조자금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시기 대부분의 공사는 외국원조와 미군에 의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해방 당시 기득권 층에 있었던 원로 건축인들은 토건업을 통해 자신의 건축 삶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남한 건축계는 고려대학교를 건축주로 갖고 있었던 건축사 박동진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성 건축사가 토건업에 종사하게 됨으로써 195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건축사 부재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해방전에 건축실무 경력이 없었던 김태식이 해방공간에서 가장 활발한 건축활동을 보이면서 조선건축사협회를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미군 관련 공사를 수주[1]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건축계에는 새로운 학습의 기회가 주어졌다. 일제강점기 한국의 건축계는 일본을 통해서 서구의 건축을 받아들였지만, 해방으로 남한 건축계는 서구의 건축 특히 미국의 건축을 직접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중에서 미군 공사를 통한 미국건축의 학습은 한국건축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주한미군발주공사인 FED(Far East District: 극동지부)와 COE(US Army Corps of Engineers : 미 육군공병단) 공사는 미국의 표준설계와 시방서에 의해 엄격히 발주 및 시공감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방공간에서 남한의 건축인들은 디자인보다는 수준높은 건축공사의 경험과 함께 미국식 건축공법의 경험을 쌓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은 후에 남한 건설업체들의 해외공사 수주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 해방목수의 등장

해방직후 원조경제체제하에서 미군공사와 원조를 통해 도입된 건축공법이 전래의 건축생산 조직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해방목수의 등장이 그것이다.

해방목수란 장인정신으로 집을 짓던 조선목수들과는 달리 해방 후 건축경기의 부흥을 틈타서 도급으로 집일을 맡아 돈을 버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집장사를 하던 목수들을 조선의 전통장인 목수들이 비아냥거림을 담아 일컫던 말이다.

해방후 미군의 주둔과 함께 일시적으로 불어 닥쳤던 건축경기의 호황으로 달리 생업수단이 마땅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건설현장에서 생업을 유지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군과 원조자본에 의한 공사의 대부분은 미국의 표준설계와 시방서에 따라 발주되었는데, 응급조치적 성격이 강했던 건축공사는 대부분 오늘날 2×4공법이라고 불리는 표준화된 목재에 의해 지어지는 목구조공법에 의한 것이었다. 이 공법은 부재사이에 특별한 맞춤이 없이 못과 간단한 철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통장인의 수련과정 없이 망치질만 할줄 알면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했다. 따라서 전통적인 건축생산시스템하에서 배출된 장인은 전통건축공사가 없는 상황에서 저렴한 인건비로 움직이는 해방목수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었다. 이러한 현상이 전후 복구기에 더욱 가속화되고 보편화되면서 건축생산현장에서 일제강점기를 버텨온 전통장인의 몰락을 가져온 것이다.

전통적인 우리의 건축생산조직의 체계를 바꾸어놓은 핵심적인 위치에 해방목수가 있었던 것이다.

해방목수로 인한 전통장인이 부닥쳤던 현실적 어려움은 최윤식의 각본 '칼국수'[2]에서 잘 드러난다. 각본 '칼국수'에서 주인 남자는 조선 목수 마지막 세대인 할아버지로부터 조선집 짓는 기술을 물려받은 장인이었지만 서양건축술에 밀려 더 이상 전통건축의 명맥을 잇지 못하고, 건축에서 손을 뗀 채 칼국수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해방목수로 살았던 아들이 대궐목수였던 부친에게 아버지의 이름만 걸면 공사를 쉽게 수주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놓았다며, 아버지의 협조를 구하자 부정하게 공사를 수주하는 일에 자신의 이름을 걸 수 없다는 부자사이의 대화에서 해방목수에 대한 전통장인 입장이 잘 드러난다.

> 노인 : 이런 정신 나간 인사들허구는. 그래, 공무원 놈들 꽁무니에 돈 봉투나 채워줘 가면 사바사바하고, 맡은 일은 청부로 또 맡기구, 원 재목을 제대루 쓰나, 사람을 제대루 쓰나, 너희 해방목수란 것들이 조선집을 죄 망가뜨려 놨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다시 그런 일에 자를 들이대지 않을 테니, 어림없는 소리 말아.
>
> (중략)
>
> 아들 : 예, 지는 해방목수라서, 평생 톱질하고 문틀이나 짜는 소목 밖엔 안 되서, 요 모양 요 꼴로 살지만, 대궐 목수라는 아버지는 해 놓으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삽니까?

그렇게 조선의 전통장인은 이 땅에서 사라져 갔다.

■ 현상공모 작품에 나타난 건축경향과 건축사의 태도

건축작품 활동이 미약해서 건축사의 활동을 살펴보는데는 한계가 있지만 해방공간에서 시행된 몇 건의 건축현상공모전에 관한 자료가 남아있어 당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6개의 현상공모전이 준비되어 그 중 3건이 결실을 보았으며 나머지는 성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6건의 현상공모중에는 주택관련 현상공모전이 3건이 있어 해방공간에서 주택문제 해결이 사회적으로 중요했음을 가늠해 볼 수 있다.

1) 김태식은 해방전 일본고등공업학교 건축과를 졸업했으며, 1946년 2월 미군 308폭격부대 김포비행장 기술종업원 숙소, 강당 겸 식당, 진료소 및 후생시설 설계 감리를 시작으로 꾸준히 미군관련 공사의 설계를 맡았다.
2) 문학리뷰, 1999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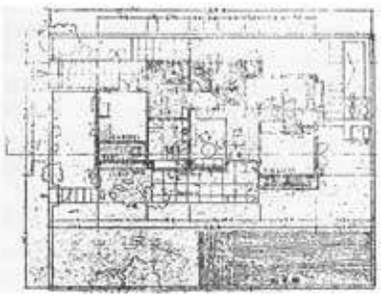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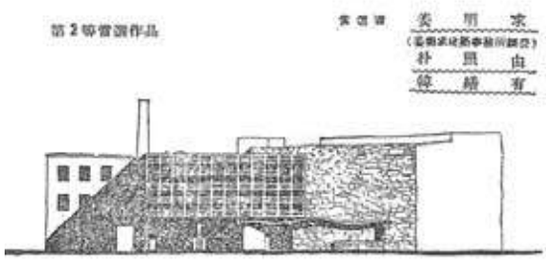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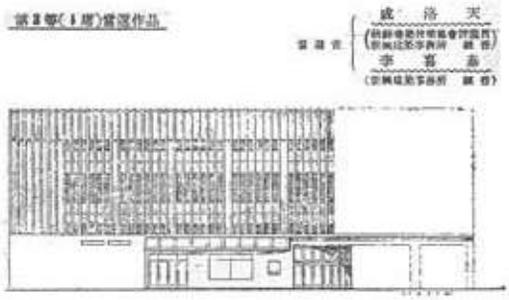

5

2_국민주택 25평형 당선안 / 김희춘 작　4_서울만물전 2등안 / 강명구 작　5_서울만물전 3등안 / 성낙천, 이희태 작

최초로 시행된 '국민주택현상공모'는 '조선주택영단'이 후원하고 '조선건축기술단'이 주최한 것으로 도회지 또는 그 교외를 대지로 15평, 20평, 25평의 3가지 규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총 86점이 출품되어 24점이 당선되었는데, 당선안은 '조선주택영단'에서 수정과정을 거쳐 실제 주거를 공급하는 모델로 사용되었다.[3] 심사평에 따르면 제출된 안은 전체적으로 집중형 평면을 갖추고 있어 도시한옥의 일반적인 채와 칸의 특성과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현상공모안의 전체적인 경향은 입식생활에 기초한 거실중심의 서구 지향적 생활환경 개선의 경향성을 좇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해방전 문화주택에서도 나타났던 경향인데,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김희춘의 당선안이다. 김희춘은 25평 국민주택안에서 침대 겸할 수 있는 온돌시스템을 제안한 주택안을 제출하였다. 입식생활을 위해서는 침대가 필요했지만 침대를 갖출 수 없는 경제여건과 온돌에 대한 뿌리 깊은 선호도를 조합해서 온돌방의 일부를 침대높이로 만든 것이다. 현실적으로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전통적인 거주패턴을 수용하면서도 서양의 입식생활을 지향하고자 하는 건축사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그림2)

민간 부문에서는 '서울만물전' 현상공모가 1947년 시행되었다. 극장겸용 백화점의 용도를 갖고 있던 서울만물전 현상공모전에서 건축사 김태식의 안이 당선되었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당시 당선안들의 작품에 대해 건축사 박동진은 『한국인 건축가의 대두와 그 업적의 의의』라는 글에서 "1930년대 말에서 1940년대 초반에 걸쳐, 합리주의 내지 국제주의적인 경향의 영향에 다소나마 젖었던 세대"라고 평한 바 있다.(그림 3)

만물전 현상설계에서는 해방전 일본에서 수학한 30대 전후 젊은 건축인들의 수상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현상은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기성 건축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대부분 관계에 머물거나 토건업으로 진출한데 반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던 젊은 건축인들이 현상설계에 적극 참여한 때문이다. 당선안은 이전 시기의 건축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이는 당시의 건축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작품이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만한 것은 2등과 3등을 차지한 강명구와 성낙천 · 이희태의 안이다. 이들 작품들을 커튼월로 디자인되었는데 커튼월 디자인 건물이 해방전에는 지어진 선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2차세계대전후 공업기술에 기초한 테크놀로지 건축미학을 선도하던 미국 중심의 국제주의 건축경향을 젊은 건축사들이 빠르게 흡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그림 4, 5)

3

서울만물전 당선안 / 김태식 작

두 건의 현상공모에서 당시 젊은 건축인들이 간접적으로 체험한 미국의 새로운 건축경향을 좇는 경향성이 강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동시대 북한의 건축경향과 차별화된 모습을 갖는다.

사회주의 체제 구축기의 북한건축

해방공간의 북한건축 모습에 대해서는 조선건축기술단의 기관지인 『조선건축』에 실린 '북한의 건축동향'과 김중업의 회고를 통해서 단편적으로 알려진 바 있다.

『조선건축』 창간호에 실린 북한의 건축동향에 따르면 '북조선공업기술총연맹 건축위원회는 해방직후 1945년 8월 25일 진보적 건축사 13인이 '건축협회'를 결성하고 9월 23일 협회를 동맹으로 개칭하였으며, 평양의 건우회 기타 각 도에 결성된 건축단체를 전부 조직하여 1946년 5월 10일 통일전선체로서 '북조선건축동맹'을 결성하였다. 당시 맹원 수는 약200명이었으며, 민주주의 사회단체로서 '민주과업 실천과 건축문제 해결, 건축

3) 이영한, '1945~1946년도 국민주택현상안의 전통적 공간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 무애 이광노 교수 정년퇴임기념 《건축학 논총》, 1993

기술자의 정치적 기술적 향상, 학술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등에 표방하고 나섰다고 한다.

동맹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건축위원회의 결정서의 내용은 앞의 '표1'과 같다.

당시 북한에서 해방을 맞이했던[4]때 김중업의 저서에 따르면, 김중업은 해방 직후 공산청년동맹에서 활도아면서 '건축동맹'을 창설하는데 참여하였으며, 동맹에서 연구부장을 맡았다고 한다. 건축동맹은 일제강점기 '금천대 회관'을 접수하여 '건축동맹회관'으로 사용하면서 소위 5도의 건축동맹원을 재훈련시키는 활동을 하였다고 한다.

위의 2가지 사실에서 북한의 건축조직이 남한보다 신속하게 결성되었고 보다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활동범위도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결정서의 내용에서 건축기술자의 사상적 훈련과 건축업계 모리업자의 숙청 단행, 생산성 향상 그리고 일반대중 대상의 강력한 선전사업 전개 그리고 우리 '인민에게 맞는 건축양식' 및 '구조의 설정'과 '건축운동 전개' 등을 표방한 것은 '조선건축기술단'의 그것과 비교해서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이러한 북한에서의 건축조직의 활동은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한 이후 건축이 자본주의 인간형을 사회주의 인간형으로 바꾸는 사회적 응축기(social condenser)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과 비견되는 부분이다. 서구에서 소련이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였다면 아시아에서 북한은 비서구권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건설의 현장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구축은 도시와 건축에서 소련의 영향이 강하게 자리잡게 된다.

해방과 함께 북한에서는 도시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첫 건설프로젝트로 보통강개수계획이 시행되었다. 북한의 해방 후 첫 프로젝트가 정치적인 의미와 상징성이 강한 국가상징 건축물이 아닌 만년 홍수피해에 시달리는 평양시민의 삶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다는 사실은 사회주의 체제의 상징성을 갖기에 충분한 의미가 있다.(그림 6)

북한에서 국가체제를 갖추기 위해 많은 건설활동이 전개되면서 건축사에게 많은 역할이 부여되었으나 해방공간에서 북한사회가 심혈을 기울였던 국가프로젝트에서 건축사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았다.

리화선의 '조선건축사'에 따르면 해방공간에서 북한의 건설이 얼마나 활발했는지 잘 나타난다. 1944년에 비해 1949년에 인민학교 수가 2.8배로,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가 22배로, 전문학교 수가 12배로 늘어났으며, 대학은 15개가 새로 설립되었다. 도서관은 7개에서 103개로 증가하였으며,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인 민주선전실이 1950년 3월 현재 18,200개나 생겼으며, 각종 노동자 구락부도 168개 지어졌다고 한다.

이들 건축물은 새로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실천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민주선전실과 같은 건축물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건축물로서 북한사회에서 수요가 매우 큰 건축물이었다.

특히 자본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을 사회주의 인간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학생과외 교양기관, 로동자구락부, 청년회관, 민주선전실은 필수적이었으며, 여성을 가사노동과 육아에서 해방시킴으로써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갖게 하겠다는 사회주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탁아소와 유치원도 필요했다. 따라서 해방공간에서 집중적으로 건설된 이들 건축물에서 건축물의 양식적 특징이나 가치를 논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이들 건축물들이 건축사의 손에 의해 지어졌을 지라도 건축물 자체의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 자본주의 도시에서 사회주의 도시로의 전환과 신고전주의 건축양식

한편, 도시에서는 광장과 공원이 적극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했다. 광장이 조성되기 전에는 역전광장, 공설운동장, 학교마당 등이 정치행사 장소로 사용되었으나 도시개건사업을 통해서 동평양 해방호텔 앞에 광장을 조성하고, 기존의 역전광장 등은 새롭게 단장되었다. 사회주의 국가로 새롭게

4) 김중업의 회고 김중업, 「건축가로서의 회고와 전망」, 꾸밈, 1981, 5/6

6_보통강 개수공사 기념탑 7_김일성종합대학 8_ 만경대혁명학원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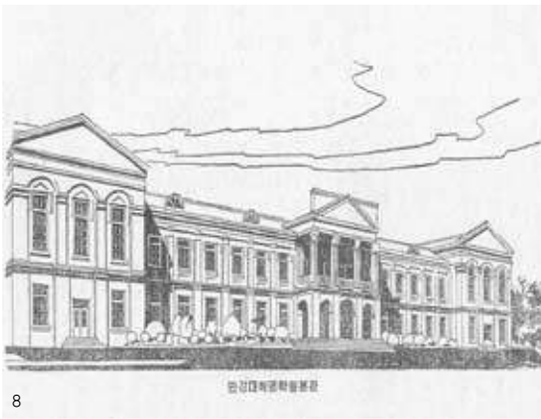
8

출발하는 북한에서 광장은 인민대중의 정치, 문화적 행사 중심지의 역할과 함께 선전 선동의 중심공간의 역할을 수행했다. 광장은 사회주의 체제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교육과 계몽의 기능을 담당했던 것이다.

공원도 전국 주요 도시 곳곳에 마련되었다. 평양의 모란봉공원과 해방공원, 원산의 해방공원, 신의주의 해방공원, 흥남의 해방공원, 강계의 아동공원 등이 북한 전역에 건설되었다. 일제강점기 신궁과 신사를 철거한 뒤에는 예외없이 공원이 조성되었다.

사회주의가 산업혁명으로 삶의 환경이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진 자본주의 대도시를 배경으로 탄생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사회주의 입장에서 공원의 조성은 노동자가 주인인 사회주의의 이상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회적 약속이자 사회주의 이념의 상징 장치이기도 했다.

해방공간에 건설된 수 많은 건축물의 설계자는 대부분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북한에서 역점을 두었던 주요 건축물의 경우 양식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해 역점을 두었던 5대 건물인 김일성종합대학교, 내각청사, 중앙종합병원, 로동자아파트, 로동신문사 청사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들 건축물들을 한 곳에 집중 배치한 것이 아니라 도시의 성장을 감안하여 분산 배치하였는데, 이는 도심으로의 집중을 막기 위한 도시계획적인 차원의 입지선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평양에 2개, 동평양에 2개, 서평양에 1개 분산 배치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주요건축물의 건축양식이다. 김일성종합대학과 만경대혁명학원, 중앙종합병원 등은 정면성을 강조하는 좌우대칭으로 구성되었으며, 건물의 외관은 기단부와 열주 그리고 삼각형 모양의 박공지붕의 모습을 갖춘 신고전주의 건축의 양식특성을 갖고 있다.(그림 7, 8, 9)

개항후 이 땅에는 서양인 건축사와 일인 건축사에 의해 석조전과 구조선은행(한국은행), 조선총독부, 경성역(서울역) 등의 관공서가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바 있지만 1920년대 후반들어 이들 신고전주의 건축은 더 이상 지어지지 않았고, 모더니즘 건축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그러한 경향성은 남한의 경우 해방이후에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20여년의 시차를 두고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 출범과 함께 건설된 주요 공공시설물들이 대부분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사회주의 정권 출범기의 건축활동에 소련의 지원이 절대적이었음을 의미한다.

해방 당시 남북한에서 고등건축교육을 받은 사람은 경성고공에서 60여명, 일본유학생 100여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중에서 경성고공출신중 20여명이 월북 또는 재북의 형태로 북한에서 건축활동을 하였고, 비슷한 비율의 일본 유학생이 북한에서 건축활동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해방 당시 건축설계의 경험이 있던 건축인들 중에 박동진을 제외한 대부분은 대규모 건물을 설계해 본 경험이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월북건축사는 학교를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는 젊은 건축인들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건축설계 실무에 대한 경험은 더욱 부족 했다. 따라서 이 시기에 평양에 건축된 대규모 공공건축물의 설계는 소련의 건축사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철지난 건축양식이 되어버린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축물이 2차세계대전 이후에 그것도 역사적 맥락이 전혀 없는 평양에 지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일찍이 세계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 소련에서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실천을 위해 도시와 건축의 사회적 역할에 주목했고, 그 결과 디자인에 이데올로기를 접목하는 실험이 진행되면서 러시아구성주의라는 서구 모더니즘을 주도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1930년대 초반 스탈린의 집권과 함께 점점 추상화되면서 대중과의 소통이 단절되어가는 러시아구성주의 건축은 형식주의로 비판 받게 되었고, 대중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스탈린은 러시아의 역사문화환경에서 친숙한 고전주의 건축을 적극적으로 부활시켰다. 그러한 흐름이 1950년대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해방직후 북한에서 소련의 지원하에 건축되는 공공건축물은 자연스럽게 소련과 동유럽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진 것이다.

이들 주요 건축물이 소련의 건축사에 의해 지어졌다는 공식기록은 알려진 바 없지만 조선건축사에서 '평양기차역'이 '우리 손'으로 설계하고 건

9_조선중앙종합병원 10_평양역 11_평양해방호텔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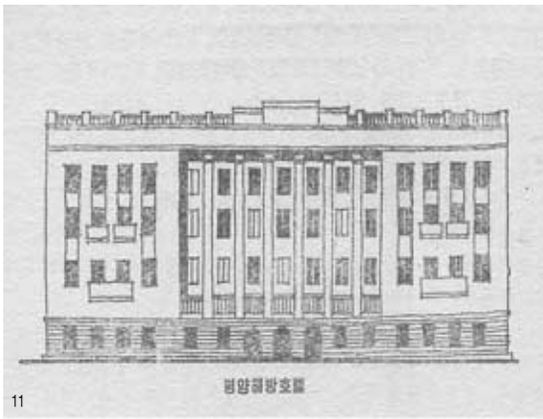

11

설한 첫 현대적인 역사건물이라고 기술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흥미로운 것은 첫 북한건축사의 설계작업인 '평양기차역'의 디자인이다. 평양역은 중앙에 탑을 배치하고 양쪽에 기둥이 배열되어 수도 평양의 관문으로서의 상징성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중앙의 탑이 8각형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과 양편의 기둥이 각기둥이라는 사실이다. 평양역에는 전체 구성에 있어서는 중앙을 강조하는 좌우대칭구성과 서양건축에서 핵심적 의장요소인 열주를 사용하면서도 8각형의 조형 언어를 통해 조선의 전통적인 디자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8각형은 서양의 역사주의 양식건축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은 조형언어다. 8각형이 주요 건축어휘로 사용된 것은 북한에서 8각형을 자신들의 전통적인 조형언어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8각형의 조형언어는 북한에 소재한 고구려의 역사유적 곳곳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평양에서 발굴된 금강사(498년)외에도 정릉사, 반룡사 등에서 8각탑의 기단이 발견되고 있을 뿐 아니라, 2개의 기둥이 사용되어 쌍영총(雙楹塚)이라 불리는 남포시 용강군의 기둥도 8각형이다. 이러한 전통건축요소의 채택은 인민에 맞는 건축양식을 추구하겠다는 건축위원회의 결정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그림10)

이밖에도 이시기에 건축된 3~5층 규모의 공공건축물은 대부분 중심을 강조하면서 대칭적으로 지어졌다. 평양해방호텔의 경우 기둥-보식구조와 벽식구조를 혼용해서 지어졌는데, 이러한 건축양식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정면성을 강조하는 좌우대칭으로 지어지는 신고전주의적 정면구성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평양해방호텔의 건축양식은 르네상스건축 풍의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11)

한편, 공공건물에서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주제의 조각들과 장식들이 등장하였는데, 1947년 준공된 평양 모란봉극장 정면의 양쪽에 사회주의의 주체로 표방된 로동자, 농민, 인텔리 등의 조각상이 만들어지고, 김일성종합대학 본관을 비롯한 주요 건축물에는 낫과 망치 등 로동자, 농민 그리고 공업과 농업을 상징하는 장식들이 사용되어 건축의 사상예술적 역할을 부각시켰다.

맺음말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사회체제가 만들어낸 물리적인 변화가 도시와 건축에 선명하게 각인되기 시작하였지만 자본주의 사회체제를 유지했던 남한의 경우 해방공간에서 도시 건축의 물리적인 외적 변화보다 건축생산시스템의 변화와 건축사 부재시대라는 기형적 상황이 발생했다.

남과 북이 해방공간에서 각기 다른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처해 있었기에 그로인해 건축의 사회적 역할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해방공간에서 남북 모두 건축사의 작업을 필요로 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남북이 각기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축에 부여된 사회적 역할과 건축사 스스로 다짐하는 역할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고, 해방공간을 통해서 남과 북의 각기 다른 사회체제는 다른 지향점을 향해 다른 도시와 건축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해방공간은 한국건축에서 남북한 근현대건축이 분화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기다. 한국건축사는 개항이후 외세의 개입과 함께 전통건축과 시간의 단절이라는 뚜렷한 한계점으로 작용하면서 단절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남겼다면, 해방은 한국건축을 공간적으로 분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다른 체제와 다른 지향점이 만들어낸 도시와 건축에서 우리가 극복해야할 또 하나의 과제를 부과하였다.

고 은 영
건축사사무소 가진
by Ko Eun-young, KIRA

제12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를 마치고…

Reflecting the 12th General Meeting of Korea Female Registered Architects

흐르는 것은 세월만이 아니고, 자라는 것은 사람만이 아닌가 싶다.

십수년 전 걸음마 시작하는 아이를 바라보며 대단한 미래를 장담하기보다는 그저 건강하게 무사히 잘자라기를 바라는 어미의 마음처럼 조심스런 기대로 시작되었을 걸음이 벌써 열두번 째 발자국을 남기며 키가 훌쩍 자라 이제는 제법 어른 티가 나는 아이처럼 든든하게 자라가고 있다.

그저 선배님들 귀염 받고 따라 다니셨다는 분들이 이제는 회장, 부회장, 이사가 되어 열심히 책임을 다하고, 선배의 선배님들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자리하고 계시고, 해마다 젊은 후배들의 얼굴이 새롭고 반갑기만 하다.

올해도 전국에 흩어져 건축의 일선에서 울고 웃는 우리 여성 건축사들은 약속된 시간에 하나둘 환한 얼굴로 반가움을 대신했고, 오랜만에 서울에서 럭셔리(?)하게 개최될 이번 행사에서 받을 감동과 도전을 맘껏 기대하며 일정을 시작하였다.

이번 일정은 건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관심의 중심에 서있던 프로젝트를 위주로 일정이 짜여져서 더욱 흥미로웠던 거 같다.

처음 우리가 경험 한 곳은 국립중앙박물관이었다.

광화문에 있던 일제 치하의 건물이 대신하던 국립중앙박물관은 건물의 존치문제부터 뜨거운 이슈가 되어 세간에 회자 되던 프로젝트였다.

지금은 명실상부한 국내의 대표적인 박물관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직접 설계에 참여하신 정림건축의 김진구 부사장에게서 설계과정에

대해 직접들으며 내부와 외부를 살펴보니 건물의 스케일에 대해 생소함과 부러움이 같이 밀려옴은 내가 설계하는 건물과의 차이가 너무 큰탓인가…

가랑비도 좀 오락가락하고, 생각보다 단체 관람객이 많아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눈을 두눈을 반짝거리며, 두귀를 쫑긋 세우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였다.

언제나 남의 것에는 말이 많은 법, 우리는 삼삼오오 이것은 이렇게 하는것이 좋았겠느니, 저것은 저래서 좋으니, 수다에 가까운 의견을 나누며 그래도 역시 건축은 참으로 많은 요소들이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당연한 진리를 새삼 느끼며 서울의 심장부로 발길을 옮겼다.

버스 두 대에 나누어 타고 서울의 중심으로, 중심으로….

유신정권시 덮어 씌우며 경제성장의 상징처럼 위세등등 했던 고가도로가 역사 속에 사라지고 수도세를 내며 유유히 흐르는 청계천에 도착, 인공의 냄새 물씬 풍기는 청계천과 청계천문화관을 견학했다.

청계천을 바라보며 아담한 사이즈로 서있는 청계천문화관은 청계천의 물빛같기도 하고, 청계천의 물결 같기도 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았다. 청계천의 과거와 현재를 한자리에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람들의 지친 발걸음을 쉬게 하는 쉼터가 되면 좋을 거 같다.

다음은 청계천을 따라 시내를 관통하여 광교 부근에 하차하여 청계천의 끝자락을 만끽하고, 서울시청 앞 광장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프라자호텔에 짧은 여정을 풀며 서울에서의 밤을 맞이 하였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프라자호텔 22층 연회장에 단장을 한 모습으로 모여 제12차 여성건축사대회를 시작하였다.

박영순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개회식에서는 서울시, 대통령자문 건설기술 건축문화선진화 위원회를 비롯한 관심있는 내빈들의 참여와 격려로 자리가 더욱 빛났고, 사회시설지원금의 전달과 감사패 전달로 고마움의 마음을 표시하였고, 말미에 아카펠라 공연의 감동까지 이어져 그야말로 아름다운 밤의 뜻깊은 행사가 잔잔하게 이어졌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우리들의 선배님으로 우리가 언제나 바라보며 따라가기에 든든한 문숙경 여성건축가협회 회장님의 격려사와 감사보고 그리고 차기 개최지로 강원도를 결정함으로서 총회 순서를 마무리하였다.

3부 토론회에서는 우리 회원들의 진솔하고 따뜻한 얘기들을 들으며 친목을 다지고, 서울 중심의 밤 나들이를 위해 서운한 마음을 뒤로한 채 정기총회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첫날의 마지막 일정은 자유 시간!!

각자의 취향대로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청계천 등으로 흩어져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며 밤을 마무리 하였다.

다음날 아침, 전날의 피로함을 깊숙이 숨기고 푸짐한 뷔페식으로 아침식사를 하고 다음 목적지인 삼성리움미술관으로 향했다.

리움미술관은 세계적인 건축사 램쿨하스, 쟝누벨, 마리오보타의 건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가슴 떨리는 기회였고, 연세대의 민선주 교수의 설명은 건물을 제대로 이해 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었다.

제12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 기념촬영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무엇보다도 설계진행의 숨은 이야기들, 예를 들면 쟝누벨 건물의 자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노력과 시간과 비용들, 스텐레스에 녹을 입히는 실험들은 흥미롭기도 하고 그만큼 건축사의 발상을 존중해주는 환경이 부럽기도하고 하면서 한 공간 한 공간을 아끼듯이 눈에 담을 수 있었다.

세 개의 건물이 세 명의 건축사의 설계로, 한 대지위에 얹혀 있으면서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각각 독창적이면서도 조화로운 작품을 이루고 있으며, 그 과정과 결과 또한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보면, 날마다 건축현장에서 현실과 부대끼며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우리에게 잃어버릴 뻔 한 건축의 열정과 이상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스스로에게도 해보며 햇살 좋은 남산 자락을 내려왔다.

다음은 마지막 일정으로 지 순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간삼건축 사옥을 견학하였다.

우리에게 귀감이 되시고 항상 든든한 큰언니이신 지 순 선생님의 일생을 보는 듯 하여 숙연해지기도 하고 그 길을 가고있는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는 귀중한 일정이었던 것 같다.

원정수선생님과 지 순선생님 그리고 간삼건축 직원들의 친절하고 따뜻한 접대와 맛난 식사 그리고 탁트인 옥상정원, 어디나 비슷한 설계사무실 풍경 등…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장면들 뒤에 지 순선생님 같은 선배님이 계셔서 참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마음을 훈훈하게 덥혀온다.

모든 일정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

세파에 찌들어, 세상이 만만치 않아, 내가 하고 있는 건축이 실망스러워 침체되었던 마음 한 켠에 그래도 좋은 건물들은 세워지고 있고, 전국에 나와 같은 길을 씩씩하게 가는 우리 여성건축사 들이 있고, 자랑스런 선배님들이 계시는 것이 힘이 되어 돌아가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지며 내년을 한껏 기대해 본다.

제12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 만찬

리움박물관 견학

리움박물관 견학

간상건축사옥 견학

이 영 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기획팀 건축사무관
by Lee Yeong-chang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은 공동체 형성을 복원한다.

The 1st village in Administrative town restores a community

추진배경 및 필요성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국책사업으로서 21세기 세계적 모범도시 건설을 목표로 사업을 시행중이며,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여타 신도시개발의 새로운 모델로 정립하는 한편 건축기술 · 문화 선진화 과제인 미래주거모델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첫마을에 시범 적용하고 있다.

인터넷이 발달된 현대생활 패턴과 주거문화의 공간구조로 인하여 각박한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지금의 생활양상은 이웃과의 교류는 국한된 장소 외에는 거의 없으며, 신도시 등의 개발에서는 동사무소, 경찰지구대, 학교 등은 용지만 결정하고 각각의 개발주체별로 시설물을 건축하게 하여 입주초기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추진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은 옛날의 전통적인 생활공동체 공간인 사랑방, 시냇가, 장터 등을 현대적 개념으로 복원하여 정감있고 활력 넘치는 마을단위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즉 동사무소, 학교, 도서관 등 공공시설과 주민 체육시설, 병 · 의원, 금융기관 등 문화 · 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복합화하여 이웃공동체가 살아있는 활기찬 주거지로 조성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성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을 상호 연계하여 배치함으로써 주민입장에서는 동선을 최대한 단축시켜 한 장소에서 One-Stop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각각 시설물의 관리주체 입장에서도 예산이 절감되고 시설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예를 들자면 학교는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을 무상이용하고, 학교운동장을 공원화하여 시민과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구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공공 편익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동체 형성의 매개체 역할 부여로 주민들의 교류가 잦아질 것이며, 이웃간의 공감대 형성과 유대관계 강화로 생활권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경위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용어 그대로 성격이 비슷한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을 복합화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공공 · 편익시설들을 입체 · 평면적으로 복합화하기 때문에 특정한 부서의 힘과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관련부서 상호간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에서는 복합커뮤니티센터조성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협조를 얻고자 건설청 주관하에 12개 관련 부처(청) 업무담당자들이 모여 4회에 걸친 논의와 1회의 전문가 워크샵을 개최하였으며,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과 수시로 협의한 바 있다.

1차('06.2.24)회의는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청소년위원회, 건설청, 충청남도교육청, 대한주택공사 등 12개 기관이 참석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주거시범단지인 행복도시 첫마을에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건립필요성을 설명하고 각 부처별로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들어서게 될 시설종류, 규모 등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가 있었다.

각 부처 소관 공공시설별 특성과 종류 및 규모에 대한 사항과 문제점 등을 검토하였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 7,000세대 규모에 맞는 교육, 공공, 문화, 복지시설을 복합화 하는 것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하였다.

제2차(3.10)회의는 교육인적자원부 등 14개 기관이 모여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갈 시설의 종류 및 규모 그리고 사업시행방식, 설치재원 마련방법과 사후관리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기본협약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와 각 관계기관의 협조사항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3차회의(3.16.)는 교육부 등 13개 기관이 참석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입주할 시설의 종류 · 규모에 대한 논의와 시설물의 관리, 운영주체 관련 내용의 협약서 명시여부 등 기본협약서(안)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관별 개별 협의 후 관계부처 협의 개최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4차회의에 앞서 첫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비는 공공건축물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회계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안으로 검토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 기관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에 건설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관련법령 및 산출근거자료를 받았다

제4차(3.24.)회의는 행정자치부 등 8개 기관이 참석하였으며 건설청이 마련한 첫마을 복합커뮤니티조성 방안과 협약서안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이견이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워크샵을 개최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관련 워크샵(3.31)은 관계기관 실무자, 학계, 건설청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한주택공사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기능적 연계가 가능한 시설에 한하여 복합화하는 기본적인 원칙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었으며, 5월중에 있을 첫마을 국제설계경기공모 지침에 반영할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설별 설계지침은 설계자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복합화 할 시설의 종류 및 개소, 시설별 프로그램 등 기본적인 내용만 제시하기로 하였으며, 시설별 이용프로그램, 적정규모 등은 관계기관별 의견을 정리하여 확정하기로 했다.

건설청은 2010년 입주가 시작되는 '첫마을'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도입하기 위해 5월15일 국제설계경기공모에 포함하여 5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 참가자 등록을 한 결과 국내에서 39개팀, 국외에서는 미국, 스페인, 프랑스, 스위스 등 14개국에서 17개 팀이 응모하여 총 56개팀으로 국내외의 관심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방향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에 대한 기본방향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다양한 공공시설 주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건설하자는 것이다. 이는 학교시설, 동사무소 등 공공시설과 공원, 체육시설 등 개발규모에 따른 설치대상 시설을 검토하여 중심시설과 물리적 · 기능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시설을 선정하며, 지역주민 등 이용선호도를 조사 · 분석하여 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세부설계 과정에서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할 계획이다.

둘째, 지역(소규모생활권)차원의 공공시설은 집약하고 지구(근린주구생활권)차원의 주민자치센타는 복합화하여 분산 배치한다. 지역중심센타의 경우 중 ·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공공시설별 동질성과 편리성 여부를 고려하여 건축물내 복합화 또는 집단 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지구중심센터의 경우 초등학교, 주민자치센터 등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에 밀착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와 활동의 중심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간 교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시설의 배치는 평면적 요소와 입체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다. 평면적 배치는 주요시설을 집단배치하여 문화, 복지, 교육, 체육, 상업, 공공시설부지와 공원 등을 보행권내에서 기능이 상호연계 될

수 있도록 평면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입체적 배치는 단일건축물내 복합하는 것으로 하나의 건축물에 상호 연계된 다양한 기능을 복합화하는 형태이다.

시설복합화의 원칙

입주할 시설은 7,000세대(약 2만명)에 생활에 필요한 필수시설과 입주자의 공공서비스 지원을 위해 필요 불가피한 시설로 한정하기로 하였다.

공공서비스 시설 중 행정중심복합도시 전체 차원 또는 중생활권별로 설치가 필요한 시설은 단계적으로 첫마을 밖에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시설의 규모는 장래수요 및 생활패턴의 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되 향후 여건변화, 관련법령 및 수요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주택단지내 시설중 일부 민간시설도 함께 설치함으로 입주자의 편의 도모 및 복합화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방침이다.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시범단지로 조성되는 첫마을에 설치되는 복합커뮤니티는 결국에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들을 한곳에 배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공동체 형성에 중심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공공시설을 복합화 함으로써 시설투자비 절감과 주민들의 향후 다양한 공공서비스욕구 및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기존신도시에서 공공시설과 문화 · 복지시설에 대해 입지만 지정함으로써 주민입주 후 공공시설 등이 들어섬으로 인하여, 시설간 연계성이 떨어져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청은 국제설계공모를 통하여 9월 당선작을 결정한 뒤 2007년 기반시설 및 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공공시설의 건설재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회계 예산으로 충당하고, 민간시설은 주택공사가 자체 재원으로 건설해 민간에 공급하거나 민간에 토지를 공급하여 민간이 건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미래형 주거모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주민편의 등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이 사람 사는, 정이 넘쳐나는 살아있는 이웃공동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감도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개념도

김 상 병
랜드러버스코리아(주) 대표이사, (사)대한실버산업협회 이사
by Kim Sang-byung

실버(고령친화) 산업의 현황과 전망
위기인가? 기회인가!

A prospect for the "Silver"(aimed for the aged) industry; Crisis? Opportunity!

최근 자주 듣는 낱말 중 고령화사회, 실버산업, 고령친화산업 등이 있다. 정확히 알 수 없으되 절박한 느낌을 주는 그 낱말들의 키워드는 '내 발등의 불'이다. 또 다른 키워드는 '위기는 곧 기회, 위기가 어떻게 기회가 될 것인가'이다.

UN은 국가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율에 따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7%~14%), 고령사회(Aged Society, 14%~20%), 및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20%이상)로 분류하고 있다. UN의 분류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도에 65세 이상 인구가 7%(339만 명)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 다가오는 2018년에는 731만 명으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으로 총 1,011만 명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전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의술의 괄목한 발달로 남자 평균수명이 1991년 67.8세이었으나 2001년에는 5.1세가 연장된 72.8세이며, 여자의 경우도 1991년 75.9세에서 2001년 80.0세로 4.1세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80년대에는 가임 여성 1명당 2.83명을 출산하였으나 2005년에는 1.08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런 연유로 1960년대에는 약 3%씩 증가하던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은 1980년대 후반에는 1% 증가에 그쳤고, 2025년에는 -0.08%의 인구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로 선진국에서는 백 여년에 걸쳐 진행된 고령화가 우리는 26년 만에 도래한다.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화 진행 속도이다 .

고령친화산업의 전망은 밝다. 우리사회에도 '돈 있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노인에 비해 장년층은 교육 수준도 높고 절반 이상이 노후를 대비하고 있다.
이른바 경제력을 갖춘 '신(新)노인층'이 등장하고 있다.

저소득층 복지는 정부가, 중산층 복지는 민간이

고령사회에서는 고령자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요구의 증대는 물론, 시장 내에서 고령자 욕구 충족을 위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날로 증가하는 노인들의 서비스 욕구를 감당하기에는 정부자원이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저소득 고령자의 기초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지지만 중산층 이상 경제력 있는 고령자의 부가적인 복지서비스욕구는 시장기능을 통해 민간부문이 담당하도록 하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시책 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다.

우리의 고령친화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이는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민간의 의식 부족에 일차적 원인이 있다. 그러나 또한 고령친화산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이나 개인은 인·허가 과정의 복잡성과 규제법규의 엄격성으로 말미암아 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장애를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노인주거시설 분야의 경우 정부 금융지원 부족과 사업주체에 대한 높은 자기자본비율 요구, 행정 규제로 인한 경쟁 제한 등이 민간의 고령친화산업 참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체계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다품종 소량이라는 이 산업의 특성상 공급자의 대부분이 자금력이나 정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R&D투자를 지원함은 물론 상품 수요나 시장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이 산업은 노인주택을 포함 대부분 새로운 분야로 아직까지 상품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품의 개발과 상용화에 법률적 미비점도 많다. 서둘러 상품표준을 마련하고 관련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고령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다행히 정부는 고령친화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가 미래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중장기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04년 2월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설립하였다. 구체적으로 '실버를 골드로'라는 슬로건 하에 시장수요나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요양·기기·정보·금융·여가·주택·한방·농업 등 8대 고령친화산업과 역모기지제도, 자산관리서비스, 재가요양서비스, 홈케어 등 19개 전략품목을 우선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정부가 추진중인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은 양질의 맞춤형 상품을 제공해 건강하고 성공적이며 활력적인 노후를 지원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가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을 서두르면서 관련 지자체들의 고령친화산업 육성정책이 가속도를 내고있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이 되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도 지난해 9월에 발족하였다. 고령친화산업의 지원정책은 그 조직에서 심의 확정, 추진될 것이다.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등장할 노인들은 현재의 노년층과는 전혀 다른 경제력, 건강, 교육수준 등을 지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대전제 아래 고령친화산업은 모든 면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위기가 곧 기회, 국가 성장 동력될 고령친화산업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사회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정책을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경제성장도 함께 이루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은 이 두 가지 과제를 함께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상의 대안이라 생각한다.

급속한 고령화가 국가의 경제 · 산업 분야에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도 있지만 경제발전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있다. 일본의 경우 장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관련 재화 및 서비스산업은 최근 연평균 9.4%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03년 현재 고령친화산업 규모는 무려 70조 엔에 이르고, 2025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155조 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금융연구소에 따르면 2003년 현재 일본의 개인금융 자산 1천2백조 엔 가운데 70%가량을 65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고령자가 민간 전체 소비에서 30%, 유럽의 경우는 20~30% 수준을 차지한다.

고령친화산업의 전망은 밝다. 우리사회에도 '돈 있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노인에 비해 장년층은 교육 수준도 높고 절반 이상이 노후를 대비하고 있다.

정부가 '고령친화산업 개화원년'으로 삼겠다고 한 2008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인구 10명당 1명꼴이 된다. 고령자 비중이 10%를 차지하는 2008년이면 공적연금, 국민연금 등 연금수급권자가 약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제력을 갖춘 '신(新)노인층'이 등장한다는 의미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90년대 이후 55세 이상 가구 소득이 매년 10%씩 성장 하고 있다. 이들이 새로운 소비주체세력으로 등장하면 고령친화산업은 크게 성장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전국의 시 · 군 6개 지역을 대상으로 노인요양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2008년 7월 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노인요양보험이 전격 도입되면 국민의 의료이용행태의 변화는 물론이고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의 운영행태도 다양하게 바뀌고 시설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2000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이후 관련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 또한 2008년도부터 국민연금 지급이 본격화되고 국민 1인당 소득도 2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 노년층의 구매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친화산업의 국내 시장규모는 주요 산업부문의 경우 2000년 약 17조원이었으나 2005년 약 27조원, 2010년 약 41조원, 2020년 약 116조원으로 그 중 주거 관련 분야는 전체 시장 규모의 약 25%이상을 차지하며 연평균 10%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말해주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발전 속도는 급류를 타고 있다. 이를 비즈니스로 연결시키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주택산업도 고령친화산업을 준비해야 할 때다.

바짝 앞으로 다가온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앞으로 등장할 노인들은 현재의 노년층과는 전혀 다른 경제력, 건강, 교육수준 등을 지녔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런 대전제 아래 고령친화산업은 모든 면에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비즈니스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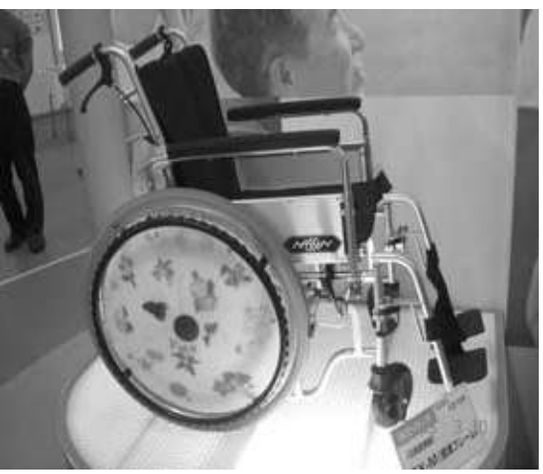

협회소식_ kira news

이사회

■ **제5회 이사회**

2006년도 제5회 이사회가 지난 5월 9일 오후 3시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회관신축공사 공사도급계약 변경 추인의 건, 회관 지표면조정 설계변경 계약 승인의 건, 정회원 회비 장기미납회원 제명에 관한 건, 대한민국 APEC Architect Monitoring Committee 운영에 관한 건, 한·미 FTA 협상관련 의견 제출에 관한 건, 상근부회장 선임에 관한 건, 퇴직위로금 지급 승인의 건 등이 논의되었으며, 협의사항으로 건축사회 지원금 배분방안 개선 건의에 관한 건, 사업자단체 정비지침에 관한 건, 한·중·일 건축사 친선축구경기대회 개최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회관신축공사 공사도급계약 변경 추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구 분	당 초	변 경
계약기간	'05년 1월 19일 부터 '05년 1월 19일 부터 (약 18개월)	'06년 7월 18일 까지 '06년 11월 20일 까지 (약 22개월)
계약금액	7,980,000,000원 (VAT 별도)	8,887,000,000원 (VAT 별도)

• 제2호의안 : 회관 지표면조정 설계변경 계약 승인의 건

– 회관건립위원회와 협의·결정하도록 회장에게 위임함.

• 제3호의안 : 정회원회비 장기미납회원 제명에 관한 건

– 정회원 회비 장기미납 회원을 아래와 같이 징계처분하기로 함.

▷ 징계대상 : 정회원 회비를 5년(60개월)이상 장기미납한 회원

▷ 징계종류 : 제명

▷ 징계방법 및 절차

– 3개월간 회비납부 기한을 주고, 그 이후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 및 미납회비 결손처리

• 제4호의안 : 대한민국 APEC Architect Monitoring Committee 운영에 관한 건

– 소위원회(이영수, 정명옥, 한명수 이사)를 구성하여 운영계획 및 운영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차기 이사회에서 재심의하기로 함.

• 제5호의안 : 한·미 FTA 협상관련 의견 제출에 관한 건

– 현 상태에서 더 이상의 개방은 불가한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기로 함.

• 제6호의안 : 상근부회장 선임에 관한 건

– 상근부회장을 아래와 같이 선임하기로 함.

▷ 성 명 : 신인기 상근부회장(신임)

▷ 임 기 : '06. 5. 16~'08. 5. 15(2년)

• 제7호의안 : 퇴직위로금 지급 승인의 건

– 협회에 기여한 공로를 감안하여 윤준섭 상근부회장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함.

▲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회 지원금 배분방안 개선 건의에 관한 건

– 서울건축사회 회장이 선출된 이후 재심의하기로 함.

• 제2호 : 사업자단체 정비지침에 관한 건

– 정부에서 추진중인 사업자단체 정비계획에 대한 반대논리를 개발하여 적극 대처하기로 함.

• 제3호 : 한·중·일 건축사 친선축구경기대회 개최에 관한 건

–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회원협력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회장이 결정하도록 함.

▲ 기타사항

• 2006 한국건축산업대전에 참가하는 업체에게 건축사지(약 100부)를 무료로 배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배부방안에 대해서는 편찬위원

회에서 검토하기로 함.

- 건설교통부가 주관한 건축설계업 발전 종합방안 연구결과 보고회('06.5.9)에서 아래와 같이 논의되었음을 보고함.(한명수 이사)
  - 건교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 국무조정실에 제출하되, 그 내용을 협회에 알려주기로 함.
  - 협회는 연구결과보고서에 제시된 내용 등을 국무조정실 관계관에게 설명하기로 함.
- 한국건축문화대상과 한국건축산업대전의 연계문제는 협회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기로 함.

■ **제3회 시 · 도건축사회 회장회의**

2006년도 제3회 시 · 도건축사회 회장회의가 지난 5월 9일 오전 11시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APEC Architect Monitoring Committee 운영에 관한 건, 한 · 미 FTA 협상관련 의견 제출에 관한 건, 사업자단체 정비지침에 관한 건, 건축사회 지원금 배분방안 개선 건의에 관한 건, 상근부회장 선임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대한민국 APEC Architect Monitoring Committee 운영에 관한 건
  - 관련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연구 · 검토하여 적정하게 대응하기로 함.
- 제2호 : 한 · 미 FTA 협상관련 의견제출에 관한 건
  - 관련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연구 · 검토하여 국내 건축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정하게 대응하기로 함.
- 제3호 : 사업자단체 정비지침에 관한 건
  -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자단체 정비계획에 대한 반대논리를 개발하여 적극 대처하기로 함.
    - ▷ 협회가 건축사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설계도서 확인제 등의 제도적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2006.5.10일 개최 예정인 '건축사 제도 개선 및 협회의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에 가급적 많은 시 · 도 건축사회 회장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기로 함.
- 제4호 : 건축사회 지원금 배분방안 개선 건의에 관한 건
  - 제40회 정기총회('06.2.21)에서 이미 승인된 사항이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되, 서울건축사회 회장이 새로 선출(5/18)된 이후 재논의해 보기로 함.
- 제5호 : 상근부회장 선임에 관한 건
  - 신임 상근부회장이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 · 도 건축사회 회장들이 적극 협력하기로 함.
  - 윤준섭 상근부회장의 퇴직위로금 지급문제는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함.

■ **임원 및 시 · 도건축사회장 합동회의**

임원 및 시 · 도건축사회장 합동회의가 지난 5월 23일 오후 2시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사 등록 ·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건, 건축문화 혁신도시 프로그램 추진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 등록 ·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건
  - 건축사의 등록 ·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축사법에 의해 설립된 건축사 협회가 설립목적이나 당위성 등으로 볼때 당연히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협회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임원과 시.도건축사회장이 적극 협력키로 하되, 미반영시에는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문화 혁신도시 프로그램 추진에 관한 건
  - 관련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연구 · 검토하고, 정부와도 적극 협력하여 추진계획을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기로 함.

▲ 기타사항

- 시 · 도건축사회는 장양순이사가 제안한 신문발간계획(안)에 대하여 간사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의견을 제출키로 하고, 세부사항은 관련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함.
  - 건축사 기자를 15일내에 추천해 주도록 시 · 도건축사회에 요청함.
- 몽골(7월)과 중국(9월, ACA-12) 방문문제는 시 · 도건축사회장단에서 일정과 비용 등을 검토하여 동참여부를 결정 · 통보해 주도록 요청함.
- 건설기술 · 건축문화선진화연대에서 요청한 '건설생산체계 개편 실무협의회'의 본협회 위원으로 이무열 인천건축사회장을 추천하기로 함.
- 건축사법 개정과 관련한 워크샵(6/2~6/4)은 실무작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련위원과 담당이사만 참석하기로 하고, 그 결과는 시 · 도건축사회장회의와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 문제는 현재 법제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고, 서울건축사회에서도 법제처에 질의한 상태이므로 추후 그 결과를 시 · 도건축사회에 알려주기로 함.
- 건설업체의 설계겸업 문제는 각 시 · 도건축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정부의 진행과정을 확인 · 점검해 주도록 요청함.

위원회 회의

■ **제4회 여성건축사위원회**

2006년도 제4회 여성건축사위원회 회의가 지난 4월 14일 오후 4시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06년 전국여성건축사대회 세부 계획(안)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2006년 전국여성건축사대회 세부

계획(안)에 관한 건

- 감사패, 행사일정, 대회책자 및 초청장 제작 등에 관해 논의함.

■ **제2회 법제위원회**

2006년도 제2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4월 19일 오후 4시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법제위원회 중점사업계획 추진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2006년도 법제위원회 중점사업계획 추진에 관한 건

- 건축관련 법령 개정(안)이 나오면, 법제위원들에게 E-Mail로 송부하고, 법제위원들은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함.
- 건축사법 개정 특별위원회에 법제위원이 2명 정도가 참여하여 업무의 연계성을 유지하기로 함.
- 건축문화진흥법이 제정되도록 지원하기로 함.
- 건축물유지관리에 관한 법령 제정을 추진하기로 함.

■ **제1회 한국건축산업대전 준비위원회**

2006년도 제1회 한국건축산업대전준비위원회 회의가 지난 4월 20일 오후 4시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06 한국건축산업대전 준비계획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2006 한국건축산업대전 준비계획에 관한 건

- 한국건축산업대전 준비위원장으로 강석후 이사를 선임하고, 실무위원 선임을 강석후 이사에게 위임함.
- 1차 홍보물을 수정하여 위원들이 검토키로 했으며, 계약조건에서 제2조 제3항은 삭제하기로 함.
- 참가대상업체에 홍보할 안내문은 회의자료(안)대로 시행하기로 함.
- 기타 준비사항은 실무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함.

■ **제4회 정보관리위원회**

2006년도 제4회 정보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4월 21일 오후 2시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공동구매 추진방안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업무용 소프트웨어 공동구매 추진방안에 관한 건

- "업무용 소프트웨어 공동구매"는 '06.5.1일부터 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기로 함.
- 회원사 홍보는 홈페이지, FAX, E-mail,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시행하기로 함.

■ **제1회 건축사법개정 특별위원회**

2006년도 제1회 건축사법개정 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3일 오후 4시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건축사법개정 방향에 대한 건과 한 · 미 FTA 협상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건축사법개정 방향에 대한 건

- 건축사법에서 등록원을 건축사협회에 둘 수 있는 근거조문을 신설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추진방법 및 논리개발은 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건축사자격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우리협회의 의견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회의에서 정리하기로 함.

• 제2호 : 한 · 미 FTA 협상에 관한 건

- 원칙적으로 한 · 미 FTA 시장개방에 반대함.

▷ 미국은 연방정부로서 우리나라보다 진입장벽이 견고하므로 구체적인 연구 ·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제2회 건축사법개정 특별위원회**

2006년도 제2회 건축사법개정 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17일 오후 2시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건축사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건축사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건

- 9월 정기국회에 맞춰서 건축사법 개정(안)을 국제흐름에 맞춰 연구 · 정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하므로 워크숍(6월2일~4일)을 통해 위원회의 안을 정리하기로 함.

■ **제1회 건축문화전당사업위원회**

2006년도 제2회 건축사법개정 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4일 오전 11시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건축문화의전당 사업 추진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건축문화의전당사업 추진에 관한 건

- 「건축문화의 전당」을 건립하자는 기본원칙에 위원들이 공감하고, 동 사업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운영규정의 제정, 사업계획 연구용역에 필요한 기본계획안 마련, 기금 확보 방법, 위원들의 역할배분 문제 등에 관하여 차기 회의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제1회 정책위원회**

2006년도 제1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4일 오후 3시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정책위원회 추진과제에 관한 건, 건설기술 · 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추진사업에 관한 건, 국무조정실의 사업자단체 정비계획에 대한 대응방안의 건, 협회 운영방안에 관한 건, 건설사 설계겸업 요구에 관한 건, 한 · 미 FTA관련 대처방안에 관한 건, 신규 동아리 '회원보컬그룹' 결성 · 운영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2006년도 정책위원회 추진과제에 관한 건
  - 관련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함.
- 제2호 : 건설기술 · 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추진사업에 관한 건
  - 관련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함.
- 제3호 : 국무조정실의 사업자단체 정비계획에 대한 대응방안의 건
  - 타 전문자격사 단체와의 공조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 건축분야 및 건축사 직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고도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요구되므로 자격자 단체의 설립 및 가입, 위탁사무 및 자격자 관리 등에 있어 오히려 현재보다 더욱 철저한 관리 · 운영을 요구해야 함.
- 제4호 : 협회 운영방안에 관한 건
  - 5월10일 건축사법토론회에서 건교부 측에 상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도록 요구하기로 함.
  - 각 건축사회별로 재정자립, 자산관리를 하기 위해 법인화는 필요함.
  - 회원의 협회 활동 참여 활성화 위해서는 회원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함.
  - 회원과 비회원간의 차별화를 위하여 계속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 · 운영토록 하여 회원간의 응집력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 제5호 : 건설사 설계겸업 요구에 관한 건
  - 차기 회의시까지 위원들 각자가 '건축설계업 발전 종합방안 연구' 보고서를 검토하기로 함.
  - 한명수 위원장이 5월9일 건교부에서 개최하는 연구용역 보고회에 참석한 후 차기 회의시 결과를 보고하기로 함.
- 제6호 : 한 · 미 FTA관련 대처방안에 관한 건
  - 한 · 미 FTA 협상에서 건축설계분야에 대해 우리나라 수준으로(공동계약 형태의 업무 허용) 미국도 개방하도록 해야 함.
  - 건축사자격 상호인정(MRA) 문제는 언어장벽, 설계 기술력 차이 등으로 우리나라 건축설계시장이 미국건축사에 의해 잠식될 가능성이 크므로, 우리나라 건축사제도를 국제기준으로 정비한 후 일정수의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건축사들이 배출되었을 때 논의하는 것으로 보류해야 함.
- 제7호 : 신규동아리 '회원 보컬그룹' 결성 · 운영에 관한 건
  -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제2회 협회발전위원회**

2006년도 제2회 협회발전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10일 오후 4시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건축연구원 운영에 관한 건, 건축사 업역 확대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건축연구원 운영에 관한 건
  - 건축연구원 운영 활성화 방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 · 보완한 후 중점적으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위원장이 회장과 면담 후에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사 업역 확대에 관한 건
  - 건축사 업역 확대방안 중 건축연구원의 3단계 추진사업인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를 2006년도 주요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연구원과 합동으로 연구해 가기로 함.

우리협회 신축회관 상량식 개최

본 협회는 지난 6월 8일 서초동 소재 건축사회관 공사현장에서 이철호 본 협회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위원 및 시 · 도건축사회장,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관준공시까지 건설공정이 순조롭게 이뤄져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기원하는 상량식(上樑式)을 가졌다.

상량식은 공사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이철호 회장의 인사말과 상량식 안전제례 거행으로 진행됐다. 이철호 회장은 "건축사회관 준공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 대한건축사협회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고, 많은 건축인들이 왕래하며 명실상부한 건축계의 중심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인사말을 건네며 상량식을 자축했으며, 이에 시공사 박명우 사장은 "건축사회관 완공시까지 한치의 흐트러짐없이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말로 화답했다.

건축사회관은 지상 8층, 지하 4층 연건평 3,500여 평 규모로 올해 11월 완공 예정이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2006년도 제2회 임시총회 개최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지난 5월 18일(목) 14시 향군회관 대강당에서 2006년도 제2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재적회원 2,838명 중 5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집행 비상대책운영위원회 구성 추인의 건을 비롯한 3개의 안건이 상정 · 처리되었다. 제3호의 안의 임원 선출의 건에서 회장 및 감사선거 실시결과 강성익(주. 한라종합건축사사무소) 회원이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이장백(주. 기전건축사사무소) 회원이 감사로 선출되었다.

주요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제1호의안 : 업무집행 비상대책운영위원회 구성 추인의 건
  - 지난 제40회 정기총회에서 업무집행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선임되었으나 동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의 범위가 명확치 않으므로 업무집행 비상대책위원회가 간사회의 기능과 임시집행부의 역할을 가진다는 것과 위원회의 위원 선임을 위원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추인함.
- 제2호의안 : 대의원 개선의 건
  - 선출대상 대의원 수에서 전임회장과 현직 임원을 제외한 인원으로 회장단에서 30%, 구건축사회에서 70%를 선임하도록 함.
- 제3호의안 : 임원 선출의 건
  - 회장 및 감사선거 실시 결과 강성익(주. 한라종합건축사사무소) 회원이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이장백(주. 기전건축사사무소) 회원이 감사로 선출되었으며, 간사 선출은 신임회장에게 위임키로 함.

2006 한국건축단체연합 심우갑 대표회장 취임

2006년 한국건축단체연합(FIKA) 대표회장으로 심우갑 대한건축학회 회장이 취임했다.

지난 6월 7일 11시 대한건축학회 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2006한국건축단체연합 대표회장이 · 취임식에서 심우갑 대표회장은 취임사에서 전임 대표회장인 윤석우 회장과 이철호 공동대표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등으로 구성된 한국건축단체연합은 WTO, UIA 관련 국제협상 등 건축계 현안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협의하여 지난 2001년에 설립하였다.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 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6-7475 · 강북구건축사회/903-2030 · 강서구건축사회/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77-4844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990-8720 · 동대문구건축사회/967-6052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6781 · 서대문구건축사회/338-5552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86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5-1402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234-8872~3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508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9152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3-016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8-5110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2-8890 · 아산지역건축사회/(041)532-9200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논산지역건축사회/(041)736-2117 · 금산지역건축사회/(041)751-1333 ·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천지역건축사회/(041)952-2356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예산지역건축사회/(041) 335-1333 · 당진지역건축사회/(041)356-0017 · 계룡지역회장/(042)841-5725 · 청양지역회장/(041)942-59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6-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61)726-6877~8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4455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군위,의성지역건축사회/(054)383-860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시건축사회/(05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시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시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

회관신축공사 진행경과

(20006년 5월 31일 현재)

공사진행 현황

'06. 5월중 진행된 우리협회 회관신축공사는 지상 6층에서 지상8층까지의 바닥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었고, 골조공사와 병행하여 지하층의 방수공사 및 미장공사, 조적공사 그리고 지상층의 스프링쿨러 공사 및 화장실 천정배관 공사가 진행되었다.

'06. 5월말에는 지상 지붕층 바닥 철근배근 및 형틀설치 작업이 완료되어 '06. 6. 2일 지붕층 바닥콘크리트가 타설되었다.

이에 최상부인 옥탑층 바닥 콘크리트가 타설된 '06. 6. 8일 신축회관의 상량식을 개최하였다.

회관신축공사의 공정진행은 '06. 5월말 현재 56.1%(계획 55.4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회관건립위원회 회의현황

'06. 5. 12일 개최된 제7회 위원회에서는 회관 2차 설계변경(지표면조정)의 설계용역계약을 위해 설계자인 유진건축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시공자에게 지급할 협찬자재의 품목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회관 임대 및 사용계획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여 부동산컨설팅업체로부터 구체적인 임대 제안서를 제출받기로 하였다

또한 '06. 5.22일 개최된 제8회 위원회에서는 회관 2차 설계변경 용역계약을 위해 유진건축과 계약금액 및 용역범위에 대한 최종 협의를 거쳐 설계변경용역을 진행키로 하고, 지표면 조정에 따른 토목옹벽설계는 우리협회에서 별도 발주키로 하였다.

지붕층 거푸집 설치공사

통신 CableTray 설치공사

소방설비배관 설치공사

공사 전경

투시도

2006년 한브랜드 우수 디자인 공모전 개최

문화관광부에서는 한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보급하고자, 한 브랜드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전통주택의 현대화를 위한 2006 한브랜드 우수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 공모주제
  - 한국적 주거문화의 우수성이 잘 표현된 설계 디자인 및 모형
  - 전통 주택의 산업화 및 세계화와 부합하는 설계 디자인 및 모형
  - 건강 주택으로서의 전통 주택을 잘 표현한 설계 디자인 및 모형
  - 전통 주택을 주제로 한 자유 작품
  - * 위 주제 중에서 원하는 주제를 택하여 응모, 중복응모가능
- 공모대상
  - 대학부 : 국내외 2년제 이상의 건축 관련 학과 대학(원)재학생(4인이하 팀응모 가능)
  - 일반부 : 관련직 종사자 또는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 특별학생부 : 고등학교 재학생(단체, 개인)
- 공모일정
  - 참가신청 : 2006. 5.15~6.30(참가비 없음)
  - 작품접수 : 2006. 7. 1~8.31
  - 발표시상 : 2006. 9월예정
- 문의 : (사)한국건강주택협회 사무국 02-2026-1222, http://www.khha.or.kr

2006 김수근추모20주기 행사 및 17회 김수근문화상 개최

한국 현대건축 1세대를 대표하는 故 김수근 건축사 추모 20주년을 맞아 김수근문화상 시상식과 전시회가 개최되며, 그와 그의 예술세계를 기억하는 행사도 아르코미술관에서 개최된다.

■ 2006년 제17회 김수근 문화상 시상식

오늘 제주도에는 그것이 세워지는 의미가 탈각된 수많은 시설들이 내던져지고 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 핀크스 뮤지엄은 무엇이 어떤 장소를 제주이게 하는지, 그 장소에서 일어날 감응은 어떤 깊이에 도달해야 하는지를 묵언으로 환기시킨다.

- 수상작 : 제주 PINX MUSEUM / ITAMI JUN(ITAMI JUN ARCHITECT A RESEARCH INSTITUTE)
- 일시 : 2006년 6월 14일 (수) 오후 3시
- 장소 : 공간사옥마당
- 문의 : 02-743-7281

■ 2005년 제16회 김수근 문화상 전시회

- 전시작품 : 일산 허유재 병원 / 김영준 건축사(김영준 도시건축)
- 기간 : 2005년 6월 14일(수)~6월 27일(화)
- 장소 : 공간사옥전시장
- 오프닝 : 6월 14일 (수) 오후 3시
- 문의 : 02-743-7281

■ 추모20주기 행사

- 주제 : '지금 여기(Here and Now) 김수근 전'
- 기간 : 2006.6.7(수)~7.28(금)
- 장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전관
- 부대프로그램
  - 제1 심포지움
    - ▷ 주제 : 건축사 김수근과 이 시대 우리의 건축
    - ▷ 일시 : 2006.6.14(수) 오후 5시
  - 제2 심포지움
    - ▷ 주제 : 동시대 시각예술 그리고 환경으로서의 건축
    - ▷ 일시 : 2006.7.12(수) 오후 5시
  - 건축 강연회
    - ▷ 주제 : 김수근과 나의 건축
    - ▷ 장소 : 제1전시장 소극장
    - ▷ 일시 : 2006.6.20~2006.7.11
  - 교육프로그램
    - ▷ '상상up(業) 김수근 건축 내부공간 탐방하기'
  - 공연 프로그램
- 문의 : 760-4892~3, http : //www.arko.or.kr

2006 대한민국 그린에너지 엑스포 개최

오는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엑스코에서 '2006 대한민국 그린에너지엑스포(International Green Energy EXPO Korea 2006)'가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독일, 일본, 미국, 중국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선도 기업 32개사를 포함한 총 10개국 92여 개 사가 참가하며, 11개 분야의 전문세미나가 개최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최신기술과 제품 경연장으로서의 자리매김과 더불어 급부상하고 있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시장선점을 위한 해외기업들의 치열한 각축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외 우수한 업체들의 참가뿐만 아니라 전시회 기간 중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태양광학회,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등 20여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관단체 및 학회가 참가하여 신재생에너지 11개 전 분야에 걸친 '그린에너지 컨퍼런스'가 동시에 개최되어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및 관련 기업인에게 국제적 선진기술과 정보를 교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

로 전망된다.

- 장소 : 대구 전시컨벤션센터(EXCO)
- 행사규모 : 10개국 92개사 193개 부스(해외 업체 : 33개사 37부스)
- 개막행사 : 2006. 6. 14(수) 11:00 a.m
- 관람시간
  - 14(수)~15일(목) 10:00~17:00
  - 16일(금) 10:00~16:00
- 문의 : 전시팀 김석범 053-601-5082, www.energyexpo.co.kr

KCC 고품격 신제품 3종 출시

최근 종합 건축자재 생산메이커 KCC는 확장형 발코니 특화 제품인 '프라임 이중창 시리즈'와 고품격 바닥재인 '예원(藝苑)', 화장실 일체형 시스템 '센스월'을 출시했다.

먼저 '프라임 이중창 시리즈'는 발코니 확장에 최적화한 PVC 재질의 도심 고층 아파트 및 해안 고층 아파트 발코니용 '프라임 이중창 248(도심 고층용)'과 '프라임 이중창 271(해안 고층용)'으로서 고층 아파트 외창에 대한 주요 소비자 트렌드(안전, 에너지, 환경, 디자인)에 맞도록 설계된 최고급 창호로 최근 분양한 전국 주요 건설 현장의 발코니 확장 부위에 채택된 '확장형 발코니 특화 제품'이다.

그리고 고품격 바닥재 '예원(藝苑)'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던 곤룡포의 근엄한 문양과 왕이 거닐던 경회루의 고급스러운 바닥디자인을 현대적 주거 공간에 그대로 재현한 제품으로서 한방약

재인 천궁과 진피를 첨가하고, 참숯까지 함유해 항균 기능이 99.9%에 달할 정도로 탁월하며,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또한 제로에 가까워 심미적 요소와 기능성은 물론 건강과 환경까지 두루 생각한 친환경 바닥재로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화장실 일체형 시스템 '센스월(SENSEWALL)'은 100% 건식공법으로 습식공법인 기존 타일공사에 비해 주위 환경에 상관없이 시공이 가능해 비용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부분적인 개 보수시, 기존 타일마감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를 통해서만 철거 후 재시공이 가능했으나 센스월은 단순한 결착방식으로 일부 판넬이 파손되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보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타일 마감의 경우 색상이 단조롭고 차가운 이미지를 주는 데 반해 센스월은 다양한 나무무늬와 컬러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어 고급스럽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유자재로 연출할 수 있다.

- 문의 : KCC 고객상담실 080-022-8200, http://www.kccworld.co.kr

제12차 아시아건축사대회 & 제27차 아카시아 이사회 개최 안내

제12차 아시아건축사대회 & 제27차 아카시아 이사회가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 주최로 중국 북경에서 '아시아 도시와 건축의 변화(The Transition of Cities and Architecture in Asia)'라는 주제로 2006년 9월 17부터 22일까지 약 6일간 개최된다.

- 주제 : 아시아 도시와 건축의 변화(The Transition of Cities and Architecture in Asia)
  - 건축사의 국제적 이동과 아시아의 기회(International Professional Exchange and the Opportunity of Asia)
  - 건축시장 개방과 건축사의 의무(Open Architecture Market and the Duty of Architects)
  - 조화로운 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발전-인간과 자연, 건축물과 도시, 환경과 에너지 효율 빌딩(Sustainable Development for a Harmonious Society-Man and Nature, Architecture and Cities, Ecology and Energy Efficiency Building)
- 프로그램
  - 9/17(일) : 아카시아 Fellowship 회의 / 운영진 회의
    ▷ 각국 대표단 도착
  - 9/18(월) : 아카시아 이사회 / 아카시아 교육위원회
  - 9/19(화) : 아카시아 이사회 / 아카시아 교육위원회
    ▷ 2006 아시아 건축전시회 개회식
    ▷ ACA-12 참가자 및 학생대표 도착 / 환영만찬
  - 9/20(수) : ACA-12 General Session /

학생 잼보리

▷ 아카시아 & ASC 건축상 시상식 / 댄스 쇼

- 9/21(목) : ACA-12 Sub-Session(4개 장소) / 학생 잼보리

▷ Friendship Night(Summer Palace)

- 9/22(금) : 건축물 탐방

• 제12차 아시아건축사대회 강연자

- General Session(9/20)

▷ 류춘수(한국), Charles Correa(인도), Wu Liangyong(중 국),Kenneth Yeang(말레이시아), Zhang Jinqiu(중국)

- Sub-session(9/21)

▷ 이영수 건축사 등 22명

• 장소

일시	행사명	개최장소
'06. 9. 17 ~19	아카시아 이사회 / 아카시아 교육위원회 / Fellowship Meeting / 운영진 회의	아시아 호텔
'06. 9. 20	ACA-12 General Session	FLTRP 인터네셔날 컨벤션 센터
'06. 9. 21	ACA-12 Sub-session	
	Session 1 -아시아 건축문화와 지역주의	China Architecture Design & Research Group
	Session 2 -건축실무와 설계 시장	Beijing Institute of Architectural Design
	Session 3 - 자연친화적 건축물과 지속가능한 발전	Architectural Design & Research Institute of Tsinghua University
	Session 4 - 인테리어 디자인과 자연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of ASC
	Friendship Night	Summer Palace

• 2006 아시아건축전시회

- 개최일시 : '06. 9. 19~22
- 개최장소 : 베이징 국제전시센터(Beijing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 학생 잼버리

- 개최일시 : '06. 9. 20(수)~22(금)
- 주 최 : Tsinghua University / Beijing University of Technology
- 등 록 비 : 450 RMB 또는 60 US$ (호텔비 제외)

• 건축탐방(9/22, 08:00~16:00)

- 공식호텔 → 베이징 국제전시센터(2006 아시아건축전시회) → 올림픽 파크(주 경기장, 경기장, 수영장) → National Grand Theater → Beijing Urban Planning Exhibition Hall

• Special Event(저녁 행사)

- 9/17(일) : ASC 주최 환영만찬(아카시아 이사회 참가자 대상)
- 9/18(토) : 건설부 주최 환영만찬(아카시아 이사회 참가자 대상)
- 9/19(일) : ASC 주최 환영리셉션(ACA-12 참가자 대상)/2006 아시아건축전시회 개막식
- 9/20(월) : 아카시아 건축상 시상식 및 댄스쇼(ACA-12 참가자 및 학생)
- 9/21(화) : Friendship Night(ACA-12 참가자 및 학생)

• 참가등록비

- ACA-12 참가자

▷ 사전등록 : 2000 RMB 또는 250 US$ / '06. 8. 30일 이전

▷ 일반등록 : 2400 RMB 또는 300 US$ / '06. 8. 30일 이후

▷ 단체등록 : 등록비 10% 할인 / 20인 이상 등록

※ ACA-12 참가등록자는 ACA-12의 모든 행사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등록신청 : www.chinaasc.org에서 다운로드 가능. 팩스 및 이메일로 제출.

• 연락처 : ACA-12 사무국(중국건축학회 /Zhang Baiping(Mr.) / Wu Pujuan(Ms.))

- 주소 : No.9, Sanlihe Road, Beijing, China 100835
- 전화 : +86-10-88082238 / 88082237
- 팩스 : +86-10-88082222 / 88082223
- E-mail : asc@mail.cin.gov.cn / asc@chinaasc.org
- 홈페이지 : www.chinaasc.org

Post-Conference Program
상하이 포럼

• 개최일시 : '06. 9. 23(토)~24(일)

• 개최장소 : 중국 상하이

• 주 최 : 아카시아 / 중국건축학회

• 주 관 : Shanghai Xian Dai Architectural Design (Group) Co., Ltd. 상하이 건축학회(Architectural Society of Shanghai)

• 포럼주제 : 아시아 도시와 건물의 변화 (The Transition of Cities & Architecture in Asia)

-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의 건축물 (Sustainable Development & Architectural Creation of the City)

• 포럼 소주제

- Shanghai Urban Development & Architectural Creation
- 2010 World's Fair & Urban Construction
- Protection & Renovation of Historic Building
- Sustainable Development & Technology of Architecture

• 행사일정

- 9/22(금) 등록
- 9/23(토) 상하이 포럼
- 9/24(일) 건축탐방

• 포럼 전시회

일시 : '06. 9. 20~27

• 등록비 : 1200 RMB(150 US$)

• 호텔예약 : 사무국에 직접 문의

• 상하이 포럼 사무국

(Shanghai Xian Dai Architectural Design (Group) Co., Ltd.)

- 전화 : +86-21-52524567-62212 / 86-21-62464281
- 팩스 : +86-21-62464281
- E-mail : wenjun_ding@xd-ad.com.cn

이 난은 인터넷상의 주요 건축관련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가 보편화 됨에 따라 건축사들의 스케치 능력의 감퇴와 이에 따른 건축의 질적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건축분야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디지털 기술의 사용은 이제 설계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주택으로부터 사무소 건축 그리고 기타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컴퓨터의 도움 없이 프로젝트 수행은 불가능 할 정도로 업무의 환경이 변화하였다. 그러한 컴퓨터라는 도구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손을 이용한 스케치는 생각을 표현하는 가장 이상적인 도구로 남아 있다.

디지털에 익숙한 건축사의 경우 생각을 스케치할 수 있는 능력의 감퇴와 결과적인 건축에서의 심각한 질적 퇴화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다양한 형태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표적인 예로 프랭크 게리의 '빌바오 구겐하임 뮤지움'을 들고 있다. 이는 컴퓨터의 활용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초기 설계 단계에서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카드 보드를 사용하였다. 그러한 디자인 안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가장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문제로는 복잡한 기하하적 형태를 지을 수 있도록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복잡한 형태를 생성해 낼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형태를 디자인 하는 것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아직 건축은 복잡한 형태와 패턴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복잡한 입면과 불규칙한 형태 그리고 스페이스 에이지를 표방한 굴곡의 형태에 의한 공간 생성에 현혹되기 쉽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태가 때로는 이상적인 공간일 경우도 있으나 형편 없는 디자인이 될 수도 있다.

스케치의 가장 커다란 장점은 공간을 표현하기 이전에 공간에 대한 경험을 깊이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살고 경험하는 공간들을 스케치함으로써 공간에 대한 경험을 확실하게 도움을 준다. 그러나 컴퓨터의 경우 그것이 도구의 친숙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도구의 한계인지는 분명하나 스크린 너머 느낄 수 있는 공간 창조의 능력에 대한 감소를 많은 원로 건축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컴퓨터는 복잡한 데이터 처리에는 매우 효율적이나 창의적 과정에서는 아직 한계를 보이고 있다. 창의적 설계를 위한 많은 소프트웨어들의 출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스케치가 공간을 경험하고 생각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남아 있다.

건축

AIA HOUSING AWARDS 2006

미국 AIA는 2006 Housing Awards로 13개 작품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주택을 대상으로 도심에서의 주거의 질을 고려한 주택으로 에너지에 대한 고려, 자원의 보전 그리고 미적 요소들이 평가의 요소로 반영되었다. 특히 집합주택 부문에서는 건축 설계의 질적인 면뿐만 아니라 환경, 교통 그리고 오픈스페이스와의 연계 등이 평가에 고려되었다.

선정된 13개 작품 가운데 Hammel, Green and Abrahamson, In에 의한 Live/Work Artists' Housing

Hanley Wood사 새로운 잡지 『ARCHITECT』 발간 발표

Hanley Wood사는 비지니스간 미디어 회사로 새로운 잡지인 『ARCHITECT』를 새로이 발간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2006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 잡지는 실무 건축사들을 대상으로 정보의 전달과 디자인 아이디어 그리고 실무에 관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잡지의 발간은 웹사이트와 6월 AIA 쇼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Hanley Wood사는 주택 및 시공방면의 출판 미디어사이며 『BUILDER, REMODELING』, 『CUSTOM HOME』, 『CONCRETE CONSTRUCTION』 그리고 『RESIDENTIAL ARCHITECT』을 출판하고 있다.

Frank Gehry 'LA 도심 프로젝트' 초안

Frank Gehry에 의한 미국 LA의 도심에서의 120만 제곱피트와 7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의 복합 단지 개발안을 개발위원회가 발표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Frank Gehry의 다른 작품이기도 한 Walt Disney Concert Hall과 인접한 대지로 직접 접근이 가능하게 설계되었다. 제 1단계로 세계적 수준의 호텔, 주거, 소매점, 레스토랑 그리고 공공을 위한 문화 센터 등이 개발될 예정이다. 이 안은 보행자 중심으로 설계 되었으며, 거주자와 방문자 모두에게 매력적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1단계 디자인은 Disney Concert Hall을 마주하고 있는 50층 타워가 디자인의 주임을 이루고 있다. 이 타워의 저층부는 호텔이 위치할 것이며, 타워의 윗 부분에 주거부분이 위치할 것이다. 이에 따라 좋은 전망과 함께 호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디자인에서 상점과 함께 도심과 연결되는 보행자 중심의 통로형 길을 제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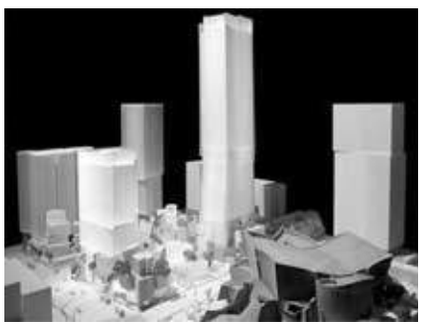

Frank Gehry의 새로운 LA Downtown 개발 계획안. Disney Concert Hall과 인접하여 있다.

새단장 개관 'Glasgow Kelvingrove 미술관'

Glasgow Kelvingrove 미술관이 3년간의 보수를 마치고 올 7월에 새로이 개관될 예정이다. 이 미술관은 미래의 미술관이라는 개념으로 보수와 전시가 기획되었다. 건축적으로 개보수의 기본적 개념은 1890년 당시 건축사가 의도하였던 건축적 개념인 밝고 따듯한 '문화의 성전'의 개념으로써의 환원이다. 이에 따라 지하 공간의 변화이다. 이전에 소장품 저장고로 사용되던 어두운 공간 지하공간에서 목재 가벽을 철거하여 빛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접근성을 위하여 새로운 계단을 설치하였으며, 200석의 까페를 만들어 관람객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전시에 대한 많은 개념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 미술관은 세계적 인상주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을뿐 아니라 르네상스 및 스코틀랜드의 작품뿐 아니라 이집트 역사물 그리고 자연사 전시물도 소장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전시하여야 방문자를 만족시키고 소장품의 위엄과 매력을 느끼게 하느냐의 문제였다. 그 대안으로 '전체성'의 개념보다 '사용자 중심'의 전시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과거의 시대적 구분에 의한 전시를 탈피하였다. 입구 부분에 미술에 대한 초보자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교육적 내용과 함께 전시를 기획하였다. 이를 통하여 미술관에 대한 감상하기 좋은 장소적 느낌 제공을 통한 지속적 방문의 느낌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전시의 중요한 고려 대상은 관람자들의 발걸음을 늦추어 작품을 깊이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2개 전시관에 작품과 관련된 시대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러한 배경하에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시의 변화에 대한 가변성을 고려하였다. 가족 중심의 전시를 위하여 어린이를 위한 그리기, 읽기 그리고 참여 공간을 미술관 중앙에 마련하였다. 또한 일부 전시물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전시하였다.

전시 작품의 설명에 대한 많은 고려가 있다. 일상적인 전시 형태로 작품의 옆에 그 작품설명이 있기 마련이다. 이에 추가하여 연관 작품에 대한 사진과 이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의 정보를 추가하였다.

'쓰나미 기념관' 설계 확정

쓰나미가 지나간지 2년이 지난 지금 쓰나미 박물관의 계획이 확정되었다. 태국 팽낙의 카오락남루 국립공원 안에 세워질 이 기념관은 스페인 디자인팀과 태국의 설계회사인 Naga Concepts사의 'Mountains of Remembrance' 작품으로 선정되었다. 이 회사는 팽낙의 반남캄의 쓰나미 박물관을 설계한 회사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불교적 건축을 반영하여 7개의 구조물로 되어 있으며 숲속에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스투파가 있는 신전과 같이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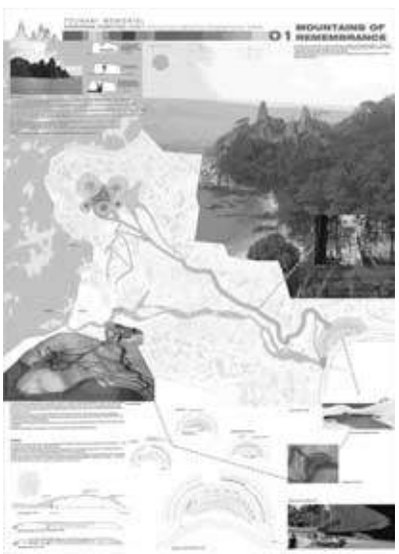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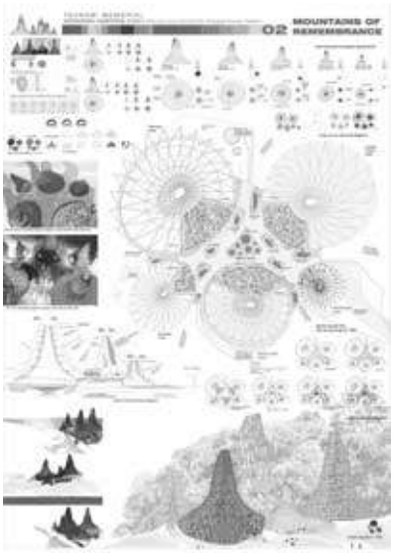

중국 청도에 세계 첫 '해저 호텔' 계획

중국 산둥(山東)성의 청도에 세계 첫 해저호텔이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영국 관광 전문업체 CHR의 자회사인 CHHQ와 정도 라오산구 정부가 약 5,300억원 예산의 해저호텔 건립 협정을 맺었다. 지난 6년간의 연구와 계획을 걸쳐 발표된 이 계획은 올해 착공 예정이다. 해저 해저는 1만 9000㎡ 그리고 지상 3만 3000㎡의 규모로 건설되며 해저 25m가 바다에 잠기는 형태로 계획되었다.

IT

무료 CAD 소프트트웨어

구글은 최근 무료 버전의 SketchUp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정식 버전의 경우 SketchUp Pro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는 Google사의 SketchUp 인수에 따른 사용자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정식버전은 SketchUp Pro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는 Google사가 사용자 확보를 통하여 데이터 수집을 통한 데이터 가공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Google에게는 3D 건물 모델은 메타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기반 정보이다.(메타 데이터란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이야기 한다) 예를 들어 지붕 개보수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건축업자에게 정보를 팔 수 있다. 또한 지붕 개보수 여부를 확인하여 시청 건축과에 이러한 정보를 팔 수 있다.

구글사의 무료 SketchUp과 함께 다양한 무료 CAD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을 할 수 있다. IMSI사는 'Corporate Seeding'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무료로 TurboCAD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년간 지속되어 왔다. 또한 최근 Bentley사는 학생들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는 2D CAD 소프트웨어인 PowerDraft를 공급하고 있다. 이들 무료 버전은 시간적 제약이나 기능의 제약이 없다. 이들 제품들은 학생뿐만 아니라 작은 규모의 사무소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다.

사용자 확보는 시장의 지배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MS사는 Operating System을 통하여 CAD 사용을 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CAD 벤더들이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운영체계 안에 머무르게 할 계획이다. MS사가 3DXML과 같은 데이터 포맷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리눅스와 같은 다른 운영체계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에 대한 경계이기도 하다.

Autodesk Revit Building 9 국제표준 인증

Autodesk사의 Revit 9.0이 국제표준기관인 IAI로부터 건물모델링 표준 인정을 받았다. 즉, IFC 2×2 모델과의 데이터 내보내기(Export) 기능 가운데 'IFC 2×2 코드 점검 보기(code checking view)'와 IFC '2×2 정합성 보기(IFC 2x2 Coordination View)' 등으로 국제 표준 종합 인증(full certification)을 받았다.

ArchiCAD 10 출시

Graphisoft사는 ArchiCAD 10을 최근 발표하였다. 또한 Macintosh에서 사용 할 수 있는 버전 또한 발표하였다. 이 버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www.graphisoft.com/products/archicad/ac10/)

- 프리 폼에 대한 모델링 기능의 강화
- 프로젝트 전 과정에 대한 통합적 설계 기능 강화
- 손쉬운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
- PDF안의 도면을 입력 기능 및 3D PDF로 출력 기능
- 자동 치수 기입 기능 보강
- 템플렛을 이용한 편리한 도면 레이아웃 설정 기능
- 태양 위치지정에 따른 입면 및 단면에서의 그림자 생성 기능
- 파라마타 기능의 보강. 특정 부재 (벽체, 기둥 등)의 변경 한계 등을 설정 기능

벤틀리사 MS SahrePoint 기반 협업도구 출시

벤틀리사는 프로젝트 협업 도구인 ProjectWise StartPoint를 선보였다. 이는 MS Office SharePoint에 기반하였으며, MicroStation과 AutoCAD 사용자를 위한 시스템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산업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 도구이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SharePoint 사용을 통하여 MicroStation과 AutoCAD로부터 협업 도구를 직접 사용할 수 있다.
- SharePoint를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
- SharePoint 기술 이외에 특별한 서버 기술이 필요 없으며 이에 따라 손쉽게 활용이 가능하다.

SharePoint 기술을 이용한 ProjectWise의 운영은 CAD 내용, project 데이터, 그리고 오피스 문서를 관리할 수 있다.

가상현실 소프트웨어 EON 5.5 출시

EON Reality사는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가상현실 소프트웨어인 Eon 5.5 버전을 출시하였다. 이 소프트웨어는 EON Professional, EON Studio, EON ICATCHER와 EON ICUBE를 포함하고 있다. 보다 나아진 기능으로는 실시간 반응 속도의 개선을 포함한 전반적 성능 개선이 이루어 졌다.

ARCHIBUS, 부동산관리 서비스시장 진출

시설관리 분야 소프트웨어의 세계적인 업체인 ARCHIBUS사는 세계적 상업 부동산 중계 업체인 NAI Global사와 비지니스에 관한 전략적 제휴를 맺기로 하였다. 이는 NAI사의 임대 및 부동산관리 소프트웨어인 REALTrac 프로그램과 ARCHIBUS/FM 소프트웨어의 결합을 의미한다. 이들 두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전세계의 NAI 고객들은 웹을 이용한 시설관리와 부동산관리 등 종합적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전시 및 기타

2006 Design Annual 개최

Design Annual은 매년 새로운 주제에 의하여 개최된다. 이러한 방식은 디자인에서의 현재의 트렌드와 관련 사회적 경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회가 개최된다는 의미이다. 2006년 전시회는 지난 5월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렸다. 이 전시회의 주제는 '도시풍'이었으며 오늘날 도시에서의 새로운 삶의 모색과 건설을 주제로 열렸다. 이 쇼에서는 오늘날 밀도와 집중, 다양한 경향이 만나는 장소, 문화가 모이는 장소라는 은유로써의 '도시공간'들이 선정되어 전시되었다. 교통의 절점으로, 또한 지속되는 공사의 현장이기도 하며, 공공의 공간이며, 새로운 변화의 기반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전시가 이루어 졌다. 이 전시회는 80여 작품이 선정되고 전시되었다. 이 전시회에서 Toyo Ito, Konstantin Grcic과 Bazon Brock 등의 건축사 및 디자이너들에 의하여 새로운 개념이 제시되었다.

J. Mayer H.에 의하여 제안된 Metropol Parasol. Sevilla의 Plaza de la Encarnacion 재개발 국제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으로 이 전시회에 출품되었다. 이 건물은 도시의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잡을 것이며, 이 프로젝트는 유럽의 도시 프로젝트에서의 혁신적 디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u-City건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지난 5월 3일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U-city 건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는 법안을 만들기 전 각계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법안은 특별법 형태로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밝혀졌다. 계획의 수립 및 표준화, 건설사업의 시행 및 관리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GIS KOREA 2006' 대회 개최

지난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GIS가 만들어가는 유비쿼터스 국토'란 주제로 GIS KOREA 2006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1999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과 GIS 관련업체들이 참가하였다. 올해에는 U-city 구축전략에 대한 발표가 주요 주제로 발표 되었다.

스마트홈 네트워크 쇼 개최

미래 주택을 위한 지능형 홈 네트웍 전시회가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일산 한국국제전시장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와 한국홈네트워크산업협회, 제어 · 자동화 · 시스템 공학회와 한국국제전시장이 공동주관하여 개최되었다. 올해에는 건설교통부가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와 함께 공동주최를 하였다.

〈제공 : 윤기병(원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기반시설부담금 적용요율 등 구체적 산정기준 마련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건설교통부는 오는 7월 12일 시행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지난 4월 20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그 동안 연구를 수행해 왔던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와 한국토지공사가 공동주최하는 자리로서 그 동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담을 주요 내용인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의 주요내용인 용지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등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인 및 일반시민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안)에 대하여 4월 21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주요내용은,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지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서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하되, 이미 기반시설이 완비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 건축하는 경우는 부과제외를 인정하는 등 부담금 부과면제 대상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정하였고, 징수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초 · 중 · 고),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며, 부담률도 기반시설부담금(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지자체의 장이 100분의 25의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참고자료 1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이번 시행령(안)에서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중 기반시설부담금 산정 방식과 관련된 주요내용인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시 · 군 · 구별 개별공시지가 평균값 산정방법과 이미 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공제방법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 산정 방식〉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①+용지비용②)×건축연면적×부담률–공제액
① 58,000원/㎡('06년 잠정)
② 지역별 용지환산계수×(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시 · 군 · 구 개별공시지가 평균/㎡)

※ 참고자료 2 : 기반시설부담금 산정방식(신축, 증축의 경우)

①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58,000원/㎡로 잠정 결정되었다.

• '00년 이후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부지조성공사가 발주된 전국 57개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하여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산출한 결과 약 58,000원/㎡ 이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각종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조성되므로 기반시설의 표준사례로 적합하며, 대상선정에 있어서는 정확한 자료 확보가 가능한 지구 및 지역별 분포를 감안하였다.

※ 참고자료 3 :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 산출내역

② 용지비용은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시 · 군 · 구별 개별공시지가 평균을 통해 산정된다.

②–1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는 주거지역 0.3, 상업 0.1, 공업 0.2, 기타 녹지 및 비도시지역 0.4를 적용하였다.

•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는 표준용지환산(소요)계수에 근거하여 산출되었으며,

–표준용지환산(소요)계수란 개발에 따른 필요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진 전국 57개 택지개발사업지구(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수행)의 표준기반시설 면적률(사업지구면적 대비 기반시설면적) 45%를, 동 지구의 용적률을 고려한 건축연면적 대비 기반시설 면적률로 환산하여 계산한 0.4를 말하며, 이는 건축연면적당 40%의 기반시설면적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즉, 녹지 및 비도시지역 등 기반시설이 미비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가의 기준이 되는 기반시설면적이 건축연면적당 40%라는 것이다.

• 지역별 용지환산(소요)계수란 이미 도시화가 진행되어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설치된 기존 도심지역의 경우에는 이미 설치된 기반시설면적을 고려하여 조정된 용지환산(소요)계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바, 각 지역별로 설치된 기반시설량에 해당하는 만큼 표준용지환산계수에서 차감하여 조정된 계수를 말한다.

– 예를 들면, 주거지역 용지환산계수가 0.3이라는 의미는 57개 지역 전체평균 환산계수인 0.4를 기준으로 0.1은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 건축연면적당 0.3의 비율로 기반시설설치가 요구된다는 의미이다.

• 이런 방식으로 각 지역별 기존 설치되어 있는 기반시설량을 차감하여 용도지역별로 세분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국 지자체 평균 용도지역별 용지환산계수〉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및 비도시
환산계수	0.3	0.1	0.2	0.4

※ 참고자료 4 : 표준용지환산계수 산출개요

②–2.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는 단독(공동)주택 1.0, 제1종 근린생활시설 1.9, 제2종 근린생활시설 2.4, 업무시설 1.0, 숙박시설 1.4 등을 적용하였다.

• 기반시설부담금에서 사용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는 건축물의 용도별로 기반시설 유발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보정해 주기 위한 계수로써

–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반시설 유발량을 연면적 기준으로만 산정한다면 건축물 용도에 따른 기반시설 유발량에 대해선 고려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계수이다.

• 건축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있는 27개 건축물의 유사용도군을 사용하였고, 공업용도의 경우는 다시 23개의 세분화된 용도로 구분하였다.

•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는 이미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사용중인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 원단위를 비용원단위로 산출하기 위하여, 2000년 이후 발주한 57개 택지개발지구의 7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적용하여 주거용도를 기준으로 비교 산정하였다.

※ 참고자료 5 :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②–3. 지자체별 평균공시지가는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필지를 제외한 토지의 시·군·구별 도시 및 비도시지역 각각의 면적가중평균금액을 적용하였다.

• 지자체별 평균공시지가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필지에 대한 보상비의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바,

– 시·군·구별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산정을 위하여 2005년 개별지 공시지가 특성조사표를 활용하여 개발제한구역,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토지를 평균공시지가 포함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 도시와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면적가중평균금액을 사용하였다.

※ 참고자료 6 :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구역 등

※ 참고자료 7 : 경기도 00시 개별공시지가 평균 산정사례

③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공제액은 납부의무자가 직접 설치한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였다.

• 설치비용은 기반시설 면적(또는 연장)에 기반시설 종류별 표준조성원단위를 곱하여 산정하고, 용지비용은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무상 귀속시킨 용지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 따라서, 납부의무자가 직접 설치한 기반시설의 공제액은 2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당해 토지가액과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단위당 시설별 조성비용을 합산한 가액이 된다.

※ 참고자료 8–1 : 구체적인 부담금 산정사례(신축, 증축 예시) / ※ 참고자료 8–2 : 건축물 종류별 부과금액 / ※ 참고자료 8–3 : 기반시설연동제가 시행중인 경기도 00시와의 비교사례

■ 그 밖에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제외 및 공제와 관련하여,

• 100% 제외되는 건축물로서 농업인의 공동생활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별재난지역내 피해복구 건축물 등을 추가하고,

• 100분의 50이 경감되는 대상 건축물을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시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사립학교, 농촌에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하였으며,

• 국가 등이 개발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혁신거점형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경제자유구역 내에 건설되는 건축물 등은 20년간 부과면제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 한편,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개별법상 납부한 부담금중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하는 부담금을 구체화하여,

– 도로법·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납부금, 학교용지의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등은 공제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 기타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

•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변경되거나 기타 부담금의 금액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 아울러 부담금의 예정통지와 심사 청구, 부담금의 결정, 부담금의 납입 및 물납신청, 납부기일의 연기와 분할 납부, 부담금의 환급 등 절차를 정하였고

– 부담금의 결정·부과, 납부의 고지, 물납의 인정 및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행규칙(안)에서는 공제금액의 산정 및 각종 행정절차와 관련된 서식 등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였다.

■ 건설교통부는 동 하위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4.21~5.12)가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률시행일인 7월 12일까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는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 '법령정보' 참조

• 문의 : 도시정책팀 윤영중 사무관 02–2110–8851, yoon8000@moct.go.kr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466호)

■ **제안이유**

「건축법」의 개정(법률 제7696호, 2005. 11. 8. 공포, 2006. 5. 9. 시행)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조정하고, 동 분류체계에 맞도록 용도변경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새로 도입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절차 및 대지 안의 공지(空地)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절차(제10조 신설)

(1) 법률에서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하려는 경우 관계 법령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운영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허가권자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고, 관계 공무원은 관계 법령에 관한 의견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은 회의 개최일부터 5일 안에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건축허가의 신청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 지를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하게 건축 관련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용도변경을 위한 용도시설군의 재분류(제14조 및 별표 1)

(1) 상호 연계성이 부족한 용도가 동일한 군(群)으로 분류되어 건축기준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2) 법률에서 용도의 유사성 및 하중정도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22개에서 28개로 분류한 것을 기초로 하여, 용도시설군도 영업 및 판매시설군 등 6개군에서 자동차관련 시설군 등 9개군으로 분류하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를 재분류함.

(3) 건축물 용도구분에 부합하는 분류체계가 마련되어 건축물의 기능에 맞는 구조안전의 확보 등 합리적인 건축기준의 적용이 가능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다. 대지 안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및 별표 2 신설)

(1) 법률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 ·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다세대주택은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아파트는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각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정함.

(3) 최소한의 공지확보로 사생활의 보호와 주민 사이의 분쟁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대지 안의 통풍이 원활하게 되어 개방감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_____「건축법」_____ _____ _____.
제2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_____ _____.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4.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4. _____ _____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_____.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제3조(대지의 범위) ①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대지의 범위) ①「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_____ _____.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 ·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0호 _____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_____ _____.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1. 내력벽을 증설 · 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 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 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증설 · 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 해체하거나 수선 · 변경하는 것
6. 주계단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 해체하거나 수선 · 변경하는 것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 해체하거나 수선 · 변경하는 것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호 외의 부분_____ _____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_____.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5조(건축위원회) ① · ② (생 략)	제5조(건축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분야별로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1.~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건축방재분야
〈신 설〉	5. 건축에너지분야
〈신 설〉	6. 건축물 설치광고 및 경관분야
〈신 설〉	7. 조경분야
4. (생 략)	8. (현행 제4호와 같음)
④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 · 광역시 · 도 · 시 · 군 및	④법 제4조에 따라_____ _____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_____.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3. _____.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 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 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 ·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 임명 · 위촉 ·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 · 운영과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⑦_____.
1. 위원의 자격 · 임명 및 위촉 기준	1. 위원의 자격 · 임명 · 위촉 및 임기 기준
가.~다. (생 략)	가.~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신 설〉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할 것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제6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특별시 · 광역시 · 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전통한옥 밀집지역등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2조제11호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4. _____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법 제36조에 따른 기준
〈신 설〉	4의2.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47조에 따른 기준
5.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등을 위하여 증축 · 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 법 제32조, 법 제36조, 법 제47조, 법 제48조, 법 제51조, 법 제53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5. _____20년 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_____ 법 제67조에 따른 기준
②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_____.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2의 경우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5호의 경우	2. _____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개축은 나목의 증축하는 부분과 기존건축물과의 접합부분 또는 그 접합부분의 인접부분에 한하여 할 것	〈삭 제〉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3(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 등) ①법 제5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및 수평으로 전체 또는 부분 통합을 할 수 있을 것 2. 구조체와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와 외부 마감재료는 분리할 수 있을 것 3.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에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하고, 마감재료 · 창호 등의 구성재는 교체할 수 있을 것 ②법 제5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120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강화한 경우에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8조(건축허가) ① (생 략)	제8조(건축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삭 제〉
1.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100미터 이내의 구역 또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미터 이내의 구역. 다만, 고속국도 · 철도 또는 일반국도로부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으로서 허가권자가 지정 · 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	
2.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정 · 공고한 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8조제4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삭 제〉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2. 「해군기지법」 제6조	
3.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	
4.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동법 제25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내지 제9조	
6.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7. 「도시공원법」 제8조 및 동법 제12조의2	
8. 「항공법」 제82조 및 동법 제93조	
9. 「학교보건법」 제6조	
10. 「산지관리법」 제8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4조 및 동법 제18조와 「산림법」 제62조, 동법 제70조 및 동법 제90조	
11.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제50조	
12. 「주차장법」 제19조 · 동법 제19조의2 및 동법 제19조의4	
1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14.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15. 「수도법」 제5조	
1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 및 동법 제18조	
17. 「문화재보호법」 제20조	
18.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	
⑤허가권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내에 의견을 송부하여야 한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9조(건축허가등의 신청)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	제9조(건축허가등의 신청) ①_____

현 행	개 정 안
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시설(이하 "방산시설"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_____ _____ _____.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관계 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법 제8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2. 「해군기지법」 제6조 3.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 4.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동법 제25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내지 제9조 6.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제38조 8. 「항공법」 제82조 및 동법 제93조 9. 「학교보건법」 제6조 10. 「산지관리법」 제8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4조 및 동법 제18조와 「산림법」 제62조, 동법 제70조 및 동법 제90조 11.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제50조 12. 「주차장법」 제19조, 동법 제19조의2 및 동법 제19조의4 1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14.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15. 「수도법」 제5조 1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 및 동법 제18조 17. 「문화재보호법」 제20조 18.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 1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동법 제12조 및 동법 제14조 20. 「농지법」 제34조 및 동법 제36조 21.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②허가권자는 법 제8조의2에 따른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협의회의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협의회의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은 협의회의 회의에서 관계 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⑤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의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는 그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2(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법 제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4.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에 따른 유가증권 5.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서 ②법 제8조의3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이라 함은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예치금을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 안전관리예치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11조(건축신고) ①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인 창고 3. 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하인 축사 4. 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하인 작물재배사	제11조(건축신고) 〈삭 제〉
②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_____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_____ _____.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_____ _____.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9조제1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변경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각각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는 규모안에서의 변경은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할 것	2. 법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____ _____ _____ _____ _____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용도변경)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용도변경신고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용도변경) 〈삭 제〉
②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4조제3항제1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제3호 내지 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4조제3항제3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14조제3항제4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14조제3항제5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6. 당해 용도로 변경하기 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증축 · 개축 또는 대수선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8.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면적의 증가없이 위치를 변경하는 용도변경인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14조제3항 각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 및 판매시설군 가. 위락시설 나. 판매 및 영업시설 다. 숙박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운동시설 다. 관광휴게시설 3. 산업시설군 가. 공장 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 자동차관련시설 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마. 창고시설 4. 교육 및 의료시설군 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나. 의료시설 5. 주거 및 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공공용시설 6. 기타 시설군 가.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라. 묘지관련시설	④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이라 함은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⑤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인 경우 2. 단독주택을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또는 업무시설을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⑤법 제14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관련 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 2. 산업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바. 묘지관련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현 행	개 정 안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법 제1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1층인 축사 또는 창고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 · 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 ·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⑦_____ 축사_____.
제15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15조(가설건축물) ①_____ 각 호_____.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공동주택 · 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5. _____판매시설 · 운수시설_____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⑤ (생 략)	②~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 · 법 제29조 내지 제33조 · 법 제35조 내지 제41조 · 법 제43조 · 법 제44조 · 법 제46조 내지 제49조 · 법 제51조 · 법 제53조 내지 제55조 · 법 제57조 · 법 제59조 · 법 제59조의2 · 법 제59조의3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_____ 법 제46조 내지 제50조 · 법 제51조 · 법 제53조 · 법 제55조_____.
⑦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존치기간만료 7일전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_____.
〈신 설〉	⑧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신 설〉	⑨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허가권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삭 제〉
②~④ (생 략)	②~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법 제18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공사의 시공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현 행	개 정 안
	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일반건설업으로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2. 「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자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제4호 및 제5호의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건축물의 구조안전·미관 및 기능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허가·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건축하여야 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제8조제2항 각호의 구역 또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4.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5. 제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건축물로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독주택"이라 함은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19조(공사감리)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되,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허가·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건축하여야 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제8조제2항 각 호의 구역 또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4.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5. 제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건축물로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②~⑨ (생 략)	제19조(공사감리) ①법 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과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와 제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⑨ (현행과 같음)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건축물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허가권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 대상 건축물 중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허가권자는 _____ _____ _____.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② (생 략)	제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2(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①법 제2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동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및 근거 2. 전산자료의 범위 및 내용 3.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방식 4. 전산자료의 보관방법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②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전산자료의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타당성·적합성 및 공익성 2.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기준에의 적합 여부 3.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방지 대책의 수립 여부 ④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자료 이용의 근거·목적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기재한 문서로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⑤법 제25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보호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신청한 전산자료는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따라 특정개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그 밖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아닐 것. 다만, 개인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 2. 제1호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외부로의 누출·분실·도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있을 것

현 행	개 정 안
	⑥건설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제25조의4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한 때에는 그 승인한 내용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3(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 · 감독의 대상 등) ①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 · 감독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산자료(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1. 건설교통부장관 : 연간 50만건 이상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2. 시 · 도지사 : 연간 10만건 이상 시 · 도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3. 시장 · 군수 · 구청장 : 연간 5만건 이상 시 · 군 · 구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②건설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지도 ·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도 · 감독의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자료 2. 전산자료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자료 ③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자의 인적사항, 조사일시 등을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의2(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①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시 · 군 · 구에 설치하는 민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22조의4(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①법 제25조의6에 따라 _____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건축물의 유지 · 관리)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건축물 ·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적합하게 유지 · 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 · 관리지침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건축물의 유지 · 관리) ①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 대지 및 건축설비가 법 제26조제1항의 각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지 · 관리되는 건축물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이하 "건축지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점검표에 따라 유지 · 관리의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지 · 관리의 실태를 점검받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점검하는 건축지도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이 점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유지 · 관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에 속하는 건축물은 제3호에 따른 구조안전 항목의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1. 대지 : 법 제30조, 법 제32조, 법 제33조, 법 제37조에 적합한지 여부 2. 높이 및 형태 : 법 제47조, 법 제48조, 법 제50조, 법 제51조, 법 제53조, 법 제67조에 적합한지 여부 3. 구조안전 : 법 제38조에 적합한지 여부 4. 화재안전 : 법 제39조 내지 제41조, 법 제43조 및 법 제44조에 적합한지 여부 5. 건축설비 : 법 제55조 및 법 제57조에 적합한지 여부 ④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6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건축지도원)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시 · 군 · 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건축설비 및 피난시설등이 법령등에 적합하게 유지 · 관리되고 있는지의 확인 · 지도 및 단속 3.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제24조(건축지도원) ①건축지도원 _____ 갖춘 자 중에서 _____. ②건축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 건축설비 등 _____ 3. (현행과 같음) ③건축지도원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5조(건축물대장)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 략) 3. 기타 기재내용의 변경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25조(건축물대장) _____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_____.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기재내용의 변경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생 략) ②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난층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 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학원 · 독서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원 · 아동관련시설 · 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5. (생 략)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_____ 직통계단 _____.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 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_____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 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을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 시설 ·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_____ 3.~5. (현행과 같음)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 ② (생 략) ③제1항의 경우에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 · 소매시장 및 상점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중 1개소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 · 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판매시설 _____ 그 중 1개소 이상 _____. ⑤ _____ 판매시설, 운수시설 _____ 수련시설 중 _____

현 행	개 정 안
에는 그 넘는 매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한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_____.
제38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_____.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종교시설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제39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9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①법 제39조제1항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_____그 건축물_____.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종교시설
2.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 · 소매시장 및 상점	2. 판매시설
3.~6. (생 략)	3.~6. (현행과 같음)
7.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7.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옥상광장등의 설치) ① (생 략)	제40조(옥상광장등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5층이상의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 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 · 소매시장 및 상점,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도에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5층 이상의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 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_____.
③층수가 11층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옥상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_____.
제41조(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 광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41조(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_____.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은 유효너비 3미터 이상	2. _____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_____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 · 벽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샷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_____자동방화셔터_____.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_____.

현 행	개 정 안
1. 문화 및 집회시설(동 · 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운동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1. 문화 및 집회시설(동 · 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_____
2.~6. (생 략)	2.~6. (현행과 같음)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에 쓰이는 건축물	7. _____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에 한한다)_____
③~⑤ (생 략)	③~⑤ (현행과 같음)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한다) 또는 공동주택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에 한한다)은 같은 건축물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_____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한다)_____. _____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_____.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한다)과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에 한한다)은 같은 건축물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②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소매시장은 같은 건축물 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제48조(계단 및 복도의 설치)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48조(계단 · 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법 제39조제2항에 따라_____교육연구시설 중_____.
②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 · 아동관련시설 · 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거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_____.
제53조(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설치)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계벽 및 간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3조(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설치)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_____.
1.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세대간 경계벽(발코니부분을 제외한다)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세대간 경계벽(제2조제15호 후단에 따라 거실 · 침실 등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부분을 제외한다)
2. 공동주택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간의 간막이벽	2. _____교육연구시설 중_____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층부분에 한한다)의 주요구조부는 이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_____.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 식물원을 제외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 식물원을 제외

현 행	개 정 안
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3.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 및 자연권수련시설, 운동시설중 체육관 및 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것을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묘지관련시설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___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묘지관련시설 중 ___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6. 3층 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공용시설중 발전소(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묘지관련시설(화장장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6. ___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제61조(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___
1.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또는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___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___
2.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공동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학원·독서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원·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의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___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업무시설 중 ___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공공용시설중 발전소·방송국 및 촬영소로 사용되는 건축물	3. ___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촬영소 또는 발전시설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초등학교에 한한다)·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중 주점영업 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6.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에 한한다),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 중 ___
〈신 설〉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0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36조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생 략)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현행과 같음)
②건축주는 제1항 각호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서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___
④~⑥ (생 략)	④~⑥ (현행과 같음)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② ___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각 부분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사이에 2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___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신 설〉	나. 가목에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측 방향(마주보는 2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에 한한다)의 건축물의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측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나.·다. (생 략)	다.·라. (현행 나목 및 다목과 같음)
〈신 설〉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도시공원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을 제외한다)·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	⑤ ___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권공원으로서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원을 제외한다. 다만,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생활권공원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하거나 공원의 일조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을 포함한다) ___
제86조의2(재해관리구역) ①법 제54조제1항 전단에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상습 침수 · 홍수 · 산사태 · 해일 · 토사 또는 제방붕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5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제1종재해관리구역 · 제2종재해관리구역 및 제3종재해관리구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제1종재해관리구역 : 산사태 · 해일 · 홍수 · 토사 또는 제방붕괴의 우려가 극히 큰 지역 2. 제2종재해관리구역 : 산사태 · 해일 · 홍수 · 토사 또는 제방붕괴의 우려가 있는 지역 3. 제3종재해관리구역 : 상습침수지역 등 홍수로 인한 건축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③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재해관리구역 · 제2종재해관리구역 · 제3종재해관리구역을 지정 · 공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해관리구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의 내용을 정하여 이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④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관리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의 건축조례로 법 제47조 · 법 제48조 · 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을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40 이내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87조(건축설비설치의 원칙) ①~③ (생 략) ④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의 용도에 공동시청안테나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기준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7조(건축설비설치의 원칙) ①~③ (현행과 같음) ④_____판매시설, 운수시설_____.
제90조(비상용승강기의 설치) ①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 4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대수이상의 비상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4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에는 1대이상 2. 높이 4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매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가산한 대수이상 ②·③ (생 략)	제90조(비상용승강기의 설치) ①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_____.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매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가산한 대수 이상 ②·③ (현행과 같음)
제91조(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①법 제5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 3. (생 략) 〈신 설〉 4. 판매 및 영업시설 〈신 설〉 5. (생 략) 6.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7. 운동시설중 수영장 8. · 9. (생 략) 10. 위락시설중 특수목욕장 ②~⑥ (생 략)	제91조(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①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_____. 1. (현행과 같음)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 3. (현행과 같음) 3의2. 종교시설 4. 판매시설 4의2. 운수시설 5. (현행과 같음) 6.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7. 운동시설 중 수영장 8. · 9. (현행과 같음) 〈삭 제〉 ②~⑥ (현행과 같음)
제11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숙박시설 2. (생 략) ②·③ (생 략) ④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48조 및 법 제51조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1.~3. (생 략) ⑤ (생 략) 〈신 설〉	제11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_____. 1. _____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운수시설_____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8조 및 법 제51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26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 · 관리의무사항 중 조경의무면적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5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53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건축물란의 제1호, 제4호 내지 제9호 및 제13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5조의2(기존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 (생 략)	제115조의3(기존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_____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_____. 1.~3. (현행과 같음)
제117조(권한의 위임) ③ (생 략) 〈신 설〉	제117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제119조(면적 · 높이 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 · 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생 략) 2.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	제119조(면적 · 높이 등의 산정방법) ①_____. 1. (현행과 같음) 2. _____, _____

현 행	개 정 안
원으로 이용하는 주택과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에 대한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정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함에 따라 법 제47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3. _____ _____ _____, ___ _____ _____.
가.~마. (생 략)	가.~마. (현행과 같음)
바.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 어린이놀이터 · 조경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_____기계실 · 전기실 _____ _____.
〈신 설〉	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함에 따라 법 제48조에 따른 용적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10. (생 략)	4.~10.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9조의2(분쟁조정) ①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19조의2(분쟁조정) ①법 제76조의2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한 조정등의 신청서를 법 제76조의2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_____법 제76조의9제2항에 따라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③법 제76조의2 내지 법 제76조의8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1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76조의2 내지 법 제76조의18에 따른 분쟁의 조정등을 함에 있어_____ _____ 제174조 내지 제197조_____.
④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 · 진단 ·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④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16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등을_____ _____ 그 분쟁에 대한 조정등_____.
⑤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는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⑤법 제76조의16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_____ _____ _____.
〈신 설〉	제119조의3(선정대표자) ①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등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서면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9조의4(절차의 비공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등의 절차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12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8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 · 관리 의무사항 중 조경의무면적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	
4.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	
5.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건축물란의 제1호 · 제4호 내지 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제120조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이의절차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별표 2]

대지 안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 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	• 아파트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 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아파트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512호)

■ 개정이유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7696호, 2005. 11. 8. 공포, 2006. 5. 9. 시행)됨에 따라 도입된 사전결정제도 및 용도변경허가제도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구체화하고, 그 밖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추가 제출서류 및 허가권자의 검사기간(제16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함.

나. 건축허가표지판의 설치(제18조 신설)

(1) 법률에서 공사시공자가 건축허가 등이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 건축공사 현장에 설치하도록 한 건축허가표지판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 · 용도 · 설계자 · 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 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도록 함.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중앙건축위원회) ①법 제4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중앙건축위원회) ①_____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_____.
1. ·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영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_____.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건축위원회_____.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중앙건축위원회_____.
⑦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중앙건축위원회_____관계 전문가를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_____.
⑨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_____범위 안_____.
제2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중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에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 중_____.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조의3(지방건축위원회에의 제출도서) 영 제5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심의시에는 간략설계도서(배치도 · 평면도 · 입면도 · 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면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3(지방건축위원회에의 제출도서)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가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건축주는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 · 평면도 · 입면도 · 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_____각 호의 어느 하나_____.
1. 종전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1.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 민법 · 제245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신 설〉	제4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결정신

현 행	개 정 안
	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의3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위하여 동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동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7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것에 한한다) 5. 별표 2 중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신 설〉	제5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①허가권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사전결정을 한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결정서를 사전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서에는 법 · 영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의 적합 여부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관계 법률의 허가 · 신고 또는 협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건축허가신청 등) ①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제6조(건축허가신청 등) ①법 제8조제1항 · 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_____ _____서류.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법 제8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 · 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
〈신 설〉	1의2.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법 제7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받은 경우에 한한다)
2. 별표 2의 기본설계도서(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한다)	2. 별표 2의 설계도서(법 제7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영 제10조의2

현 행	개 정 안
	제1항제5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서"라 함은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제10조(건축허가수수료)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별표 4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제1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법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4조 · 제15조 및 법 제72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_____ _____. _____ _____건축 또는 대수선_____ _____.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건축관계자변경신고) ①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 ·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_____ _____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_____ _____ _____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_____.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건축신고) ①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2의 기본설계도서(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로 갈음한다. 2. 법 제8조제6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용도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2조(건축신고) ①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2 중 배치도 및 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 · 배치도 · 평면도 · 입면도 · 단면도 나.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다. 법 제7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2. 법 제8조제6항 각 호에 따른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용도변경)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용도변경)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②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8조의2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8조제2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허가서 또는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3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배치도 · 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제13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_____
	〈단서 삭제〉
②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_____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때_____
④~⑥(생 략)	④~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착공신고 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4조(착공신고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별표 2의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④ (생 략)	②~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제24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증축 · 개축 · 대수선의 착공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법 제18조제1항(법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되,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서에는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법 제18조제1항(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사용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_____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_____.
제17조(임시사용승인신청등) ① (생 략)	제17조(임시사용승인신청등)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30조 내지 법 제33조 · 법 제35조 내지 법 제41조 · 법 제43조 · 법 제44조 · 법 제46조 내지 법 제49조 · 법 제51조 · 법 제53조 내지 법 제55조 · 법 제57조 · 법 제59조 · 법 제59조의2 · 법 제59조의3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영 제17조제3항에 따라_____법 제50조_____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설계도서의 작성등) 영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영 제15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신 설〉	제18조(건축허가표지판)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 · 용도 · 설계자 · 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 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현장조사 · 검사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 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현장조사 · 검사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 · 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건축물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_____.
제22조(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생 략)	제22조(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영 제22조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관계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 이 경우 구비서류는 현황도면에 한한다. 2.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신 설〉	제22조의2(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영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건축행정전산

현 행	개 정 안
	자료 이용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건축물유지 · 관리점검표) 영 제23조제2항 전단에 따른 건축물유지 · 관리점검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24조(건축물 철거 · 멸실의 신고) ① · ② (생 략) ③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축물철거 · 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천장재 · 단열재 · 지붕재 등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지방 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 · 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건축물 철거 · 멸실의 신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_____ 제1항에 따라 _____ _____ _____ _____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른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위임받은 시 · 도지사 _____ _____ _____ _____.
〈신 설〉	④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철거 · 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건축물의 철거 · 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 · 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 설〉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115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분쟁조정의 신청) ①영 제1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 날인한 분쟁조정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4.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5. · 6. (생 략) ②제1항의 경우에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사본을 분쟁조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43조의2(분쟁조정의 신청) ①영 제119조의2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 날인한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4. _____조정등_____ 5. · 6. (현행과 같음) ②_____ _____분쟁조정등신청서 _____.
〈신 설〉	제43조의3(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 운영 등) ①법 제76조의2에 따른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중앙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중앙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⑤중앙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현 행	개 정 안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신 설〉	제43조의4(비용부담) 법 제76조의16제3항에 따라 조정등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 · 진단 ·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 ·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 · 속기록 · 참고인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가.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건설교통부 소속 직원이 중앙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나.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건설교통부 소속 직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다. 우편료 및 전신료
제44조(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영 제1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영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4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2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뒤 쪽)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수 수 료	없 음	처리기간	일
근 거 법 규	「건축법」 제7조		
유의사항	○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건축법」 제7조제8항).		
※ 작성방법			

④ 내지 ⑥의 설계자란은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건축물의 규모 등이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⑫ 및 ⑬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합니다.

1. 건축물의 설비 · 대피 및 위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2. 사무 · 작업 · 집회 · 물품저장 · 주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3. 구내식당 · 구내매점 ·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4.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⑮"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지상 1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며 처마 · 차양 · 부연 등이 1미터 이상 돌출된 경우에는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합니다.

⑯"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합니다.

⑰"건폐율"은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으로 합니다.

⑱"용적률"은 연면적(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주차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제외) ÷ 대지면적 × 100(%)로 합니다.

㉑"구조"는 목조 · 조적조 ·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기타로 기재하되, 벽체와 지붕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㉒"주택형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한하여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세대수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세대(가구)수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사전결정신청서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설 계 자	④성 명	서명(인)	⑤사 무 소 명	
	⑥주 소	(전화번호)		
대 지 조 건	⑦위 치			
	⑧지 역		⑨지 구	
	⑩지 목		⑪면 적	㎡
용 도	⑫주 용 도		⑬부 속 용 도	
	⑭용 도 별 면적	용도명 :	㎡	
		용도명 :	㎡	
		용도명 :	㎡	
규 모	⑮건축면적	㎡	⑯연 면 적 ㎡	⑰지하면적 ㎡
	⑱건 폐 율	%	⑲용 적 률	%
	⑳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건축물최고높이( )m		
㉑구 조				
㉒주차장 규모		( )㎡, ( )대		
㉓주택형태			㉔세 대 수	

㉕일괄처리 내용(해당란에 V표를 합니다)

○ 건축위원회 심의	유( ) 무( )
○ 교통영향평가	유( ) 무( )
○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유( ) 무( )
○ 개발행위허가	유( ) 무( )
○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유( ) 무( )
○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유( ) 무( )
○ 하천점용허가	유( ) 무( )

「건축법」 제7조제1항 ·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건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위하여 동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동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4. 법 제7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것에 한합니다)
5. 별표 2 중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호2서식]

사전결정신청서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연락처)		
결 정 내 용				
④신청내용에 대한 건축법령 등 검토결과	적합 부적합			
	부적합 사항 · · · · ·			
⑤건축위원회 심의	적합 □ 부적합 □ (사유 :)			
⑥교통영향평가	적합 □ 부적합 □ (사유 :)			
⑦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적합 □ 부적합 □ (사유 :)			
⑧개발행위허가	적합 □ 부적합 □ (사유 :)			
⑨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적합 □ 부적합 □ (사유 :)			
⑩농지전용허가 · 신고 및 협의	적합 □ 부적합 □ (사유 :)			
⑪하천점용허가	적합 □ 부적합 □ (사유 :)			
⑫그 밖의 사항				

결정 제 호

「건축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결정 되었음을 통지하며, 이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유의사항	○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건축법」 제7조제8항).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호의3서식]

(5면 중 제2면)

「건축법」 제8조 · 제10조 · 제14조 ·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 축 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건축법」 제8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 · 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합니다. 2.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7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3.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제7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합니다. 4. 「건축법」 제8조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허가사항변경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 · 후의 설계도서
용도변경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 · 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 · 방화 · 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허 가 안 내	

제출하는 곳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 · 구	처리부서	건 축 허 가 부 서
수 수 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리기간	특별시 · 광역시 30~90일 시 · 군 · 구 2~20일(도지사 사전승인대상 : 90일)

근 거 법 규	
「건축법」 제8조제1항	•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하되 공장을 제외합니다)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0조제1항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행위
「건축법」 제14조제2항	• 용도변경(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15조제1항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행위

[별지 제6호서식]

(6면 중 제2면)

「건축법」 제9조 · 제10조제1항 ·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 축 주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귀하

구 비 서 류	※ 중복되는 서류는 1부만 제출하며,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합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 및 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에 한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 · 배치도 · 평면도 · 입면도 · 단면도 나. 「건축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다. 「건축법」, 제7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2. 「건축법」, 제8조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용도변경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 · 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 · 방화 · 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신고사항변경	없음
대 수 선	없음
신 고 안 내	

제출하는 곳	시 · 군 · 구	처리부서	건 축 허 가 부 서
수 수 료	없음	처리기간	3일

근 거 법 규	
「건축법」 제9조제1항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 개축 또는 재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합니다. •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0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건축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 규모가 주위환경 ·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동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합니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 농업 ·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 · 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 · 공고한 구역을 제외합니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 작물재배사
「건축법」, 제10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4조	용도변경
유 의 사 항	
「건축법」 제69조의2 · 제80조	신고없이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건축법」 제69조의2 · 제78조	도시지역 안에서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건축법」 제69조의2 · 제79조	신고사항 변경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밖에서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호의3서식]

(5면 중 제5면)

유 의 사 항	
「건축법」 제69조의2 · 제78조 및 제79조	1. 도시지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2. 도시지역 밖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허가받은 사항을 허가 없이 변경하는 경우, 허가받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작 성 방 법	

1. ①② : 다수인인 경우에는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③ :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기재하며, 관련 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기재합니다.
3. ④ : 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예 : 쌍둥이빌딩, ○○아파트)
4.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기재합니다. ("주상복합" 등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5.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 대표형식을 기재그 외의 형식도 제출)하며, 오수정화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기재합니다.
6.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기재합니다.(예 : 101동, A동등)
7. ⑧~⑬

작성례 1) 지하 1층에 바닥면적 50㎡의 단독주택(보일러실)과 5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 조	용 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 조	용 도	면적
			–1	신 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보일러실)	50
			–1	신 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다가구)	50
			1	신 축	조적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작성례 2) 기존건축물(5층)의 각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업무시설(사무소)의 1층에 100㎡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집화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150㎡를 증축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 조	용 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 조	용 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100	1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0
		15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	150

작성례 3) 3층이면서 연면적 400㎡인 기존건축물의 1층 업무시설(사무소 : 150㎡)을 조적조에서 철근콘크리트조로 대수선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 조	용 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 조	용 도	면적
조적조	업무시설	150	1	대 수 선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150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호서식]

(6면 중 제5면)

Ⅳ. 대 수 선 개 요	
대 수 선 내 용	※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해당 항목에 V를 표시하시고 증설 · 해체 · 수선 또는 변경 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내 력 벽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지 붕 틀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개] □ 기 둥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개] □ 보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개] □ 방 화 벽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방화구획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주 계 단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피난계단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특별피난계단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 · 담장의 변경 □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의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의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작성방법	

1. ①② : 다수인인 경우에는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③ :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기재하며, 관련 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기재합니다.
3. ④ : 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예 : 쌍둥이빌딩, ○○아파트)
4.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기재합니다.("주상복합" 등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5.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 대표형식을 기재그 외의 형식도 제출)하며, 오수정화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기재합니다.
6.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기재합니다.(예 : 101동, A동등)
7. ⑧~⑬

작성례 2) 지하 1층에 바닥면적 50㎡의 단독주택(보일러실)과 5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 조	용 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 조	용 도	면적
			–1	신 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보일러실)	50
			–1	신 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다가구)	50
			1	신 축	조적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작성례 2) 기존건축물(5층)의 각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1층에 판매시설(집화점) 80㎡를 조적조로 증축하고, 철근콘크리트조인 숙박시설(여관)의 5층중 150㎡를 업무시설(사무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 조	용 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 조	용 도	면적
			1	증 축	조적조	판매시설	80
철근콘크리트구조	숙박시설	150	5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150

작성례 3) 2층이면서 연면적 150㎡인 기존건축물의 1층 업무시설(사무소 : 100㎡)을 조적조에서 철근콘크리트조로 대수선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 조	용 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 조	용 도	면적
조적조	업무시설	100	1	대 수 선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100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4호의2서식]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

신청인(기관)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주 소	(연락처 :)		
이용목적		이용기관	
법적근거		자료를 제공받는 방식	
신청내용 · 항목			
자료요구 범 위	국가( ), 특별시 · 광역시 · 도( ), 시 · 군 · 구( )		
안전관리 대 책			

「건축법」 제25조의4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결과 1부

※ 이용목적란, 신청내용 · 항목란 및 안전관리대책란의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4호의3서식]

건축물유지 · 관리점검표

건축물위치		지번	
건축주			

「건축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축물의 유지 ·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지도원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점검항목	「건축법」	유지 · 관리 실태		특이사항
대지	제30조	대지의 안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32조	대지안의 조경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33조	대지 · 도로 관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37조	건축선 제한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높이 및 형태	제47조	건폐율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48조	용적률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50조	대지안의 공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51조	높이제한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53조	일조제한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67조	공개공지 확보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구조안전	제38조	구조내력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화재안전	제39조	계단 · 복도 · 출구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옥상광장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방화구획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경계벽 · 간막이벽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타 피난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40조	내화구조 및 방화벽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41조	방화지구내 건축물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43조	내부마감재료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44조	지하층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축설비	제55조	난방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연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관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피뢰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57조	승강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종합의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APEC Architect Project
제2차 중앙이사회 참가 보고서

■ **서언**

제2차 APEC Architect Project 중앙이사회가 2006년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의 CAM-SAM(건축사회관)에서 개최됐다.

참가국은 이사국 12개국과 이번에 이사국으로 신청한 싱가포르와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으로 호주 3명, 캐나다 2명, 중국 6명, 홍콩 9명, 일본 6명, 한국 6명, 말레이시아 2명, 멕시코 10명, 뉴질랜드 4명, 필리핀 4명, 싱가포르 3명, 대만(사무국) 15명, 태국 5명, 미국 7명 등 82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아카시아 차기회장이며 본 협회의 부회장인 이근창 위원, 본 협회 국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지덕(APEC Architect 위원회 부위원장), 대한건축학회 이사 이상림 위원, 새건협 부회장 이필훈 위원, 건교부 건축팀 문석준 사무관과 그리고 필자가 간사의 자격으로 참석하여 총 6명이 참석했다.

■ **주요 안건**

이번 중앙이사회의 주요 안건은 크게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제1회 중앙이사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확인과 신임 이사국의 승인. 둘째, 지난 1년 동안의 각 이사국의 경과보고. 셋째, 중앙이사회 사무국 운영경비에 대한 보고 및 분담 방법에 대한 협의. 넷째, APEC Architect 등록증과 ID 카드 제작에 관한 건. 다섯째, 각 국의 APEC Architect에 대한 상호인증의 조건 검토 내용. 여섯째, 차기 사무국과 중앙이사회 개최국의 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협조적인 이사국에 대한 제제내용과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의 검토 등이다.

■ **회의내용 요약**

- **신입 이사국의 승인** : 우선 중앙이사회 이전에 이사국으로 신청한 나라는 싱가포르와 한국 2개국인데, 싱가포르의 경우엔 3년 전에 이미 제출한 내용들에 의해 합의가 쉽게 이루어져 정회원국의 승인을 득한 반면, 한국은 자문역으로 있는 호주의 Helen Fisher가 뒤늦게 요청한 추가사항에 대한 답과 수정한 survey application form을 제출한 후 일본 대표의 적극적인 후원에 의해 이사국으로서 승인을 득했다.
- **각 국의 심사위원회의 경과보고** : 지난 제 1회 중앙이사회 이후의 각 국 심사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용을 보면 우선 아직 웹 사이트 구성이 안 된 이사국이 중국, 멕시코, 싱가포르, 태국 등 4개국이며, 현재까지 각 국의 APEC Architect의 등록부에 등록된 건축사 수는 일본이 가장 많은 324명이며, 다음이 중국으로 72명, 홍콩이 21명, 미국이 13명, 말레이시아가 6명, 캐나다 3명, 호주 2명 등으로 보고되었다.

  한국은 그동안 APEC Architect 한국위원회 설립 후 네 차례의 위원회 회의를 하여 준비를 해온 결과 6월1일부터 APEC Architect의 등록신청을 개시하도록 공고되었으며, 세밀한 심사과정을 거쳐 APEC Architect 등록을 위한 서류심사를 거쳐 돌아오는 9월17일 APEC Architect Project의 1주기를 맞아 한국 APEC Architect의 등록개시를 할 예정임을 보고하였다.
- **중앙이사회 사무국의 운영경비 분담** : 중앙이사회의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분담에 대해 논의가 되었지만 몇 가지 선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 미국,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필리핀 4개국이 별도로 협의하여 기준을 만든 후 분담방안을 10월까지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도 이 기준이 통과되면 일부의 운영비를 이사국으로서 분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APEC Architect 등록증과 ID 카드의 제작** : APEC Architect의 등록증과 ID 카드의 제작에

대한 협의에서는 일본은 이미 300장이 넘는 등록증을 기존의 등록증 형태로 발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변경을 원하지 않았지만 호주에서 최종적으로 재검토해서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 **상호 인증 체계** : APEC Architect가 다른 이사국에서 활동을 원할 때 해당국에서 APEC Architect를 위한 상호인증 체계에 대한 논의에서는 첫째, 특정의 산정방법(경력 및 작품심사에 거친 인터뷰 등의 방법)에 의한 인증. 둘째, 포괄적인 등록시험에 의한 자격부여, 그리고 셋째로 해당국에서의 거주기간 및 경력기간에 의한 인증 등으로 나누어 검토했다. 논의 중 중국과 한국 등의 이사국이 상호인증의 조건으로 국내 건축사와의 협업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안을 내세웠으나 결국 이는 상호인증의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 측으로 밀려 제외되었다.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이사국이 첫째의 특정의 산정방법에 의한 상호인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으며, 일부 이사국은 아직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곧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공고하는 것에 합의했다.
- **APEC Architect Project의 홍보** : 각 국에서의 등록과 증서에 관련된 결정사항들은 각 국의 건축위원회의 웹 사이트에 표준양식으로 기록해야하며 중앙이사회의 웹사이트에 상호인증체계로서 요약될 수 있도록 합의 했다. 또한 각 국의 APEC 심사위원회는 각 국의 건축단체가 APEC Architect에 대해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자료를 회람할 수 있도록 요구하도록 하고, 중앙이사회의 사무국은 APEC Architect Project의 활동사항과 이점을 UIA와 APEC의 HRDWG(인력개발 실무그룹)에 통보하도록 합의했다.
- **비협조 이사국에 대한 제재방침** : 이번 중앙이사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논란거리는 비협조적인 이사국에 대한 제재방법에 대한 논의였다. 미국과 호주 등의 나라에서 제안한 제재내용을 보면 주어진 시간 안에 웹 사이트를 만들지 못하거나 요구된 내용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일시적으로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더 심한 경우 교육조건 등의 변화가 APEC Architect의 자격조건에 심각하게 미달될 경우 이사국의 자격을 박탈하고, 조건이 수용될 수 있도록 준비되었을 경우에 한해 다시 이사국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의제를 논의 중 태국의 대표단은 안건에 없었던 의제임을 주지시키고 논의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의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회의장을 떠나는 해프닝도 있었다.
- **차기 사무국과 중앙이사회 개최국 선정** : 차기 사무국에 대한 지정은 자원하는 나라가 없어서 모든 이사국이 돌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한국도 이런 원칙에 의해 사무국의 역할을 맡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차기 사무국은 멕시코에서 맡기로 결정했다. 또한 2년 뒤의 제3차 중앙이사회도 미주가 아닌 다른 대륙에서 개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다른 대륙에서의 자원국이 없어 캐나다 벤쿠버에서 2008년 8월중에 하기로 결정했다.

■ **끝맺기**

이번 회의의 최대 성과는 우리나라가 늦게 참여하기 시작했지만 단 제2차의 중앙이사회에서 이사국으로 승인을 득하고, 국제상호인증의 첫 무대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 입지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중앙이사회에서 받은 느낌은 APEC Architect Project는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 영어권이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 나가고 있고, 이들 나라의 시장개척을 위한 상호인증의 의지가 강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는 현재 세계 각 국과의 FTA 협상에서 미국이 힘을 내세워 주도권을 잡고 이끌고 나가고 있는 양상과 비슷하게 느껴진다.

또한,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건축사 관리주체인 정부기관이나 등록원의 회장단 또는 관리자들과 건축사 관련 협회의 회장단이 참여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건교부가 우리 협회에 위임하여 구성한 APEC Architect Project 한국위원회가 주도하고 있어 논의 참여가 제한적인 것도 한계로 느낄 수 있었다. 이미 상호인증의 체계를 가닥잡고 미국 등의 이사국의 압력으로 이 체계에 비협조적인 이사국은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던지 아니면 제외되던지 하는 양단에 서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한국은 이미 WTO에 의해 건축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개방되어 있고, 이미 관공서나 공공기관의 프로젝트에는 한국건축사와의 겸업 조건이면 아무런 제약 없이 외국건축사의 국내에서의 실무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더구나 현재 우리의 건축시장은 극히 제한적이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3세계로의 시장진출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강대국과의 시장 경쟁에서 국제적인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며, 가능한 경쟁 기반 구축은 이런 국제기구에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참여하여 우리 건축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많은 APEC Architect를 배출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재고 할 수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앞으로의 UIA의 상호인증 논의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거나 최소한 논의의 가능성을 남겨 놓을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해줄 것이다.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세계 건축계에서의 상호인증 논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마련하고, 제3세계로 시장을 확보해 나아가고 해외에서 밀려들어올 수 있는 선진국의 건축사와 경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APEC Architect Project에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우수한 한국 APEC Architect를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에 건설교통부의 주도적인 노력과 건축 관련 단체들의 단합된 노력들을 기대해 본다. (2006년 5월31일)

(글 : 신춘규 / 우리협회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APEC Architect 한국위원회 간사)

2006년 건축허가 현황(4월)

■ **용도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4월)			누계 (4월)		
		2005년	2006년	증가율	2005년	2006년	증가율
계	동 수	12,279	12,372	0.8%	38,964	46,527	19.4%
	연면적	10,070,883	9,247,211	−8.2%	33,834,441	36,095,047	6.7%
주거용	동 수	3,816	3,485	−8.7%	10,935	13,494	23.4%
	연면적	4,130,842	3,517,591	−14.8%	14,077,829	15,408,170	9.4%
상업용	동 수	3,776	3,364	−10.9%	11,806	13,026	10.3%
	연면적	3,009,388	2,217,288	−26.3%	8,358,119	7,518,039	−10.1%
공업용	동 수	1,721	1,898	10.3%	6,199	7,348	18.5%
	연면적	1,055,025	1,025,442	−2.8%	4,052,682	4,934,544	21.8%
문교및 사회용	동 수	847	858	1.3%	2,948	3,609	22.4%
	연면적	848,192	789,788	−6.9%	3,128,396	3,194,351	2.1%
기 타	동 수	2,119	2,767	30.6%	7,076	9,050	27.9%
	연면적	1,027,436	1,697,102	65.2%	4,217,415	5,039,943	19.5%

■ **구조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4월)			누계 (4월)		
		2005년	2006년	증가율	2005년	2006년	증가율
계	동 수	12,279	12,372	0.8%	38,964	46,527	19.4%
	연면적	10,070,883	9,247,211	−8.2%	33,834,441	36,095,047	6.7%
철 근 철골조	동 수	10,537	10,810	2.6%	34,083	41,371	21.4%
	연면적	9,926,483	9,129,036	−8.0%	33,414,966	35,641,348	6.7%
조적조	동 수	1,499	1,336	−10.9%	4,162	4,253	2.2%
	연면적	125,309	100,225	−20.0%	341,934	366,003	7.0%
목 조	동 수	243	226	−7.0%	716	903	26.1%
	연면적	19,091	17,950	−6.0%	77,334	87,696	13.4%
기 타	동 수	0	0	0.0%	3	0	0.0%
	연면적	0	0	0.0%	207	0	0.0%

■ **시도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4월)			누계 (4월)		
		2005년	2006년	증가율	2005년	2006년	증가율
계	동 수	12,279	12,372	0.8%	38,964	46,527	19.4%
	연면적	10,070,883	9,247,211	−8.2%	33,834,441	36,095,047	6.7%
수도권	동 수	3,563	3,424	−3.9%	11,938	14,039	17.6%
	연면적	3,786,566	3,823,652	1.0%	15,625,826	14,085,913	−9.9%
서 울	동 수	627	617	−1.6%	2,063	2,663	29.1%
	연면적	922,040	1,426,518	54.7%	3,908,646	3,506,840	−10.3%
인 천	동 수	364	331	−9.1%	1,185	1,160	−2.1%
	연면적	246,957	219,108	−11.3%	2,102,832	1,008,524	−52.0%
경 기	동 수	2,572	2,476	−3.7%	8,690	10,216	17.6%
	연면적	2,617,569	2,178,026	−16.8%	9,614,348	9,570,549	−0.5%
지 방	동 수	8,716	8,948	2.7%	27,026	32,488	20.2%
	연면적	6,284,317	5,423,559	−13.7%	18,208,615	22,009,134	20.9%
부 산	동 수	418	444	6.2%	1,427	1,850	29.6%
	연면적	325,585	322,857	−0.8%	1,459,978	2,986,601	104.6%
대 구	동 수	496	439	−11.5%	1,421	1,719	21.0%
	연면적	919,832	591,714	−35.7%	1,820,811	1,806,537	−0.8%
광 주	동 수	289	373	29.1%	1,027	1,550	50.9%
	연면적	241,504	275,406	14.0%	1,009,657	1,940,997	92.2%
대 전	동 수	344	284	−17.4%	940	1,134	20.6%
	연면적	495,166	195,783	−60.5%	970,820	820,108	−15.5%
울 산	동 수	344	341	−0.9%	1,113	1,273	14.4%
	연면적	233,923	121,568	−48.0%	548,522	768,782	40.2%
강 원	동 수	811	648	−20.1%	2,132	2,571	20.6%
	연면적	562,671	329,199	−41.5%	1,413,150	1,176,745	−16.7%
충 북	동 수	740	806	8.9%	2,294	2,754	20.1%
	연면적	685,294	510,724	−25.5%	1,838,851	2,088,361	13.6%
충 남	동 수	890	879	−1.2%	2,765	3,021	9.3%
	연면적	733,339	495,814	−32.4%	2,233,423	1,852,317	−17.1%
전 북	동 수	601	948	57.7%	2,012	2,857	42.0%
	연면적	171,654	380,165	121.5%	1,033,619	1,235,468	19.5%
전 남	동 수	801	1,021	27.5%	2,432	3,335	37.1%
	연면적	183,579	730,191	297.8%	769,173	1,718,718	123.5%
경 북	동 수	1,417	1,368	−3.5%	4,186	5,038	20.4%
	연면적	729,583	867,519	18.9%	2,120,452	2,498,241	17.8%
경 남	동 수	1,299	1,066	−17.9%	4,369	4,256	−2.6%
	연면적	926,673	510,576	−44.9%	2,751,450	2,797,910	1.7%
제 주	동 수	266	331	24.4%	908	1,130	24.4%
	연면적	75,514	92,043	21.9%	238,709	318,349	33.4%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06년 4월말

구분 / 건축사회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용역사무소		합계		비율(%)	
	1인		2인		3인이상						소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112	5,112	159	318	29	90					5,300	5,520	1,496	1,496	266	532	73	219	26	104	33	208							1,894	2,559	7	7	7,194	8,079	100.0%	100.0%
서울	1,173	1,173	44	88	13	40					1,230	1,301	864	864	176	352	40	120	18	72	19	124							1,117	1,532	6	6	2,347	2,833	33.2%	35.4%
부산	503	503	18	36	6	19					527	558	78	78	14	28	6	18	3	12	4	22							105	158			632	716	8.9%	9.1%
대구	412	412	24	48	7	22					443	482	49	49	22	44	7	21	1	4	2	10							81	128			524	610	7.3%	7.5%
인천	223	223	2	4	0	0					225	227	46	46	5	10	0	0	0	0	0	0							51	56			276	283	3.9%	3.5%
광주	218	218	2	4	0	0					220	222	33	33	7	14	2	6	1	4	3	17							46	74			266	296	3.5%	3.6%
대전	202	202	16	32	1	3					219	237	26	26	7	14	3	9	0	0	1	12							37	61			256	298	3.6%	3.7%
울산	165	165	6	12	1	3					172	180	15	15	2	4	2	6	0	0	0	0							19	25			191	205	2.6%	2.5%
경기	674	674	7	14	0	0					681	688	217	217	19	38	3	9	0	0	1	5							240	269			921	957	12.7%	12.1%
강원	159	159	3	6	0	0					162	165	22	22	3	6	0	0	0	0	1	5							26	33			188	198	2.5%	2.4%
충북	169	169	8	16	0	0					177	185	26	26	2	4	2	6	0	0	2	13							32	49			209	234	2.9%	2.9%
충남	158	158	4	8	0	0					162	166	34	34	1	2	2	6	2	8	0	0							39	50			201	216	2.7%	2.6%
전북	188	188	3	6	0	0					191	194	20	20	2	4	2	6	1	4	0	0							25	34			216	228	2.8%	2.6%
전남	129	129	0	0	0	0					129	129	8	8	0	0	2	6	0	0	0	0							10	14			139	143	1.9%	1.7%
경북	294	294	9	18	1	3					304	315	31	31	1	2	1	3	0	0	0	0							33	36	1	1	337	351	4.6%	4.2%
경남	345	345	13	26	0	0					358	371	20	20	5	10	1	3	0	0	0	0							26	33			384	404	5.2%	4.9%
제주	100	100	0	0	0	0					100	100	7	7	0	0	0	0	0	0	0	0							7	7			107	107	1.5%	1.4%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분 / 건축사회	회원				준회원
	건축사	2급	계	비율	
합계	8,081	10	8,091	100.0%	23
서울	2,832	3	2,835	35.4%	10
부산	721	1	723	9.1%	9
대구	609	0	609	7.5%	0
인천	282	0	282	3.5%	0
광주	297	0	297	3.6%	0
대전	296	1	297	3.7%	0
울산	205	0	205	2.5%	0
경기	962	2	964	12.1%	2
강원	198	0	198	2.4%	0
충북	236	0	236	2.9%	0
충남	214	3	217	2.6%	0
전북	226	0	226	2.6%	0
전남	141	0	141	1.7%	0
경북	350	0	350	4.2%	1
경남	405	0	405	4.9%	1
제주	107	0	107	1.4%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용역사무소	합계	비고
회원수	5,520	2,559	7	8,152	
비율	67.71%	32.19%	0.1%	100.0%	
사무소수	5,300	1,894	7	7,194	
비율	73.67%	26.23%	0.1%	100.0%	

Architectural Review
Architectural Record
a+u

ARCHITECTURAL REVIEW

2006년 4월호

이번호는 독일 특집으로 기획되었다. 얼핏 월드컵 시류를 따른 듯 보이는 기획의 의도는 생각보다 진지하고 무겁다. 외국의 '스타 건축사'에게 유독 관대해 보이는 독일 건축의 상황이 오히려 기술력이 바탕이 된 '독일이기 때문에' 실현가능한 이유들을 살펴보면서 독일의 자생적 건축의 가능성과 저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국 건축사에 의해 진행된 베를린 올림픽 주경기장 리노베이션과 자하 하디드와 프랭크 게리, 렌조 피아노와 카즈요 세지마 등과 같은 외국 건축사가 설계한 독일 내의 건축물들을 살펴보고 있다. 최근의 건축 상황을 개괄적으로 보여주는 피터 쿡의 글과 함부르크의 도시 상황을 다룬 레일라 도슨(Layla Dawson)의 글도 이를 위한 이해를 돕고 있다. 흥미롭게도 주최국이란 뜻과 건축주라는 의미로 동시에 독해될 수 있는 호스트(host)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독일을 '좋은 호스트(good host)'로 표현한 기획의 제목에서도 예민한 감각과 통찰력을 확인할 수 있다.

■ Olympic rebirth : 베를린 올림픽 주경기장 리노베이션/위치 : 독일 베를린/설계 : Von Gerkan, Marg & partner(GMP)

우리에게 손기정의 금메달과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익숙한 베를린 올림픽 주경기장의 역사는 1909년 Otto March가 당시 독일 제국의 빌헬름 황제의 요구에 따라 만든 경마장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경마장을 올림픽 주경기장으로 개조할 첫

Berlin Olympic Stadium Renovation

번째 계획은 1916년의 올림픽이 1차 대전으로 인해 취소가 되자 무산되었다. 이 계획이 다시 빛을 본 것은 나치 정권이 권력을 잡은 직후 Otto March의 아들 Werner March에 의해서였다. 히틀러는 이 주경기장이 스포츠와 정치적 선전 목적에 동시에 부합하기를 원했고 이에 따라 아들 March는 집회장소와 야외극장, 수영장, 독일 스포츠 포럼을 포함하는 복합적 시설을 만들었다. 2차 대전의 포화를 견디어 내고 이후 영국군 주둔 시 본부 건물로 사용되었을 때에도 별다른 피해 없이 유지되던 이 건물은 차츰 낡아가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비껴있게 되었다.

1998년 주경기장 리노베이션 공모전에서 1등으로 당선된 독일인 건축가 Von Gerkan(GMP)의 안은 근대적 스포츠 시설에 대한 요구와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에 대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한 시도이다.

주경기장 리노베이션은 콘크리트 구조의 보수와 관람석의 재배치 및 확장, 경기장 수평면의 2.65m 하강, 새로운 지붕, 내부 시설의 근대화, 100개의 귀빈석 라운지와 식당을 위한 독립적인 입구, 63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과 워밍업을 위한 120m 실내 트랙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지어지는 시설은 모두 지하에 두었다. GMP는 관심을 받지 못하던 낡은 경기장을 수용 능력을 7만 6천명으로 늘린 최첨단의 복합 스포츠시설로 변모시킨 것이다.

최대한 기존 건물이 가지는 가치를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건물에 사용된 각각의 석재들은 주요 구조보강 이후 다시 제 위치에 자리하게 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리노베이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붕시설은 외부에서 볼 때는 기존 매스의 비례감을 해치지 않도록 최대한 평평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역설적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계획되었다. 또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마라톤 트랙 출

구의 상부를 개방하여 지붕구조로 인한 폐쇄감을 완화시키고 시각적으로도 상당한 주목을 유도하고 있다.

올림픽 주경기장의 지붕구조는 평평하고 긴 스팬(68m)을 가지면서 동시에-구조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었던-닫힌 고리 형태의 구조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가장 도전적인 부분이다. 지붕구조는 반투광성 막으로 덮여 있는데, 야간에는 내부에 설치된 최첨단의 음향 및 조명시설로 환상적인 '불의 고리'를 보여줄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며, 이는 경기 전반에 걸쳐 극적인 효과를 배가 시킬 것이다.

2006년 6월 이 경기장에서 월드컵 결승전이 열린다. 올림픽 주경기장의 완전한 부활이 완성되는 것이다.

■ **Phaeno Science Center : 파에노 과학센터/독일 볼프스부르크/자하 하디드**

이 작품에서 방문객은 거대함과 수공예적 섬

Phaeno Science Center

세함이라는 이질적인 감각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자하 하디드는 컴퓨터 분석 기술과 건축사 특유의 형태적 관심을 결합시켜 형태를 만들어 내는 관습에 도전하고 있다. 하지만 논의가 형태적인 측면에 집중된다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건축사 본인이 소규모의 도시계획(mini urbanism)이라고 언급했듯이 이 건축물은 물성과 공간의 형성, 교묘한 형태의 전체적 통합을 통해 도시와 장소성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다.

이질적이고 낯선 형태에 대한 하디드의 관심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이 건축물에서는 매스를 들어 올려 독일고속철도 이체(ICE)와 연결시키고 도시의 주요 공적 영역인 포르쉐 거리(Porchestrasse)의 종결점과 건물 하부의 공공 공간을 고유의 방법으로 정의했다는 점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

파에노 과학센터는 필로티를 도입했음에도 실질적으로 지상층을 효과적으로 재생산하는데 실패했던 모던 무브먼트(Modern Movement)에 대한 비평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하디드의 비평은 대량생산의 한계에 대한 논의로 확장된다. 이는 도시적 상황에 적용되었을 때 볼프스부르크의 산업적 배경에 유효할 뿐만 아니라 건축사 본인의 '독특한 공공건물'에 대한 관심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파에노 과학센터는 하디드가 30년간에 걸쳐 행한 연구의 통합 및 확장으로 그간 하디드 건축에서 보이는 연속적인 표면과 조각적인 공간들, 굴착된 형태와 유동성을 보다 심화된 방식으로 보여준다.

형태 측면에서 파에노 과학센터는 헤르조크 앤 드 뮤롱의 바르셀로나 포럼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르셀로나 포럼의 매스가 소재의 사용과 지상층 빛 처리 등에서 상부 매스의 분리감과 상승감에 주목한 반면 파에노 과학센터는 정 반대의 노선을 취한다. 상하부 같은 소재인 콘크리트로 마감하고 자연광의 의도적인 유입을 피함으로써 파에노의 지상공간은 보다 은밀하고 정적으로 상부 매스와 대지의 통합을 암시한다. 파에노 과학센터는 외부와 내부의 환경들을 성공적으로 연계시킨다. 이 건축물이 콘크리트를 가지고 내외부의 연속성을 극적으로 구현하는 태도는 대단히 뛰어나다. 하지만 남측의 프리폼 콘크리트에 의한 플래스터 마감의 입면은 이런 개념적 명확함을 흐리는 부분이다. 하지만 건물의 대부분에서 이와 같은 연속성은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

파에노 과학센터는 20세기 하디드가 행한 연구 프로젝트의 구현으로서 21세기의 특징들을 담은 건축의 시발점으로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볼프스부르크에서 '건축적 산책'에 관한 한스 샤로운과 알바 알토의 위치는 이제 한동안 하디드의 몫이 될 것이다.

■ **P&C Department Store : 피앤씨 백화점/독일 콜로뉴/렌조 피아노**

피크 앤 클로펜부르크(Peek & Cloppenburg ; P&C)는 독일을 기반으로 벨기에와 네덜란드, 최근에는 폴란드와 러시아에까지 확장된 지점을

P&C Department Store

가지고 있는 백화점 체인이다. 피앤씨 백화점은 자사 이미지 제고와 매출 확대를 위해 클라이후스, 리차드 마이어, 곳프리드 뵘과 같은 창조적인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해 왔는데 최근에 렌조 피아노에게 의뢰한 콜로뉴 지방의 백화점이 작년에 완공되었다.

번화한 쇼핑지역과 소란스러운 간선도로 사이에 위치한 대지 근처에는 콜로뉴에서 유명한 고딕 성당인 성 안토니터키르케 성당(St Antoniterkirke Cathedral)이 있다. 대지 주변은 주로 1970년대에 지어진 모노톤의 콘크리트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렌조 피아노는 이런 환경으로부터 대지에 들어가는 건물의 성격을 정립해나갔다. 이 건물은 대담하되 주변 건물보다 조금 높은 5층 높이의 부드러운 제스츄어를 취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물결처럼 출렁이는 등마루선을 가진 위로 불룩한 형태의 유리 볼륨(길이 130m)은 주변의 전형적이고 정통적인 건물 블럭들 사이로 구비 치며 성당과 주변 건물들을 포용하는 태도를 취한다.

렌조 피아노의 건축을 다룰 때면 의례히 그렇듯 이 건물의 외부 유리벽의 기술적인 측면에 찬사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건물에는 건축사의 도시적 야망이 잠재하고 있다. 뱀처럼 구불구불한 측면의 하부는 성당 전면부에 보행자를 위한 공공 광장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으며, 대지 하부로 지나가는 자동차용 도로의 입구에 대한 참조점을 제시하고 있다.

기술적인 부분은 여전히 경탄을 자아낸다. 익숙한 음악을 연주하듯 건축 기술의 선단에서 집

성재로 된 리브와 강구조, 커팅 유리판으로 투명한 베일에 둘러싸여 주광을 필요한 만큼만 쇼핑 공간에 받아들이는 건축을 구현한 것이다. 태양광의 선택적 유입은 루버에 의해 가능하다. 이 루버는 개방이 가능한 형태로 내부에 축적된 열기를 외부로 발산시키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콜로뉴에 새롭게 나타난 유리 고래는 이제 막 해변에 도착했다. 도시는 새로운 성당을 자랑으로 삼게 될 것이다. 상업의 위대한 신성을 표현하는 피앤씨 백화점이라는 이름의 성당을 말이다.

ARCHITECTURAL RECORD

4월호

이번호는 주거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빈번한 파괴적 도시 재개발에 의한 '이웃'의 물리적 파괴와 공동체의 유지에 관한 비평과 미국과 일본의 주택을 다루고 있는 서적 리뷰를 지나 건물 유형 연구에서는 레코드지가 선정한 올해의 주택 8채를 소개하고 있다. 소개된 작가는 아르타디 아키텍토스, 올슨 준트버그, 쿠마 켄고, 마야 린, 오피스 디 에이, 웬델 버닛, 알바로 시자, 블랙 스튜디오 로 유명 작가의 완숙함 보다는 대지와의 연관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실험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는 인상을 준다.

■ **비평**

〈환상통 : 이웃은 파괴된 후에도 지속된다 (Phantom Pain : A neighborhood lives on after its destruction) 〉

환상통은 신체 일부가 절단되었을 때 손실된 신체에 대한 감각을 몸이 느끼는 것으로 무분별한 파괴의 양상으로 진행되는 도시 재개발에 대한 비판이 담겨있다.

보스턴 근처에 웨스트엔드(West End) 지역은 1962년 재개발 되면서 모든 건물이 파괴되었다. 당시 12,000명에 달하는 거주민은 대부분 저소득층이었고, 당국은 재개발 후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약속했지만 돌아 올수 있는 금전적 여유가 있는 이들은 거의 없었다.

놀랍게도 당시 거주민들은 44년이 지난 지금에도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자신들을 생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를 통해 이전 거주민들을 위한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진과 편지들을 수집하여 지난날들을 회상하고 박물관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무엇이 이들을 여전히 자신들을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느끼게 하는 것일까. 필자 로버트 캠벨은 기억(memory), 관능(sensuality), 복잡함(intricacy), 위치(location)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도시 자체가 기억을 형성하고, 기억은 여러 가지 감각들로 구성된다. 이에 의한 감각적 관능은 공동체에 대한 감성을 강하게 환기하고, 비좁았던 웨스트엔드 지역은 기억과 관능을 구성원 서로에게 깊이 전사(imprint)시키는 것이다. 더불어 강과 바다, 철도와 지하철과 맞닿아 있는 특유의 위치는 반세기가 지나도록 서로가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본문은 이러한 감성적 요소가 있는 한 웨스트엔드의 조직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희망하면서 마무리된다.

■ **신간서적 리뷰**

일본의 현대 주택을 주제로 한 서적 두 권이 소개되었다. 비슷한 시기를 다루지만 서로 다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나오미 폴락(Naomi Pollock)의 『Modern Japanese House』, 마르샤 이와타테(Marcia Iwatate)와 그리타 메타(Greeta K. Mehta)가 쓴『Japan Houses』.

이외에도 라이트와 서구의 현대 주택을 다룬 앨런 헤스(Alan Hess)의 『Frank Lloyd Wright : the houses』, 얀 호흐스팀(Jan Hochstim)의 『Florida Modern : Residential Architecture 1945~1970』, 클리포드 피어슨(Clifford Pearson)이 편집한 『Modern American Houses : Fifty years of design in Architectural Record』 그리고 마이클 웹(Michael Webb)이 지은 『Art/Invention /House』에 대한 리뷰가 게재되었다.

■ **건물 유형 연구 – Record Houses 2006**

선정된 8개 작품은 각각 지어진 장소와 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문화, 기후, 랜드스케이프를 통해 그러한 연관성은 가장 우선되는 요소이다.

- 하비에르 아르타디(Javier Artadi)의 Las Arenas Beach House는 페루의 황량하고 건조한 해변에 위치한다. 순 백색의 콘크리트는 날카로운 햇빛 아래 서있고, 온화한 기후 속에 건축물은 문자 그대로 야외생활에 '열려' 있다. 여전히 모더니즘 건축이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올슨 준트버그 쿤디히 알렌(Olsen Sundberg Kundig Allen)의 Stilt House는 스틸과 합판으로 지어진 숲속의 은신처 같은 주택이다. 네 면으로 모두 창문이 있으며, 개방 가능한 강판재 패널은 미서기로 움직이면서 개구부의 크기와 입면을 필요에 따라 변화를 줄 수 있다.
- 쿠마 켄고의 Lotus House는 도쿄 근교에 있다. 실제감을 느끼기 어려운 얇은 트래버틴 패널로 된 바둑판 모양의 스크린이 주택의 표면을 감싸고 있어 마치 연못에 떠 있는 연꽃과 같이 미묘한 부력을 건물에서 느끼게 한다. 이는 캔틸레버로 설치된 계단에서도 확인되며, 바둑판무늬는 연못의 디딤돌에서 다시 한 번 암시된다. 유리로 세면이 처리된 거실 공간은 시각적으로 주변 자연환경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 일본에서만 가능한 건축이 시도되었다.
- 콜로라도 로키산맥에 있는 마야 린(Maya Lin)의 Box House는 동양의 퍼즐 장난감

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힌지결합으로 움직이는 외부의 나무 루버형태의 스크린은 랙 앤 피니언 시스템(톱니 막대와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기구)으로 작동되고 남측과 서측 입면에 위치한다. 이 회전하는 셔터는 건물이 위치한 애스핀에서 느낄 수 있는 나뭇가지 사이로 지나가는 햇빛을 추상화하고 묘사한 것이다.

- New England House는 검은 색 고무와 삼나무 재질로 처리되어 있다. 오피스 디에이(Office dA)는 현존하는 녹색 자연환경에 대응하며 새로운 방식의 큐브를 제안했다. 주택의 북쪽 입면은 몬드리안과 미스를 연상하게 하며 검은색 고무로 굴뚝을 감쌌다. 동쪽 입면은 대지가 위치한 지역의 농장에서 보이는 버네큘러 디자인을 상기시키는 판자벽으로 되어 있다.
- 위스콘신 지역에 있는 웬델 버넷(Wendell Burnette)의 Field House는 조용하고 편안한 금속 건물로 이 지역풍경에 주요한 방점이 된다. 온건하고 눈에 거슬리지 않는 관입으로 이 건물은 우아하고 심플하게 미묘한 정제를 보여준다.
- 알바로 시자(Alvaro Siza)의 아들 알바로 레이테 시자 비에이라(Alvaro Leite Siza Vieira)가 설계한 Casa Tolo는 급경사의 비탈을 계단식으로 내려간다. 주택은 소수의 개구부가 있으며 테라스와 계단이 33도의 비탈에 맞춰 번갈아 위치한다. 주차는 언덕 비탈 위쪽에서 지붕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구부는 방에 하나씩, 높이가 변하면서 하나씩 위치한다. 침실은 계곡의 풍경을 보기 위해 건물의 주축에서 회전한 상태로 관입되어 있고, 수영장이 가장 낮은 고도의 테라스에 있다. 큰 거실은 계단이 캔틸레버로 벽에 부착되어 추상적이면서도 가볍고 떠오르는 느낌을 준다. 에셔와 피라네시의 그림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시자는 계단을 통해 시각적인 놀이를 시도한다. 번갈아 나타나는 깊은 시각이 확보되는 직선형 계단과 차단되는 짧은 계단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 건축물은 이곳 바로 포르투갈의 빌라 레알이 아니면 생각조차 하기 힘든 건물이다. 거장의 아들은 가파른 지형의 독특한 형태에 맞춰 집을 만든 것이다.(글 / 김 훈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 선문대, 우송공대 출강)

1. Box House
2. Casa Tolo
3, New England House
4. Las Arenas Beach House
5. Las Arenas Beach House

a+u

3월호

이번 호의 특집은 '자연과 함께하는 주택(Living with Nature)'이다. 자연과 함께하는 주택이라고 하면 친환경적인 주택을 떠올릴 수도 있고, 자연 속에 파묻혀 있는 농가풍의 소박한 주택을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특집에 소개된 작품들은 멋진 풍광을 자랑하는 자연 경관 속에 자리 잡은 세련된 주말주택들이다. 이들에선 도시의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과 자연의 멋진 경관을 함께 즐기려는 욕망이 그대로 느껴진다.

'자연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겠지만 이번 a+u 3월호의 특집 주제인 'Living with Nature'에서는 도심을 떠나 자연 속에 홀로 자리 잡음으로서 자연과 호흡하지 않을 수 없는 주택들을 소개하고 있다. 소개된 작품 중에는 한적한 시골마을에 자리 잡은 것들도 몇 몇 보이지만 이들에 대한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이들보다 비중 있게 다루어진 작품들은 해안가의 바위 절벽에 홀로 자리 잡거나 혹은 사막 한가운데 외로이 서있는 주말주택들이다. 이들은 편안하게 자연과 호흡한다기 보다는 거대한 대자연 속에 홀로 남겨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앞설 정도인 것들도 있다. 자연 속에 홀로 자리잡았지만 이들 주택은 소박한 은둔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실력 있는 건축사에게 맡겨져 매체를 통해 소개되는 주택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이들은 자연 속에 홀로 자리 잡은 고급 휴양용 주말주택들이다.

• 해변에 자리 잡은 주택은 페조 폰 에를리히스하우젠(Pezo von Ellrichshasen) 아키텍츠의 「폴리(Poli) 하우스」, 클레송 코이비스토 루네(Cleasson Koivisto Rune)가 설계한 「크로크모라 섬의 주말 주택」, 쥴리 스노우(Julie Snow) 아키텍츠의 「쾰러(Koehler) 하우스」 그리고 마르끄 바라니(Marc Barani)의 「빌라 인더 사우스 오브 프랑스」 등이다.

• 「폴리 하우스」〈사진2,3〉는 칠레의 콜리우모 반도에 세워졌다. 인구가 적은 이곳은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소수의 주민과 여름철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전부인 곳이다. 건물은 여름의 별장과 문화센터라는 2개의 기능을 함께 지닌 것으로, 집회나 전람회, 워크샵과 같은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었다. 콘크리트 입방체속에 모든 공간을 담아내었고, 거푸집의 판자들의 이음매를 그대로 드러낸 거친 표면의 노출콘크리트로 외관과 내장을 마무리 하였다. 건물의 외벽은 2겹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사이 공간에 모든 설비와 동선 공간을 집어넣었는데, 이는 거친 콘크리트 외벽이 주는 질감과 함께 두터운 외벽의 느낌을 주어 해안가의 암벽위에 홀로 서서 그 안에 품은 방문자를 보호하는 요새와 같은 인상을 풍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벽마다 대담하게 열려진 정사각형의 대형 창들은 건물 외부의 광활히 펼쳐진 해안의 풍경과 호흡하는 장치이다.

• 「크로크모라 섬의 주말 주택」은 법적으로는 모(母)주택의 게스트하우스로서 허가가 난 것이다. 그러나 모주택의 주인과는 별개의 가족이 휴가를 보내야 하므로 불과 8m 떨어진 모주택과 면한 입면에는 개구부 하나 없이 시선을 차단해야 했다. 반면 그 이외의 파사드들은 발트해를 향해 열려진 모습이다. 「쾰러 하우스」〈사진4,5〉는 「폴리하우스」처럼 망망대해를 바라보고 홀로 외로이 서 있는 주말주택이다. 해안의 암반위에 선 이 주택은 미스의 [슈레더 하우스」를 연상시키는 심플하고 개방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빌라 인더 사우스 오브 프랑스」〈사진6〉는 남부 프랑스에서 프랑스인들이 즐기는 휴가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는 주택이다. 다른 세 주택처럼 해안가에 바싹 다가서 있지는 않지만 마을 너머 해안을 바라볼 수 있는 높은 언덕에 자리를 잡았다. 1층에는 식당과 응접실을 겸하는 거대한 거실, 흡연실, 어린이 놀이방 및 주방 등 공용공간이 자리 잡고 2층에는 각기 독립된 욕실을 갖춘 6개의 침실이 해안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을 제공하며 배치되었다. 단 하나의 기둥 없이 20미터 이상 돌출된 1층의 캔틸레버 지붕이나 다리처럼 놓여진 2층 매스는 이 주택의 고급스러움을 말해주는 부분이다. 거실과 외

2

3

부 테라스를 경계 짓는 유리벽은 놀랍게도 바닥에서부터 솟아오르도록 되어 있다. 유리벽을 바닥면으로 하강시키면 거실과 테라스는 완벽하게 하나의 공간이 된다. 이와 같은 설비시설 또한 이 주택이 추구하는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감각을 잘 대변해 준다.

• 소개된 작품들은 대부분 자연속에 던져진 세련되고 심플한 상자와 같다. 입면의 대부분을 유리벽으로 처리하면서 주변의 경관을 실내로 흡수하고,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인테리어를 제공하여 도심의 세련된 주거와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만끽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소개된 스티븐 홀(Steven Holl)의 「터뷸런스 하우스」〈사진7〉의 조형적 아름다움에 비중을 둔 인테리어를 통해서도 이 같은 점은 명백히 드러난다. 생활의 흔적이나 일상의 모습보다는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꿈틀대고 있는 것은 이들이 주말주택으로서의 성격에 충실하기 때문일 것이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모습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번 호의 제목으로는 너무 폭넓고 고상한 듯싶다. 차라리 '주말주택'이 더 정확하고 솔직한 제목이 아니었을까 싶지만 오랜만에 보는 교외 주택들의 모습들이 반갑기도 하다.

(글/강상훈/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4

5

6

7

항공촬영의 모든 것 '(주)에어로캠'

무인헬기를 이용한 무인항공촬영 시스템

무인항공촬영이란 무인산업용헬기에 스틸카메라를 장착하여 지상 1m에서 400m까지 항공에서 송출되는 영상을 지상에서 모니터링 한 후 최적의 사진을 지상에서 원격 조종하며 촬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장점**
  - 촬영시기, 시간, 공간이 자유롭고, 이동 및 기동성이 탁월
  - 수요자가 직접 앵글을 확인하며, 배기연이 없어 다양한 앵글을 촬영
  - 유인항공촬영 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
- **용도**
  - 건축심의용(조감도, 배치도, 조망, 경관)/건축분양용(지역조감도)
  - 건축현상용(현상설계 보고서 및 조감도)/건축 T/K 등등
- **시스템 및 인원 구성**

무인비행체 : 독일제 바리오사 23CC 가솔린 헬기
카메라 : 필름카메라(중형급 이상), 디지털카메라(1,500만 화소)
모니터 : 10"~14"LCD
인 원 : 조종사 1명, 항공촬영작가 1명, 엔지니어 1명

(주)에어로캠
Tel_ 02-2661-5841 | www.aerocam.co.kr

WBS 외장 단열 공법

외장단열 부문 국내 최초 건설교통부 신기술(제46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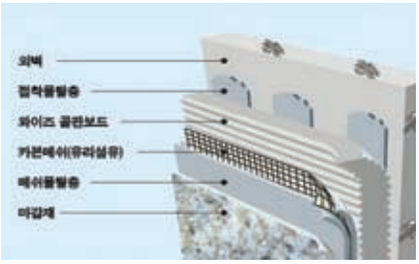

신기술 제465호 와이즈보드시스템(Wise Board System)은 오염방지 효과가 탁월한 카본블랙 코팅메쉬와 접착강도가 우수한 분말수지를 첨가한 분말형 건식모르터를 골판보드에 적층하여 강성과 접착성능 등의 역학적 성질과 내오염성을 개선한 외장단열의 획기적인 신기술 신공법이다.

- 품질 표준화의 새로운 기준 마련
- 카본블랙 코팅 메쉬의 사용으로 정전기를 방지하여 오염 최소화
- 골판보드 사용으로 두꺼운 몰탈층이 형성되어 접착강도, 충격강도 우수 / 환경친화적 공법 / 경제성이 우수한 기술
- 리모델링 적용성 우수 / 공기 단축 및 시공이 용이
- 국내 최초로 분말형 특수몰탈 적용으로 부착 강도, 압축강도 우수
- 다양한 마감재의 적용으로 마감의 고급화 구현

(주)월드와이즈월
Tel_ 031-221-3000 | www.wise-board.com

누수 걱정 없는 옥상 방수공법이 있다고요?

뿌리에 대한 저항성(내근성)에 강한 스타폴리바 복합 방수 공법

사례 : 주택공사 본사(분당) 옥상녹화 시공

- 사례개요

옥상녹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대한주택공사 저면부 옥상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내근성능이 검증된 최신의 공법을 적용함으로서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시공 특성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 기존상태 : 옥상 전면 접착식 인조 잔디 설치
  - 적용공법 : 건설 신기술 234호 복합방수공법(Star-Poly Va : 옥상녹화 시스템 Star-Green)
  - 공사분류 : 개 · 보수
  - 옥상녹화 시스템 유형 : 구조체-방수층-배수층-토양층-식생층

(주)한양방수
Tel_ 0292201-7870

빠른 효율과 안전이 입증된 일체형 데크 '스피드데크'

어떤 건물 구조에서도 완벽을 추구한다 - (주)덕신하우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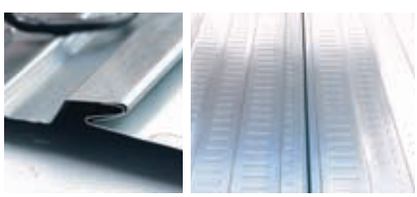

일체형 데크플레이트(Deckplate)는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하중을 감소시키고, 시공이 간단해 전체 공사 기간과 비용을 절감(약 20~30%)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적용 사례가 늘고 있다.
일체형 데크플레이트를 대표하는 (주)덕신하우징의 스피드데크(SPEED DECK)는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에서 생산된 데크로 시공하기 때문에 약 30~60% 정도 현장 작업량을 줄이고 콘크리트 타설 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며, 하부 용접점을 없애 부식 문제를 완벽하게 보완했다. 또한, 트러스와 상부의 강판이 닿는 용접 면적을 넓혀 강도를 높혔다. 때문에 미려한 외관과 높은 안정성을 보장한다.

- 구성재료 : 철선(원형, 이형철선), 아연도금강판
- 적용사례
  - 해외수출공사(앙골라컨벤션센터), 경기장, 운동장(울산종합운동장 외), 공장(파주 LG 필립스 LCD 모듈동 외), 관공서(원주시청사 외), 물류센터(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외), 연구소(LG생활건강 기술연구원 외)
  - 그 외 아파트 주차장, 아파트형 공장, 오피스텔, 주상복합 빌딩, 학교, 교회 등

(주)덕신하우징
Tel_ 02-2600-2600 | www.duckshin.com

※자재정보 원고모집
건축사 회원과 우수한 건축자재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재사용결과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자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_ gods@kira.or.kr
- 원고내용
  - 사진1컷(300dpi 이상)
  - 제품정보(원고지 3매 이내)
  - 기업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기재

화강석 '고운다듬' 공법

회전원심식 Blasting을 이용한 석재 '고운다듬' 공법

건설현장의 내·외부에 많이 사용되는 화강석 등의 가공공법으로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어 왔던 버너구이, 잔다듬, 도드락다듬, 혼드마감 등을 대체할만한 획기적 신공법 '고운다듬' 공법이 개발되어 널리 설계도서에 반영, 건설현장에 적용되면서 석재분야에 대혁신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2000년 2월 8일 건설교통부 건설신기술 제218호로 지정되었고, 2001년 9월 4일 특허청 발명특허(제0309112호)를 획득한 것과 최근 5년동안 설계 또는 준공된 대부분의 정부시설공사에 사용된 사실들(홈페이지의 '실적자료' 참고)이 이 내용을 잘 입증해 주고 있다.

- **공법원리** : 석재 마감면에 스테인레스 쇼트볼(∅1.0~2.0 내외)을 분사하여 요철을 형성하는 공법
- **특징**
  - 석재 본래의 천연색상과 질감유지, 표면요철 균질도 양호
  - 가열공법(버너구이)의 열에 의한 물성변화, 미세균열, 오염 등의 단점 보완
  - 버너구이는 불가능한 마천석, 대리석, 인조대리석 등 모든 석재 가공 가능

(주)건설뉴-테크
Tel_ 02-3443-0902~3 | www.stonetech.co.kr

Watts 조명

"You don't know what you are missing!"

2002년 4월에 오픈하여 한국 조명의 터닝포인트를 마련한 Watts. 이제 한국에서 Watts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조명을 말할 수 없게 되었다.
방대한 콜렉션은 단일 매장으로 세계 최대이며, 트렌드와 무관하게 엄선하여 유럽, 미국에서 들여오는 제품들은 격이나 품질이 특별하다.
직영공장 운영으로 신속한 최고품질의 맞춤제작이 가능한 곳 또한 Watts 이다.
아직도 Watts 방문전이시라면, "You don't know what you are missing!"(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모르시는군요)

Watts 조명
Tel_ 02-517-3082 | www.wattslighting.com

대한민국 최초의 옥상녹화 전문기업

A.R.T Greening System(저관리 보급형 옥상녹화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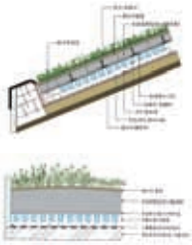

- **특징**
  - 평, 경사, 돔형 등 모든 옥상 및 콘크리트, 목재, STEEL 등 어떤 지붕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반 녹화 시스템
  - 자연 빗물을 담수 할 수 있는 저·배수 단열판을 바탕으로 한 옥상녹화 시스템.
  - 단열, 방수, 급수, 배수, 토양, 식재를 일원화한 옥상녹화 토탈 시스템
  - 경사지붕녹화 시스템 보유(경사도 45도 시공가능)
- **장점**
  - 자연빗물을 활용, 별도의 급수 불필요(경량형)
  - 저배수 단열판 설치로 단열 및 보온효과 증대
  - 최저토심(10cm)으로 식재가능
  - 방수층의 누름몰탈층 생략으로 하중부담 감소
  - 정원 유지관리 부담의 최소화
  - 자연화산석 멀칭으로 토양의 비산 및 집중 호우시의 쓸림 방지

한국씨씨알㈜
Tel_ 02-571-8311 | www.ccrkorea.co.kr

최초 욕실 브랜드 '아베프(Avecfe)'

단일 컨셉 디자인 욕실 제품

Decoration suit는 기존 욕실 용품에 Suit 또는 set 개념을 도입하여 단일 컨셉에 의한 디자인의 통일성을 지닌 상품을 개발,공급하는 것이다.
기존의 백색, 컬러 일색이던 제품에서 탈피하여 욕실에도 찻잔과 같이 문양을 입혀서 화려함을 가미하여 소비자의 차별화 욕구에 부응하고 있다. 기술 개발 당시의 화려함은 차츰 다듬어져서 우아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게 되었고 동원세라믹의 전문 디자이너에 의해 세밀하고 정교한 문양들이 만들어 지고 있다.
이러한 Decoration Suit 제품은 인증된 품질을 기본으로 욕실에 새로운 디자인의 시도로서 욕실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에 통일된 컨셉을 주어 제품간의 불협화음을 제거 하였으며 욕실 제품 최초의 브랜드 개념을 도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서 품질 보증이 기본으로 충족 되며 동일한 제품을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게 되었다.

- **SET 구성** : 양변기, 세면기, 수전, 거울, 조명, 액세서리, 타일

(주)interbath
Tel_ 02-2601-0141

도시의 초록벽을 꿈꾼다

친환경 벽면 녹화 시스템 – 그린메쉬웨이브

'그린메쉬웨이브'는 건축구조물의 높은 수직벽면을 녹화시키는 친환경적인 벽면녹화 시스템으로서 삭막한 콘크리트벽, 회백색의 벽면을 녹음으로 차폐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 시킬 뿐 아니라 건축물 표면의 복사열을 감소시켜 도시기후의 조절에 도움을 주며, 산성비와 자외선으로부터 건축물 표면을 보호, 도료의 탈색과 표면균열을 방지하며 흡착력이 큰 덩굴식물은 건축물을 보강하는 효과가 있다.
이밖에도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의 울림현상을 방지하는 효과, 각종 오염물질의 정화, 프라이버시의 확보와 우수 및 자연에너지를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시스템으로 단메쉬형, 이중메쉬형 등 다양한 형태로 입체감 있는 시공이 가능하다.

(주)한설그린
Tel_ 02-3411-0898 | www.hgreen.com

월빙 석재품 "물 다듬"

디자인시대 – 이제는 석재도 달라져야 한다!

2004년 부산 경향하우징페어를 비롯, MBC 건축박람회 등을 통해 소개되고 있는 물 다듬 공법은 고압수를 이용, 석재표면에 다양한 무늬를 디자인 할 수 있는 최첨단 고급기술 이다.
물 다듬 공법을 이용한 제품은 석재 디자인의 폭을 넓혔으며, 미끄럼 방지 효과가 탁월하다.
(외부 바닥용으로, 보도용으로 현재 천연석재 가공법 중 가장 우수함)
또한 발 지압 효과도 있어 웰빙 시대에 맞는 기능성제품 이기도 하며, 화강석을 비롯 대리석 표면에 까지 가공이 가능하여 인테리어용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 **제품의 특성**

- **물다듬무늬 종류**
  - 빗살무늬, 입체무늬, 미소무늬, 벽화무늬, 산수화무늬 등
- **기능**
  - 미끄럼방지, 발 지압 효과
  - 조경시설의 훌륭한 연출
  - 음 양각 효과로 자연미 연출
  - 벽체, 실내외 인테리어에 새로운 질감표현
- **제품의 용도**
  - 내, 외장용. 인도포장, 광장바닥
  - 승강장 연단석, 수영장, 목욕탕
  - 미끄럼방지용 석재 (물 다듬 빗살 계단 판석)

(주)초석석재산업
Tel_ 063-858-6527~8 | www.cho-suk.co.kr